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연구진

홍 근 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엄 명 배 (충남대학교 교수)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정임
- 2017년 이후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하여 13개의 제개정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도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목적, 기부주체, 기부대상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함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제도 개편을 통해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이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음
- 일본 고향납세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2) 연구 목적

□ 일본 고향납세제도 시사점 도출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2015년 제도 개편 이후에 도입된 원스톱 특례제도,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제도,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자 함

□ 관련 법률안 비교·검토

-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도입목적·납부유형·납부주체·납부대상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각 법률안의 특징을 비교·검토하고자 함

□ 주요 쟁점 관련 실증분석 실시

- 설문조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자 함

□ 바람직한 제도 추진방향 제시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쟁점별로 정책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정책대안의 장·단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제언

1) 주요 내용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시사점

- 제도 안정성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부금 규모의 예측가능성 제고, 답례품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 제도 다양성 측면에서는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 도입, 사업 분야 및 답례품의 다양화 추진, 기부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함
- 제도 수용성 측면에서는 기부자의 공감 및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정보 공유를 위한 민간 부문 연계 등이 필요함

□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의 특징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목적은 대부분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납부 유형은 조세이전 또는 기부금 형식을 제안하고 있음
- 기부자 요건은 출향민 또는 장기간 타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자, 특정기부자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남
- 납부대상은 출생지, 일정기간 이상 거주지, 거주지 이외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이외 지역, 재정이 열악한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발의됨

□ 설문분석 결과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4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60.5%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약 40%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제시한 반면에,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서는 약 40%가 부정적인 응답을 제시하였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은 정치기탁금과 동일하게 설정된 현재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세액공제의 비율이 확대될 경우에 고향사랑기부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많은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 답례품 제공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답례품의 적정 규모로 기부금의 10% 이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제시됨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 한 결과 평균 지불의사금액 99,164원이 도출됨

2) 정책제언

□ 정책목표 측면

- 정책목표 측면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핵심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자 및 대상지역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 고향납세제도는 개인의 자유로운 기부의를 위축시키고 규제 관련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기부자와 대상지역을 제한하지 않음

□ 세액공제 측면

- 세액공제 측면에서 현재의 정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설문분석 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51.8%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음
-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음

□ 답례품 제공 측면

- 답례품 제공 측면에서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답례품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의 50.6%가 기부금 금액 10% 이하, 90.4%가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는 일본의 GCF형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9
제2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 및 사례	11
제1절 고향납세제도 현황	13
1. 고향납세제도 개요	13
2. 고향납세제도 개편 내용	16
3. 고향납세 현황	27
제2절 고향납세제도 사례	38
1. 답례품형 고향납세제도 사례	38
2.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제도 사례	44
제3절 시사점	57
1. 제도 안정성 측면	57
2. 제도 다양성 측면	58
3. 제도 수용성 측면	60

K R I L A

차례

제3장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관련 논의	61
제1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요	63
1.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 배경	63
2.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요 내용	71
3. 고향사랑기부제도 장단점	72
제2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	79
1. 법제화 동향	79
2. 법률안 특징	86
제3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선행연구	89
1. 국내연구	89
2. 국외연구	94
제4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쟁점	97
1. 정책목표 설정	97
2. 세액공제율 조정	102
3. 답례품 제공	105
제4장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쟁점 분석	107
제1절 설문분석	109
1. 설문분석 개요	109

2.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인식 분석	114
3.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추정	133
제2절 텍스트네트워크분석	143
1. 텍스트네트워크분석 개요	143
2. 전체 키워드 분석결과	145
3. 주요 쟁점별 분석결과	150
4. 일본 고향납세제도 분석결과	168
제3절 분석결과 종합	173
1. 설문분석 종합	173
2. 텍스트네트워크분석 종합	177

제5장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안

제1절 주요 쟁점별 대안 검토	185
1. 정책목표 관련 시나리오	185
2. 세액공제율 조정 관련 시나리오	191
3. 답례품 제공 관련 시나리오	196
제2절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 방향	201
1. 쟁점사안 관련 상충문제 규명	202
2. 정책수행 방향 및 방법 제언	203

K R I L A

차례

【참고문헌】	209
【부록】	214

표 차례

〈표 2-1〉 기부자 입장에서 본 고향납세제도 선택방식 및 절차	21
〈표 2-2〉 창업가에 대한 추가보조의 특별교부세 조치	24
〈표 2-3〉 관계인구의 유형	26
〈표 2-4〉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광역자치단체)	28
〈표 2-5〉 기초자치단체 중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 상위단체	30
〈표 2-6〉 광역지자체별 공제적용자 및 공제액(2018년 기준)	32
〈표 2-7〉 고향납세의 사용 분야	34
〈표 2-8〉 실제 수행한 사업의 내용	35
〈표 2-9〉 고향납세 수입액 및 활동상황 공표현황	36
〈표 2-10〉 고향납세 모집 및 수입 등의 수반 경비(2017년)	37
〈표 2-11〉 총무대신 통지 관련 시구정촌의 대응	37
〈표 2-12〉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의 기부금액과 사업내용	40
〈표 2-13〉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기부금액과 사업내용	43
〈표 2-14〉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의 기부금액과 건수	46
〈표 2-15〉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 기부금액과 건수	47
〈표 2-16〉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기부금액과 건수	49
〈표 2-17〉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土幌町) 기부금액과 건수	52
〈표 2-18〉 GCF형 고향납세 기타 사례	54
〈표 3-1〉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64
〈표 3-2〉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17년)	65

K R I L A

표 차례

〈표 3-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현황(2017년)	66
〈표 3-4〉 재정자립도별 비교(2017년)	67
〈표 3-5〉 전국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69
〈표 3-6〉 소멸위험지역(2018년)	70
〈표 3-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발의 목적	74
〈표 3-8〉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장단점	78
〈표 3-9〉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 비교	83
〈표 3-10〉 세액공제 관련 발의안 비교	88
〈표 3-1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93
〈표 3-12〉 기부액 변화에 따른 분담률 비교	104
〈표 4-1〉 본 조사 표본추출 현황	110
〈표 4-2〉 응답자 특성: 성별	111
〈표 4-3〉 응답자 특성: 출생연도	111
〈표 4-4〉 응답자 특성: 출생지역	112
〈표 4-5〉 응답자 특성: 거주지역	113
〈표 4-6〉 응답자 특성: 최종학력	113
〈표 4-7〉 응답자 특성: 월평균 총 급여(세전)	114
〈표 4-8〉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115
〈표 4-9〉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115
〈표 4-10〉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출생지역별	116

〈표 4-11〉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연령별	117
〈표 4-12〉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	117
〈표 4-13〉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이유	118
〈표 4-14〉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향	118
〈표 4-1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향: 출생지역별	119
〈표 4-16〉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향: 연령별	119
〈표 4-17〉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120
〈표 4-18〉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출생지역별	121
〈표 4-19〉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연령별	122
〈표 4-20〉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122
〈표 4-2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연령별	123
〈표 4-2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	124
〈표 4-2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 연령별	125
〈표 4-2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25
〈표 4-2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거주지역별	126
〈표 4-26〉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적정 세액공제 수준	127
〈표 4-2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기부 의사	127
〈표 4-28〉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지정 여부	128
〈표 4-29〉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지정 여부: 연령별	129
〈표 4-30〉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130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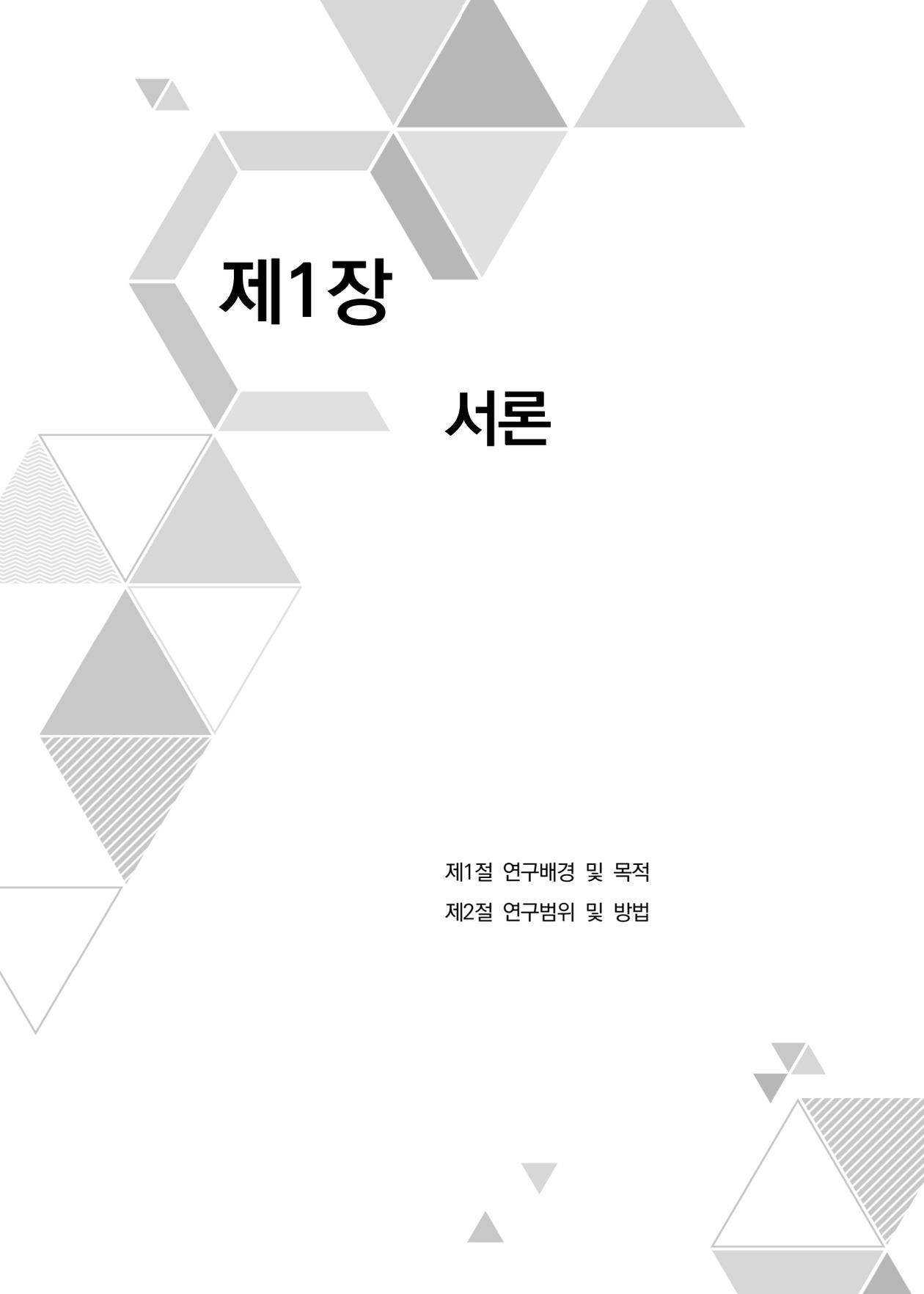
〈표 4-3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여부	130
〈표 4-3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여부: 연령별	131
〈표 4-3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반대 이유	131
〈표 4-3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유형	132
〈표 4-35〉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금 대비 답례품 비율	133
〈표 4-36〉 본 조사의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	140
〈표 4-37〉 지불의사금액모형 추정결과	141
〈표 4-38〉 지불의사자 가중치를 반영한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142
〈표 4-39〉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총 규모 추정결과	142
〈표 4-40〉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전체 키워드	146
〈표 4-41〉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전체 키워드	148
〈표 4-42〉 토픽 분석결과: 전체 키워드	149
〈표 4-43〉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기부주체	150
〈표 4-44〉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주체	152
〈표 4-45〉 토픽 분석결과: 기부주체	153
〈표 4-46〉 텍스트네트워크(기부대상) 속성	154
〈표 4-47〉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대상	156
〈표 4-48〉 토픽 분석결과: 기부대상	157
〈표 4-49〉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기부형태	157
〈표 4-50〉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형태	159

〈표 4-51〉 토픽 분석결과: 기부형태	160
〈표 4-52〉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답례품 제공	161
〈표 4-53〉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답례품 제공	163
〈표 4-54〉 토픽 분석결과: 답례품 제공	164
〈표 4-55〉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세액공제	164
〈표 4-56〉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세액공제	166
〈표 4-57〉 토픽 분석결과: 세액공제	167
〈표 4-58〉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일본 고향납세제도	168
〈표 4-59〉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일본 고향납세제도	170
〈표 4-60〉 토픽 분석결과: 일본 고향납세제도	172
〈표 4-61〉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비교	178
〈표 4-62〉 텍스트네트워크의 중심성지수 비교	179
〈표 4-63〉 토픽 분석결과 비교	180
〈표 5-1〉 시나리오 I에 따른 기부금 규모별 부담액	191
〈표 5-2〉 시나리오 II에 따른 기부금 규모별 부담액	193

그림 차례

〈그림 2-1〉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개요	14
〈그림 2-2〉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세액공제 구조	15
〈그림 2-3〉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	17
〈그림 2-4〉 1년간 기부처가 5개 지자체 이내인 자	18
〈그림 2-5〉 클라우드펀딩(GCF)형 고향납세제도	19
〈그림 2-6〉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의 개요	23
〈그림 2-7〉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의 추진방법	25
〈그림 2-8〉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 추이	27
〈그림 2-9〉 개인주민세 공제액 추이	31
〈그림 2-10〉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	38
〈그림 2-11〉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 답례품	39
〈그림 2-12〉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41
〈그림 2-13〉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답례품	43
〈그림 2-14〉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	44
〈그림 2-15〉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 활동내용	45
〈그림 2-16〉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	46
〈그림 2-17〉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 활동내용	47
〈그림 2-18〉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48
〈그림 2-19〉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활동내용	49
〈그림 2-20〉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士幌町)	50

〈그림 2-21〉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上士幌町)의 활동내용	51
〈그림 2-22〉 오카야마현 타마노시(岡山県玉野市)	52
〈그림 2-23〉 오카야마현 타마노시(岡山県玉野市) 활동내용	53
〈그림 4-1〉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전체 키워드	146
〈그림 4-2〉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전체 키워드	147
〈그림 4-3〉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기부주체	150
〈그림 4-4〉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기부주체	151
〈그림 4-5〉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기부대상	154
〈그림 4-6〉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기부대상	155
〈그림 4-7〉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기부형태	158
〈그림 4-8〉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기부형태	158
〈그림 4-9〉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답례품 제공	161
〈그림 4-10〉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답례품 제공	162
〈그림 4-11〉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세액공제	165
〈그림 4-12〉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세액공제	165
〈그림 4-13〉 일본 고향납세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169
〈그림 4-14〉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16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 최근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음
 -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가 주민세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 도입을 주장하였음
 - 이후 지역 언론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향세 또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문재인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법」의 시행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자치분권 로드맵의 30대 과제에 포함하였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안전부(2017)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계획(안)'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2017년 이후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하여 13개의 제·개정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실제 제도로 도입·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음

2)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상반된 입장 존재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① 국민정서 함양과 포용적 성장 유도, ② 선택납세에 따른 조세 패러다임의 전환, ③ 지방재정 당면 문제 해결, ④ 답례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식 진화 등으로 제시되고 있음
 - 반면에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은 ① 지방자치 원칙 등 위배, ②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불투명, ③ 세수안정성 훼손 가능성, ④ 지역 간 갈등의 심화 가능성, ⑤ 답례품 제도의 역기능 등으로 제시되고 있음
-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제도의 정책목적에 관한 것임
 -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함
 - 반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주장함

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냄
 - 특히 강원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시도연구원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목적, 기부주체, 기부대상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함
 -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일본 고향납세제도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필요

-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의 제도 개편을 통해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이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음
 - 2008년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경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고향납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납세 방식을 다양화하고, 원스톱 특례제도와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2015년의 제도 개편 이후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의견들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유사함
 - 따라서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주요 제도 및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연구목적

1)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시사점 도출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고향납세제도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일본 고향납세제도는 양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신두섭·염명배, 2016)
 - 2017년 기준 고향납세액은 3,653억 엔으로 2008년 보다 45배 증가하였으며, 납세 건수는 17,301,584건으로 2008년 보다 322배 증가하였음
 - 특히 2015년 이후 도입된 윈스톱 특례제도,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등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고향납세제도의 주요 현황을 검토하고, 최근 고향납세제도 실적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함
 - 고향납세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고향납세제도 활용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관련 법률안의 특징 비교·검토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2019년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법률안은 총 15개임
 - 이들 법률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

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음

- 이 연구는 도입목적·납부유형·납부주체·납부대상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각 법률안의 특징을 비교·검토하고자 함
 - 각 법률안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실증분석 실시

-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함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추출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일부 선행연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및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여부, 도입 효과, 도입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자 함
 - 이중 양분선택형질문법을 적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자 함
 -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해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총 편익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제시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및 법률안 검토, 사례분석, 설문분석, 텍스트네트워크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쟁점사항별로 정책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정책대안의 장단점을 제시하고자 함
 - 도입목적·납부주체·납부대상 등 주요 쟁점사항별로 정책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시간적 범위

- 선행연구 및 관련 법률안 검토는 2009-2018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함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사례분석은 2008-2018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쟁점 및 정책대안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제시함

2) 공간적 범위

-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쟁점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국내·외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선행연구 및 법률안 검토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2) 현황 및 사례분석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설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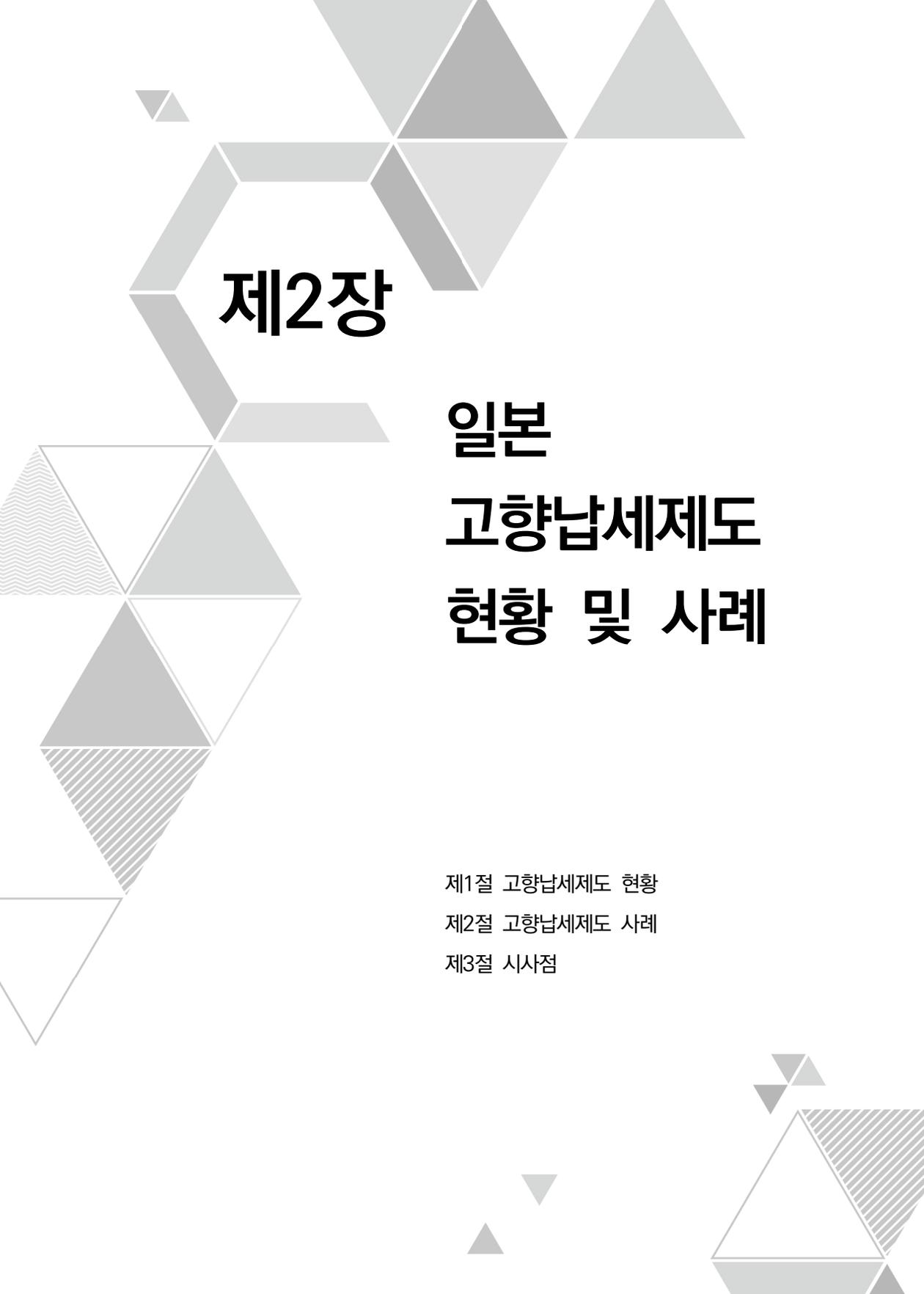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설문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함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총편익을 추정하고자 함

4) 텍스트네트워크분석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신문기사 텍스트를 분석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5) 이해관계자 인터뷰(FGI)

- 지방재정 전문가,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대안의 적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2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 및 사례

제1절 고향납세제도 현황

제2절 고향납세제도 사례

제3절 시사점

제2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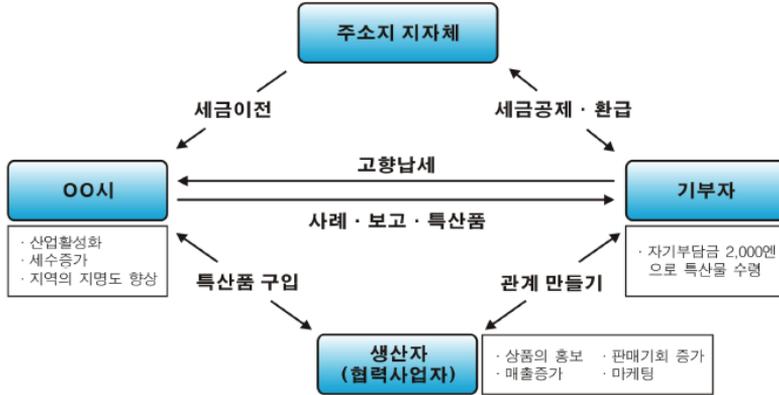
제1절 고향납세제도 현황

1. 고향납세제도 개요

1) 고향납세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 고향납세제도는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이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육동한 외, 2017)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세수감소 및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2006년 후쿠이현 지사인 니시카와잇세이가 처음으로 '고향기부제 공제'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 2007년 5월 제1차 아베내각이 구체적 제도 설계를 지시하였으며, 2007년 5월 총무성에 '고향납세연구회'를 설치하였음
 -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기부와 세금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제도화하였음
- 고향납세제도는 개인이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중 자기부담금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액의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임
 - 공제된 금액 중 소득세 공제액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며, 개인주민세 공제액은 주민세로부터 환급됨
 - 이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주지에서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남
 - 또한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그림 2-1〉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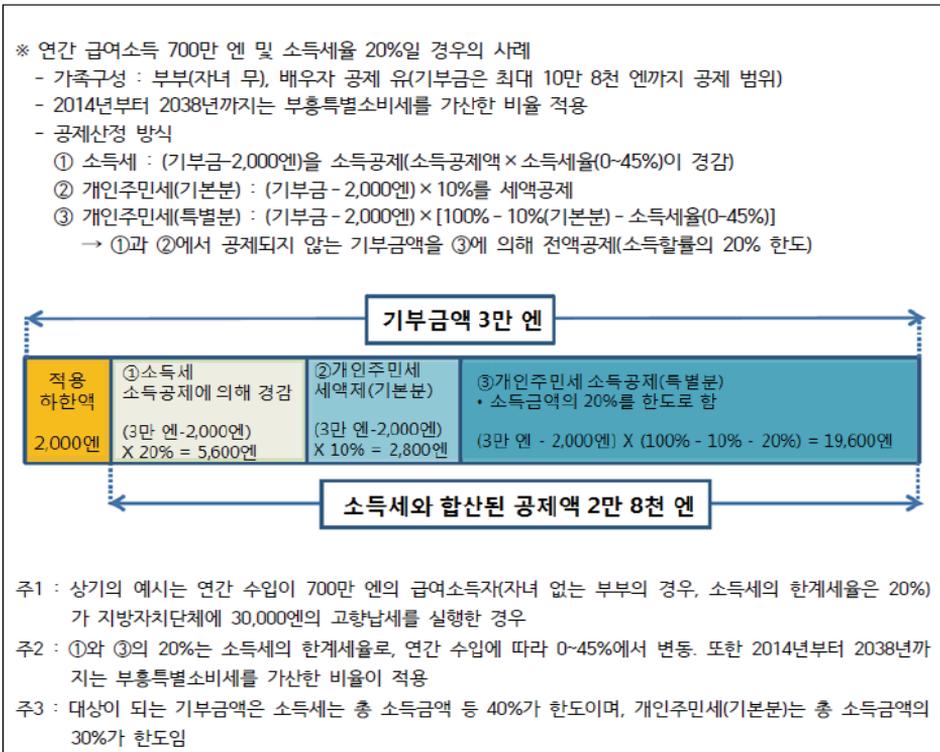
자료: 육동한·박상헌·염명배·전지성(2017)

- 2015년 이후 고향납세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음
 - 200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이에 일본 정부는 원스톱 특례제도, 고향납세제도의 다양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등 고향납세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특히 고향납세 이용 후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특례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15년 4월부터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향납세로 기부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고향납세 납부가 5개의 지방자치단체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 공제되는 특례(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러한 제도 개편의 효과로 2015년 기부금액은 전년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하였음

2)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세액공제 방식

- 고향납세제도는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통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함
 -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고향납세에 대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통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짐
 - 소득세는 고향납세를 시행한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개인주민세는 고향납세를 시행한 다음 연도의 개인주민세에서 공제가 이루어짐
 - 개인주민세로부터의 공제는 기본분과 특별분으로 구분됨

〈그림 2-2〉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세액공제 구조



자료: 육동한·박상헌·염명배·전지성(2017)

-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부를 한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주소지의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함
 - 확정 신고를 할 때에는 기부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기부 증명서, 영수증, 이체 영수증이 필요함
 - 확정 신고를 할 경우 공제액 계산에 따라서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공제액이 결정됨
 - 소득세분은 다음 연도의 소득세로부터 공제되며, 개인주민세분은 다음 연도의 개인주민세로부터 공제(감액)됨
- 2015년 4월 1일부터 원스톱 특례제도가 시행되어 기부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가 5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납세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원스톱 특례제도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로부터 공제가 되지 않고, 공제액 전액이 다음 연도의 개인주민세로부터 공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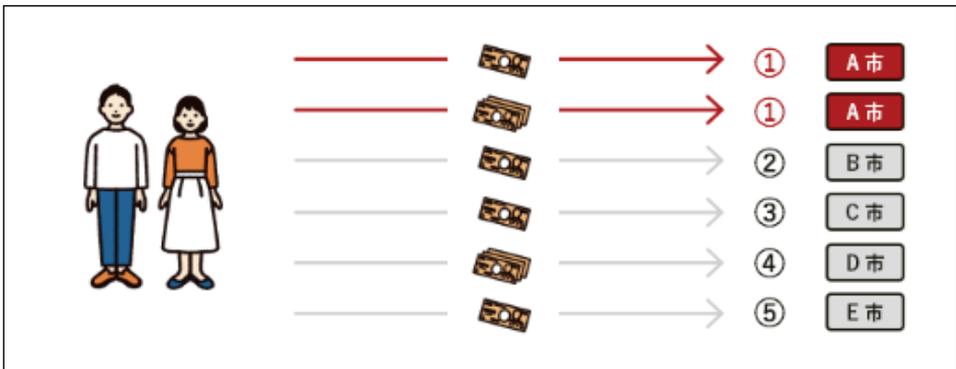
2. 고향납세제도 개편 내용

1)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 원스톱 특례제도는 고향납세 이용 후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칙적으로는 고향납세를 한 다음 연도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고향납세액의 일정액에 대해 고향납세를 한 당해 연도의 소득세에 대한 환급과 다음 연도 개인주민세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짐
 -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가 5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신청하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공제를 받는 특례조치를 도입하였음

- 고향납세를 한 다음 연도의 개인주민세에서 소득세 공제 상당액도 한 번에 감액됨
 -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신고특례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기부한 지자체에 송부함
 - 기부금 상한액 내에서 기부금 중 자기부담금 2,000엔을 뺀 금액을 개인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함
- 원스톱 특례제도의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음
- 연간 총 급여소득이 2천만 엔 미만인 급여소득자¹⁾는 확정 신고가 불필요하지만, 급여소득이 2천만 엔 미만(약 2억 원)을 넘는 급여소득자 및 의료비공제 등으로 확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확정 신고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야 함
 - 1년 간 5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확정 신고가 불필요하며,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번 기부를 하더라도 1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어 그 밖의 4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함

〈그림 2-3〉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



1) 확정 신고가 필요한 자는 ‘개인사업자, 부동산수입 등 급여 외 수입이 있는 자, 급여소득이 총액 2천만 엔을 초과하는 자, 2곳 이상에서 20만 엔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함.

- 1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번 기부를 할 경우, 기부를 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그림 2-4〉 1년간 기부처가 5개 지자체 이내인 자



- 원스톱 특례제도의 신청절차는 '신고특례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고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송부하는 단계로 구성됨
 - 기타 필요서류에는 개인번호(마이넘버) 카드, 통지카드(마이넘버를 통지한 카드),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복사본과 신분증 복사본 중 1가지가 포함됨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터넷신청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함
- 원스톱 특례제도가 시작된 2016년도부터 개인주민세 공제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18년도 기준 약 110만 명이 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2018년도 기부세액공제 이용자가 295.9만 명이므로 3분의 1 이상이 원스톱 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크라우드펀딩(GCF)형 고향납세제도 도입

- GCF(Government Crowd Funding)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기부를 하면 기존의 고향납세제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임

〈그림 2-5〉 크라우드펀딩(GCF)형 고향납세제도

<p>受付中 2019年03月06日～</p>  <p>佐賀県発 空家活用モデル第一弾 地域と繋がるゲストハウスで 街なかを再生!</p> <p>空家・空地と地域がつながる街づくり！佐賀県発「空家・空地活用システム」</p> <p>佐賀県NPO支援 目標金額1,000,000円</p> <p>25.5%</p> <p>寄附金額 255,000円 終了まで 86日</p> <p>♡お気に入り</p> <p>詳細を見る</p>	<p>受付中 2019年03月01日～</p>  <p>被災地で捜索救助活動を行う 「空飛ぶ医師団」プロジェクト</p> <p>今夏の災害に備えて「空飛ぶ医師団」の災害支援活動にご支援をお願いします</p> <p>佐賀県NPO支援 目標金額3,000,000円</p> <p>3.8%</p> <p>寄附金額 115,000円 終了まで 83日</p> <p>♡お気に入り</p> <p>詳細を見る</p>	<p>受付中 2019年03月01日～</p>  <p>生まれ変わるゆるキャラ 『はなてい』に愛の手を！</p> <p>阪南市のイメージキャラクター『はなてい』を生まれ変わらせて阪南市をもっともっと元気に</p> <p>大阪府阪南市 目標金額1,000,000円</p> <p>38.4%</p> <p>寄附金額 384,000円 終了まで 22日</p> <p>♡お気に入り</p> <p>詳細を見る</p>
<p>受付中 2019年02月25日～</p>  <p>つくり手とつかい手をつなぐ 佐賀の伝統工芸を絶やさない！</p> <p>【第2弾】有田焼を始めとする佐賀の伝統工芸を100年先も続く産業にしたい！</p> <p>佐賀県NPO支援 目標金額3,000,000円</p> <p>44.3%</p> <p>寄附金額 1,330,000円 終了まで 76日</p> <p>♡お気に入り</p> <p>詳細を見る</p>	<p>受付中 2019年02月22日～</p>  <p>上島町 花粉症×林業対策プロジェクト</p> <p>花粉症対策×海へと繋がる島の山林を守りたい</p> <p>愛媛県上島町 目標金額3,000,000円</p> <p>1.3%</p> <p>寄附金額 40,000円 終了まで 74日</p> <p>♡お気に入り</p> <p>詳細を見る</p>	<p>受付中 2019年02月20日～</p>  <p>難病の子どもたちに治療法を 「私、ずっと注射しなくちゃいけないの？」</p> <p>“不治の病”と生きる子どもたちに“治療”を一針を刺さなくていい日々を届けたいー</p> <p>佐賀県NPO支援 目標金額25,000,000円</p> <p>5.6%</p> <p>寄附金額 1,416,000円 終了まで 72日</p> <p>♡お気に入り</p> <p>詳細を見る</p>

자료: ふるさとチョイス(<https://www.furusato-tax.jp/gcf/?header>)

-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답례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이러한 측면에서 GCF는 답례품에 좌우되지 않고 기부금의 사용처에 공감하는 주민들로부터 기부를 받는다는 점에서 고향납세제도의 의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GCF는 기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가능한 제도임
 -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기부금을 모금하게 됨
 -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답례품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이러한 GCF는 기부자의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음
 - 외지인이 특정지역을 응원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사용 용도를 명시하는 것이 기부자의 공감을 얻기 쉬움
 - 반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공헌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됨

〈표 2-1〉 기부자 입장에서 본 고향납세제도 선택방식 및 절차

답례품에서 선택	사용처에서 선택
	
<p>1. 답례품 선택: 고향납세에서는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으로 과일, 육류, 술 등 지역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음.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권, 상품권 등도 있어 지역선택 시 받고 싶은 선물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음</p>	<p>1. 사용처(프로젝트)에서 기부처 선택: 복구지원, 스포츠, 음악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힘쓰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목적임. 기부자의 기부가 무엇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명확한 것이 특징임</p>
<p>2. 개략적 사용처 선택: 교육, 사회복지, 스포츠, 환경정비 등,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정 가능함.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부자가 스스로 도움이 되고 싶은 사용처를 지정하거나, 잘 모를 때에는 '지자체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선택함</p>	<p>2. 답례품 선택: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답례품을 주는 경우가 있음. 지원 금액(기부 금액)에 따라 지정된 답례품 중에서 자유롭게 조합도 가능함. 또한 답례품을 받지 않고 기부도 가능함</p>
<p>3. 기부: 연 수입, 가족구성, 거주 지역으로부터 산출된 기부 상한액만큼 기부함 (상한액 이상을 기부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함)</p>	<p>3. 기부: 기존 고향납세제도와 동일함</p>
<p>4. 답례품 수령</p>	<p>4. 프로젝트 진행상황 체크: 목표금액에 자신이 기부한 금액이 가산되며, 갱신 및 진척상황 확인이 가능함</p>
<p>5. 공제: 개인주민세 공제 및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며, 2~3월에 확정 신고함(원스톱 특례제도 이용 시에는 확정 신고 불필요함)</p>	<p>5. 공제: 기존 고향납세제도와 동일함</p>

자료: ふるまる(<https://www.furumaru.jp/gcf/>)

3) 총무성 지원 확대²⁾

- 총무성은 GCF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대표적으로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와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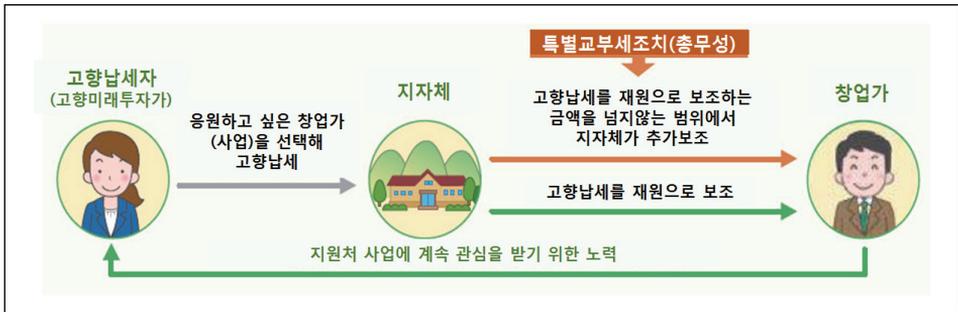
가.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

-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의 창업지원 촉진과 함께 고향납세 구조를 활용해 지역 밖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확대를 도모함
 - 고향납세를 활용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향납세 모집을 통해 기부문화 양성을 도모함
-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가에게 GCF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지원함
 - 창업가는 기부자를 ‘고향미래투자가’로 인식하고 기부자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함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창업가의 사업설립 초기자금을 지원하면, 총무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제공함
-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의 사무절차는 다음과 같음
 - 프로젝트 선정 및 창업가 모집을 실시함(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및 ‘지원처 사업에 계속 관심을 받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창업가)
 - 제안 받은 창업가 사업을 심사함(지방자치단체)

2) 총무성 ‘ふるさと納税を活用した地域における起業支援及び地域への移住・定住の推進について’.

-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된 창업가 사업에 대해 GCF 사이트 및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함(지방자치단체)
- 응원하고 싶은 창업가(사업)를 선택해 고향납세를 실시함(고향미래투자자)
-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창업가에 대한 보조를 제공함(지방자치단체)
-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처 사업체 계속 관심을 받기 위한 노력'을 실시함(창업가)
-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에 관한 사업보고를 실시함(창업가)
- 웹사이트 및 공보지 등에 고향납세 활용상황을 공표함(지방자치단체)

〈그림 2-6〉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의 개요



자료: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사이트(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support/)

- 창업가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교부세 조치는 다음과 같음
 - 광역(도도부현) 및 기초(시구정촌)를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해당 창업가에 보조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창업가에 대해 사업설립 초기투자비용(시설정비비, 기계장치비, 비품비)을 보조하는 경우 해당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함

- 1개 사업 당 대상경비 상한액은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보조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함(또는 2,500만 엔 이내)
- ‘대상경비 × 조치율 0.5 × 재정력 보정’을 통해 특별교부세가 지원됨

〈표 2-2〉 창업가에 대한 추가보조의 특별교부세 조치

구분	설명
시설정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건물, 건물부속설비 및 건축물에 관한 설계, 공사감리, 건축공사, 수선 및 구입에 관한 경비 (용지취득비는 제외)
기계장치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계장치에 관한 설계, 공사감리, 수선, 구입 및 리스·렌탈에 관계된 경비
비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품구입 및 리스·렌탈에 관한 경비

- 그리고 창업가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심사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다음과 같음
 - 광역(도도부현) 및 기초(시구정촌)를 대상으로 함
 - 창업가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심사하는 외부전문가 보수 등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로의 창업가에 대한 보조는 대상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대상경비 × 조치율 0.5 × 재정력 보정’을 통해 특별교부세가 지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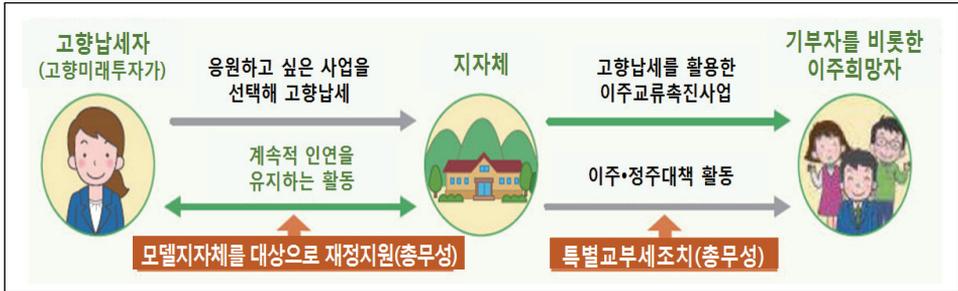
나.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장기적으로 이주정주인구 증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하는 지역 밖의 사람들(관계인구³⁾)을 늘리는 것이 중요함

3) 관계인구: 장기적 ‘정주인구’도 단기적 ‘교류인구’도 아닌, 지역과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임. ‘고향’에 마음을 두고 있는 지역 밖 인재와의 계속적·복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의 ‘고향’과의 관련성을 심화·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総務省‘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

-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는 고향납세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 활동을 통해 미래의 이주·정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는 GCF를 활용하여 사업에 공감하는 사람으로부터 고향납세를 모아 이주교류 촉진사업을 실시함
 - 기부자는 이주 등에 일정한 관심을 가진 자라고 상정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기부자를 ‘고향미래투자자’로 인식하고 고향납세를 계기로 계속적 인연을 갖는 활동을 함
 - 이와 동시에 기부자를 비롯한 이주희망자에 대해 이주·정주대책사업을 전개함

〈그림 2-7〉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의 추진방법



자료: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사이트(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furusato/support/)

-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의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GCF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및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함(지방자치단체)
 -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해 고향납세를 실시함(고향미래투자자)
 -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이주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함(지방자치단체)
 - 고향납세를 계기로 계속적 인연을 갖는 활동 실시함(지방자치단체)

- 고향미래투자가와 계속적 인연을 갖는 활동의 모델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함
 - 2018년 관계인구 창출사업에 2.5억 엔의 예산을 투입함
 - 그리고 챌린지 고향워크 10.1억 엔, 지역인재환류촉진 1.4억 엔, 지방 이주교류촉진 1.4억 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2-3〉 관계인구의 유형

관계인구 유형 1-①	관계인구 유형 1-②	관계인구 유형 2
지역에 뿌리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 인구를 모집하는 구조 설계 및 지역과 계속적 인연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고향납세 기부자에 대해 지역과 계속적 인연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기술·지식을 가진 도시부 인재 등이 지역에서 지자체와 협동해 실천 활동 등을 통해 도시부에서 살면서 지역과제 해결에 계속 관계하는 기회 제공 활동
16단체(2018년 채택)	8단체(2018년 채택)	9단체(2018년 채택)

자료: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포털사이트(<http://www.soumu.go.jp/kankeijinkou/descriptio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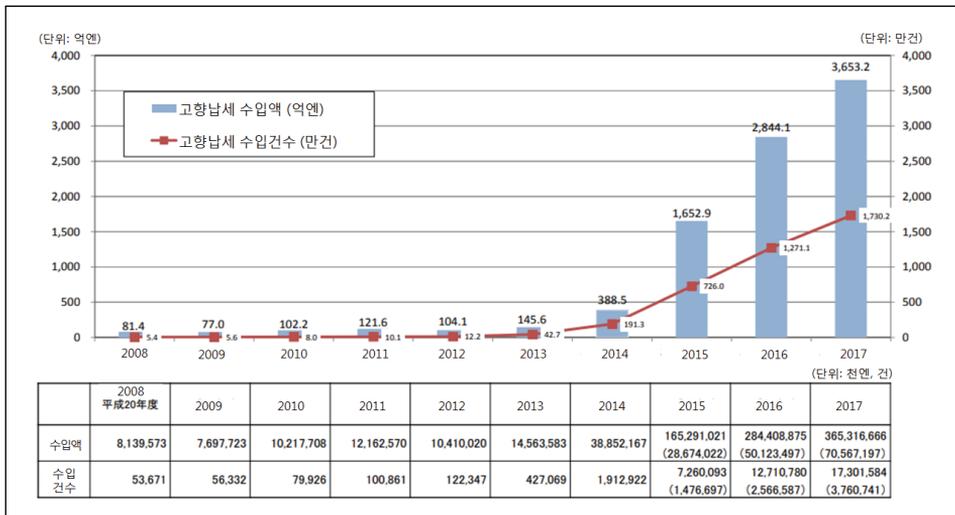
- 이주·정주대책 활동에 대한 특별교부세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이주정주대책 활동의 필요경비에 관해 특별교부세 조치가 강구되고 있음
 - 대상사업은 해당지역에 이주희망자 등에 대한 정보발신, 이주체험실시, 이주자의 환경정비, 이주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대응, 이주자의 정주·정착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됨

3. 고향납세 현황⁴⁾

1) 수입액 및 건수 추이

- 2017년도 기준 고향납세 수입액은 약 3,653억 엔(약 3조 6530억 원), 수입건수는 약 1,730만 건으로 나타남
- 2008년과 비교할 때, 수입액은 약 45배 증가하였고 수입건수는 322배 증가하였음
-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2015년 이후 수입액 및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2-8〉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 추이



자료: 総務省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2017年度実績)’

4) 총무성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 자료(2018.7.6.)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고향납세 수입액의 증가 원인은 답례품제도 및 미디어 홍보,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되고 있음
 - 미디어 등에 고향납세가 많이 소개되어 제도의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기부자의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됨
 - 제도의 충실성 및 중개사이트 등장으로 절차가 간편화 되었음
 - 단, 2018년도는 막판 수요⁵⁾에 의한 이용급증이 예상되며, 2019년도 이후는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2-4〉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광역자치단체)

(단위: 백만엔, 건)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수입액	건수	수입액	건수
홋카이도	36,503	2,203,150	27,124	1,633,764
아오모리	3,856	129,609	2,015	99,973
이와테	3,676	182,014	3,040	175,205
미야기	3,587	112,970	2,160	96,621
아키타	2,271	132,436	1,650	87,157
야마가타	22,611	1,319,505	22,533	1,155,037
후쿠시마	3,084	101,950	1,709	55,744
이바라키	8,991	408,649	7,325	325,015
토치기	1,507	44,768	1,419	49,216
군마	4,879	148,143	4,869	136,952
사이타마	2,264	88,223	2,626	85,693
치바	4,846	233,375	6,419	172,780
도쿄	2,267	19,179	,871	14,426
카나가와	7,360	160,398	4,970	109,671
니가타	6,431	285,099	4,337	190,667
토야마	443	16,750	533	21,558

5) 총무성에서 2015년 4월 이후 매년 답례품관련 통지를 내고 있으며, 2017년 4월 통지에서는 답례비율을 30% 이하로 할 것을 요청함. 2017년 9월에는 총무대신이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지방자치단체(예를 들어 고향납세액에 대한 답례비율 30% 초과, 답례품이 지역생산품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외로 할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수입액	건수	수입액	건수
이시카와	1,927	64,212	1,728	60,314
후쿠이	1,747	69,742	1,269	57,297
야마나시	4,440	197,000	2,678	125,526
나가노	13,463	467,201	19,001	452,520
기후	10,893	365,254	5,215	206,058
시즈오카	18,550	716,998	17,636	695,542
아이치	5,384	168,432	4,096	143,268
미에	2,945	97,949	3,156	95,274
시가	3,492	79,319	3,037	67,827
교토	1,339	39,257	1,197	37,911
오사카	20,075	994,419	7,331	316,487
효고	6,979	244,837	6,730	262,164
나라	1,477	50,167	933	35,921
와카야마	10,346	610,862	3,633	227,270
돗토리	3,559	181,967	3,540	187,993
시마네	3,241	145,012	3,440	171,822
오카야마	6,927	208,022	6,325	185,199
히로시마	1,456	61,016	1,979	53,911
야마구치	1,815	70,003	1,663	70,450
토쿠시마	826	42,334	602	31,867
카가와	2,926	168,578	2,139	122,515
에히메	2,438	113,829	2,459	124,741
코치	10,687	657,264	7,437	483,018
후쿠오카	16,475	918,182	9,528	480,910
사가	31,547	1,711,533	17,763	972,915
나가사키	8,349	364,733	8,317	333,381
쿠마모토	5,385	226,014	8,047	279,637
오이타	6,326	253,357	4,164	131,241
미야자키	24,903	1,553,016	20,602	1,225,401
카고시마	18,153	780,447	13,501	608,012
오кина와	2,674	94,410	1,664	60,909
합계	365,317	17,301,584	284,409	12,710,780

자료: 総務省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平成29年度実績)’

주: 수입액 및 수입건수에는 역내 시구정촌분도 포함

- 2017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를 살펴보면, 홋카이도의 수입액과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홋카이도의 고향납세 수입액은 36,503백만 엔으로 전체 수입액의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가(31,547백만 엔)와 미야자키(24,903백만 엔)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홋카이도의 고향납세 건수는 2,203,150건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가(1,711,533건)와 미야자키(1,553,016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5〉 기초자치단체 중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 상위단체

(단위: 백만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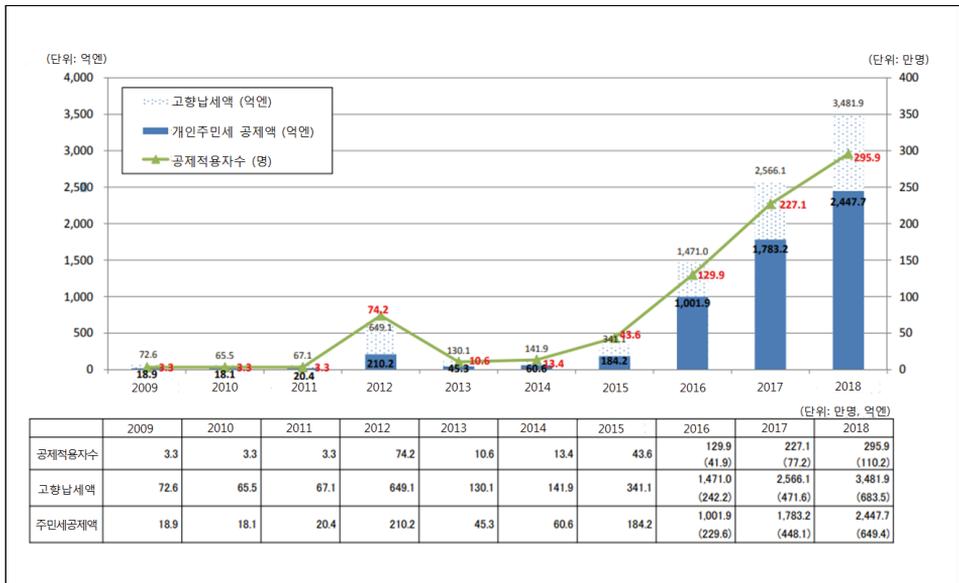
지자체명		수입액	수입건수
(광역)	(기초)		
오사카부	이즈미시노시	13,533	862,082
미야자키현	츠노정	7,915	430,018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7,474	523,164
사가현	미야키정	7,224	122,058
사가현	카미미네정	6,672	510,453
와카야마현	유야사정	4,951	325,558
사가현	카라츠시	4,389	384,019
홋카이도	네무로시	3,973	242,022
코치현	나하리정	3,906	196,108
시즈오카현	후지에다시	3,708	107,762
오이타현	쿠니사키시	3,239	142,974
카고시마현	시부시시	3,040	153,221
홋카이도	모리정	2,981	224,298
아마가타현	텐도시	2,899	172,284
시즈오카현	오야마정	2,737	84,861
시즈오카현	아이즈시	2,689	131,307
사가현	우레시노시	2,670	202,032
미야자키현	타카나베정	2,569	208,771
기후현	이케다정	2,552	41,813
나가노현	오타니촌	2,424	38,635

자료: 総務省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平成29年度実績)’

- 2017년 기준 기초자치단체별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를 살펴보면, 오사카부 이즈미시노시의 수입액과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오사카부 이즈미시노시의 고향납세 수입액은 13,533백만 엔으로 전체 수입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야자키현 츠노정(7,915백만 엔)과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쥬시(7,474백만 엔)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오사카부 이즈미시노시의 고향납세 건수는 862,082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쥬시(523,164건)와 사가현 카키키네정(510,453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개인주민세 공제액 추이

〈그림 2-9〉 개인주민세 공제액 추이



자료: 総務省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平成30年度課税における住民税控除額の実績等)'

- 2018년도분 개인주민세 공제액은 약 2,448억 엔(약 2조 4,500억 원)이며, 공제적용자 수는 약 296만 명에 해당함
 - 전년대비 공제액은 약 1.37배, 공제적용자수는 약 1.30배 증가함
 - 고향납세액 증가와 함께 개인주민세 공제액도 증가함
- 공제적용자는 납세의무자 전체의 일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이용확대 여지가 충분함
 - 2016년 결산 기준 개인주민세(시정촌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 수는 약 5,680만 명이며, 2018년도분 공제적용자수는 약 296만 명으로 전체 납세의무자 중 공제적용자는 약 5.2%에 해당함
- 2018년도 과세의 고향납세 관련 공제 적용상황을 살펴보면 도시부의 개인주민세 공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도쿄도는 646억 엔(약 6,500억 원)으로 전체 개인주민세 공제액의 약 26.4%에 해당함
 - 그 다음으로 카나가와현(약 257억 엔, 10.5%)과 오사카부(약 212억 엔, 8.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6〉 광역지자체별 공제적용자 및 공제액(2018년 기준)

(단위: 명, 백만엔)

지자체명	공제적용자	고향납세액	개인주민세 공제액
홋카이도	79,623	8,378	5,729
아오모리	8,855	4,946	1,061
이와테	9,139	986	693
미야기	33,856	3,572	2,556
아키타	6,832	660	462
야마가타	10,365	1,070	733
후쿠시마	17,829	1,905	1,328
이바라키	45,162	4,511	3,313
토치기	26,864	2,922	2,108
군마	28,398	3,297	2,292
사이타마	178,789	17,710	13,121
치바	169,515	18,129	13,276

지자체명	공제적용자	고향납세액	개인주민세 공제액
도쿄	638,405	93,110	64,576
카나가와	316,128	35,419	25,721
니가타	21,967	2,488	1,676
토야마	12,023	1,147	812
이시카와	17,293	1,786	1,265
후쿠이	9,435	923	654
야마나시	10,743	1,310	909
나가노	24,347	2,632	1,847
기후	37,737	4,059	2,867
시즈오카	63,612	6,795	4,844
아이치	216,035	24,949	17,961
미에	34,702	3,625	2,606
시가	33,800	3,363	2,459
교토	69,105	7,809	5,554
오사카	272,355	29,280	21,192
효고	161,843	18,175	13,014
나라	36,899	3,928	2,844
와카야마	14,755	1,614	1,126
돗토리	5,984	577	407
시마네	6,148	662	419
오카야마	32,599	3,171	2,278
히로시마	50,164	5,249	3,727
야마구치	17,852	1,738	1,232
토쿠시마	9,949	1,091	763
카가와	15,358	1,548	1,124
에히메	16,524	1,915	1,318
코치	6,937	679	475
후쿠오카	99,801	11,035	7,515
사가	10,714	1,023	717
나가사키	13,668	1,646	1,130
쿠마모토	16,613	1,871	1,304
오이타	11,584	1,327	879
미야자키	10,956	1,118	772
카고시마	14,328	1,628	1,141
오кина와	12,986	1,415	973
합계	2,958,546	348,192	244,774

자료: 総務省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平成30年度課税における住民税控除額の実績等)’

3) 고향납세 사용처

-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처(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 등) 선택여부를 살펴보면 선택가능 지역이 감소함(2016년 기준)
 - 고향납세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690단체(94.5%)에서 1,649단체(92.2%)로 감소함
 - 사용처를 선택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95단체(5.3%)에서 134단체(7.5%)로 증가함
- ‘선택가능’이라고 답한 단체의 선택가능 범위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분야와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모두 감소함(2016년 기준)
 -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은 1,609단체(90.0%)에서 1,587단체(88.8%)로 감소함
 -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은 255단체(14.3%)에서 200단체(11.2%)로 감소함
- 사용처를 선택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처는 교육·인재육성 분야가 가장 많고, 재해지원 복구 분야가 가장 적음

〈표 2-7〉 고향납세의 사용 분야

(단위: 개)

분야	단체
교육 인재육성	1,367
건강 의료 복지	1,309
아동 육아	1,280
지역 산업진흥	1,215
환경 위생	1,175
스포츠 문화진흥	1,124
마을만들기 시민활동	1,057
관광 교류 정주촉진	992
안심 안전 방재	740
재해지원 복구	149

-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교류 촉진사업(106건)이 가장 많고 재해지원 복구 사업(18건)이 가장 적음

〈표 2-8〉 실제 수행한 사업의 내용

분야(사업수)	사업명	지자체명	활동내용
마을만들기 시민활동 (60사업)	다함께 아이들 안전지킴대	후쿠이현 사카이시	아동, 학생 등학교시 통학로에서 안전을 지키는 “아동지킴대”의 유니폼 통일하여, 아동에게 안심감 부여, 봉사활동 의식고양 도모
스포츠 문화진흥 (91사업)	고지대 트레이닝용 수영장, 관련시설정비사업	나가노현 토미시	일본 굴지의 고지대 트레이닝 지역을 목표로 표고1750m의 유노마루 고원에 고지대 트레이닝용 수영장과 관련 시설 정비
건강 의료 복지 (65사업)	오사카 스이타 하우스 지원금	오사카부 스이타시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에 입원하는 소아환자 가족이 저렴한 요금으로 숙박 가능한 ‘오사카 스이타 하우스’ 이전에 필요한 비용 지원
환경 위생 (74사업)	삼림보전사업	홋카이도 신토쿠정	마을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식재사업을 통해 저탄소화 및 환경에 배려한 마을만들기 실시
교육 인재육성 (64사업)	미노(美濃)도자기 제자육성	기후현 타지미시	지역자랑인 미노도자기 후계자를 비롯해 도자기디자이너, 크라프트작가, 도예가를 폭넓게 육성
아동 육아 (64사업)	왕따, 등교거부로 고민하는 고교생 지원	후쿠오카현	고교생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카운슬링, 학습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는 ‘학습지원센터’ 보조
지역 산업진흥 (88사업)	멧돼지뼈 라면 전문점 개업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수해대책과 새로운 명물을 만들기 위해 지역만들기 협력대원에 의한 ‘멧돼지뼈 라면전문점’ 개업 지원

분야(사업수)	사업명	지자체명	활동내용
관광 교류 정주촉진 (106사업)	야마가타 토란탕(芋蕪)문화의 미래전승을 위한 일본 최대냄비 제작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일본 제일의 토란탕축제'를 지원하는 일본최대냄비 제작
안심 안전 방재 (20사업)	안전·안심하고 살수있는 마을만들기	홋카이도 이시카리시	범죄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을 목표로, 교통안전추진, 방범활동, 폭 력추방운동 등의 활동 실시
재해지원 복구 (18사업)	오오츠치(大槌)역 복구사업	이와테현 오오츠치정	동일본대지진 해일로 인해 유실된 오 오츠치역 재건으로 쿠시로지역 재건 을 지향

- 고향납세 수입액 및 활동상황을 공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고향납세 수입액 실적과 활용상황 모두를 공표하는 지자체가 크게 증가함
 - 2016년 기준 433개 단체에서 기부금 총당사업의 진척상황 및 성과에 대해 기부자에게 보고하고 있음

〈표 2-9〉 고향납세 수입액 및 활동상황 공표현황

(단위: 개)

공표 범위	2017년	2016년
수입액 실적 활용상황(사업내용 등) 모두 공표	1,138	1,040
수입액 실적은 공표, 활용상황(사업내용 등)은 미공표	417	450
활용상황(사업내용 등)은 공표, 수입액실적은 미공표	34	30
수입액실적 활용상황(사업내용 등) 모두 미공표	199	268

- 고향납세 모집 및 수입 등의 수반 경비를 살펴보면, 답례품 조달 관련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2017년 기준)

〈표 2-10〉 고향납세 모집 및 수입 등의 수반 경비(2017년)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수입액 중 비율
답례품 조달 관련비용	140,615	38.5
답례품 송부 관련비용	24,098	6.6
홍보 관련비용	5,570	1.5
결제 등 관련비용	7,752	2.1
사무 관련비용, 기타	24,671	6.8
합계	202,707	55.5

- 총무대신 통지 관련 시구정촌의 대응은 다음과 같음
- 고향납세액의 30%를 초과하는 답례품 및 지역생산품 이외 답례품을 송부하는 시구정촌으로, 2018년 8월까지 재고할 의향이 없고 2017년도 수입액이 10억 엔 이상인 시구정촌은 총 12개임

〈표 2-11〉 총무대신 통지 관련 시구정촌의 대응

(단위: 억엔)

구분	규모
이바라키현	사카이정(21.6)
기후현	세키시(14.1)
시즈오카현	오야마정(27.4)
시가현	오우미하치만시(17.7)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135.3)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15.6), 코게정(12.1)
사가현	카라츠시(43.9), 우레시노시(26.7), 키야마정(10.9), 미야키정(72.2)
오이타현	사이키시(13.5)

주: 총무성 조사 및 시구정촌 인터뷰 결과(2018년 6월 기준, 괄호안은 2017년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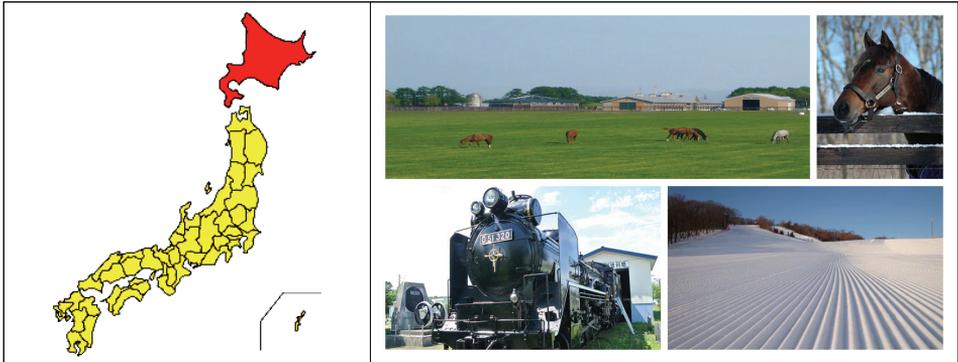
제2절 고향납세제도 사례

1. 답례품형 고향납세제도 사례6)

1)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

-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 지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홋카이도 남서부에 위치한 면적 237km², 인구 약 8.3천만 명의 기초자치단 체임(2005년 보다 1천 명 가량 인구가 감소하였음)
 - 일본 유수의 경종마 산지, 일본 최초의 치즈 전문공장발상지로 유명함
 - 낙농, 축산, 종마 및 다양한 농업이 주요산업인 아비라정은 도시의 베드타운으로 매력을 어필하며 이주촉진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인구 감소,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후계자 문제 등 농업으로 발전해온 지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그림 2-10〉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



자료: 구글이미지, さとふる(<https://www.satofull.jp/town-abira-hokkaido/>)

6) さとふる ‘ふふさと納税と地域経営：制度の現状と地方自治体の活用事例’ 발췌 요약정리 (<https://www.satofull.jp/static/company/books/161201/>).

○ 아비라정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8년부터 고향납세 활동을 개시했으나 기부금 모집성과는 매우 미미하였음
- 고향납세 중개사이트를 활용하여 ‘지역생산 한정 답례품’을 어필하여 본격적으로 고향납세 활동을 시작하여 2015년도 기부금액 2억 8,900만 엔으로 비약적 성과를 달성함
- 최고 인기상품은 2015년도 ‘さとふる’사이트 전국 3위를 달성한 ‘하루유키 브랜드’의 햄, 비엔나 등 11종 종합세트임
- 그리고 사용자 지정한 고향납세 기부 중 특징적인 내용으로 ‘마을만들기 펀드’가 있으며, 2019년 이설예정인 증기기관차 ‘D51’보존, 사이클링 대회, 멜론축제, 신제품 개발지원 등에 활용하였음
- ‘인재육성 사업’에서는 후계자 부족에 고심하는 농축산업을 위해 신규 취농 대책사업,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출신지역에 착안하여 톱애슬릿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처음에는 답례품으로 10상품을 모으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업자 신청이 계속되어 70상품까지 확충하였음
- 향후에는 ‘체험형 답례품’을 늘여갈 계획으로 ‘테스트 이주’, ‘1구좌 마주(馬主)권’, ‘유채꽃 웨딩’ 등을 검토 중에 있음

〈그림 2-11〉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 답례품



자료: さとふる 아비라정(<https://www.satofull.jp/town-abira-hokkaido/>).

○ 기부금액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2〉 홋카이도 아비라정(北海道安平町)의 기부금액과 사업내용

구분	기부금액 (엔)	건수 (건)	사업명
마을만들기 펀드	22,125,000	1,827	목장사이클링대회 연주회 문화협회 기록 기념지 작성 할로윈행사용품 제작 콘서트 자치회방재비품 회관개보수
마을만들기 사업	43,744,000	3,709	센터개보수 커뮤니티센터 정비사업 방재정보네트워크구축사업 전문의 확보 보조 지역의료연계지원사업 신규간호사 고용보조 주택리폼 보조
산업만들기 사업	34,133,000	2,857	녹비도입촉진사업 지역농업지원시스템정비 토양분석촉진사업 경축연계지원사업 낙농축산대책사업 조림촉진사업 정유림 조성사업
인재만들기 사업	21,923,000	1,861	신규취농대책사업 톱애슬릿 지원사업
정장(町長) 일임 사업	167,657,000	14,600	(마을만들기 펀드에 적립)
합계	289,582,000	24,854	-

2)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지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나가사키현 북서부의 히라도 섬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으로 면적 235km², 인구 약 3만 명 규모임
 -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으로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으며, 히라도시에서는 ‘카스가 집락(春日集落) 및 야스만다케(安満岳)와 ‘나카에노시마(中江ノ島)’가 등록되었음
 - 나가사키현에서 최초로 천주교 포교가 시작된 곳으로 지금도 일본에서는 드물게 시민의 10%가 천주교 신자이고 지역에 14개 성당이 있음

〈그림 2-12〉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자료: 구글이미지, 達人Navi平戸(https://www.hirado-net.com/?page_id=8469).

○ 나가사키현 히라도시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4년에 고향납세 전국 최다 수입(약 15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고향납세 답례품에 대한 카탈로그 제작과 포인트 제도를 통해 통신판매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고향납세자에게 금액에 따라 시에서 포인트를 부여하면 납세자는 각자 보유한 포인트 범위에서 카탈로그 안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음
- 이용자는 납세시기와 답례품 선택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고향납세 기부 시 답례품을 선택하지만, 유효기간이 없는 포인트 부여를 통해 다음해 이후에도 답례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답례품 받는 시기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러한 측면에서 답례품을 통신판매화 하여 고향납세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존재함
- 하지만 재이용자 확충 목적에서 볼 때, 주로 고품질·세련된 상품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대도시권의 이용자가 많다는 측면에서 답례품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확보하면서 이용자 편리성을 고민해야 함
- 만약 고향납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향납세 답례품 산업으로 성장해온 지역 업체들을 고려하면 다음단계에 대한 예비도 필요함
- 더욱 극심한 경쟁체제인 통신판매 시장까지 염두에 두자 답례품 패키지 디자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됨
- 택배업체인 사가와 택배와 답례품 포장발송을 제휴하여 답례품 발송에 사용되는 박스를 공동제작하며, 박스에 '히라도 & 사가와' 표기를 함께 넣어 택배사 측에서도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배달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함
- 소비자에게 답례품 수요가 있는 지금이 지역산업 강화를 위한 최고·최후의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액의 사용처이며, 현재 수입액이 미래의 수익원이 되는 곳에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2-13〉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답례품



자료: 나가사키현 e-books (https://www.nagasaki-ebooks.jp/?p=5116&post_type=bookinfo)

- 기부금액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2008년 이후 실적 누계)
 - 사용 용도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61,298건(3,696백만 엔)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빛나는 인재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건수가 27,693건(1,369백만 엔)으로 나타남

〈표 2-13〉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 기부금액과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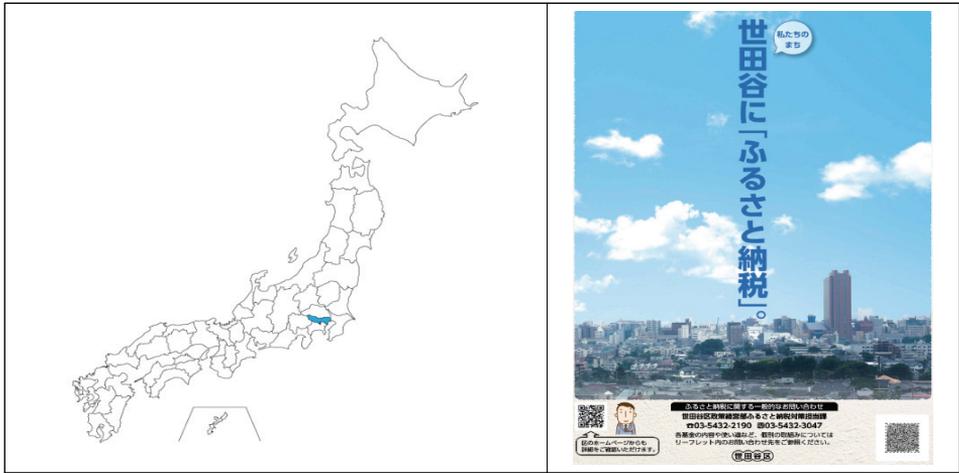
사용처	건수(건)	금액(엔)
빛나는 인재만들기 프로젝트	27,693	1,369,053,351
보석밭굴 프로젝트	15,273	760,057,321
계속 살고싶은 마을창출 프로젝트	22,620	959,284,409
시장일임	61,298	3,696,480,352
합계	129,731	6,866,547,475

2.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제도 사례

1)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 복지 분야

-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 지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도쿄도 23구 중 인구가 가장 많고(2018년 10월 기준, 93만 명) 면적은 두 번째로 넓은(58.05km²) 특별구임
 - 도쿄 특별구 중에서는 도심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어 베드타운형 인구유동을 보이며, 카나가와(神奈川県)현과 인접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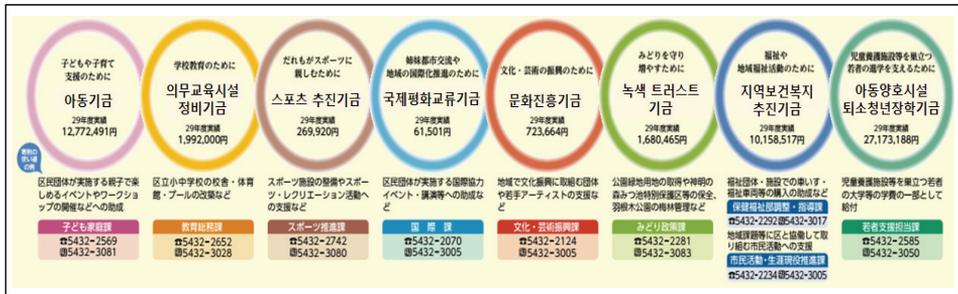
〈그림 2-14〉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



- 경위 및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도시권에서는 고향납세로 인한 지방세(구민세) 유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세타가야구는 전국 세액감소 지방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하였음(1위 요코하마시 56억 엔, 2위 나고야시 33억 엔)

- 2015년 2.6억 엔, 2016년 16.5억 엔, 2017년 31억 엔, 2018년 41억 엔으로 세액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16억 엔은 보육원 5개소, 30억 엔은 학교 1개소를 개축할 수 있는 금액임)
- 대도시권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다는 점, 특히 구민이 거주구에 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어필했지만 효과는 미미하였음
- 2016년 4월부터 ‘세타가야구 아동양호시설 퇴소자 장학기금’을 개시하였으며, 대학 진학 시 월 3만 엔을 지원하였음
- 일반적인 ‘대부형 장학론’이 아닌 ‘급부형 장학금’이라는 키워드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음
- 2015년부터 시작한 아동양호시설 퇴소청년들을 위한 주택지원(고령자용 구영(區營)주택 공실 5곳을 월세 1만 엔으로 제공)과 연결시켜, 생활비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음
- 그리고 아동양호시설 퇴소자의 사회적 교류장소를 만드는 사업인 ‘세타가야 청년 페어 스타트’를 추가하였음
- 기존의 답례품형에 추가해 GCF형으로 8개 기금을 등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최초의 GCF형 고향납세제도로 평가됨
- 3만 엔 이상 기부자에게는 장애인시설 생산품, 세타가야미술관 오리지널 굿즈, 세타가야미술관 연간 프리패스 등의 기념품을 증정함

〈그림 2-15〉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 활동내용



자료: 세타가야구 고향납세 안내팸플렛(http://www.city.setagaya.lg.jp/kurashi/107/158/764/771/d00162650_d/fil/hurusato.pdf)

○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기부금액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4〉 도쿄도 세타가야구(東京都世田谷区)의 기부금액과 건수

년도	건수(건)	금액(엔)
2008	27	5,385,735
2009	19	4,614,625
2010	20	130,318,029
2011	20	5,942,800
2012	29	7,495,640
2013	32	2,168,143
2014	29	1,233,786
2015	43	15,805,716
2016	211	24,709,548
2017	823	50,643,643

2)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 마을만들기 분야

○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는 야마가타현의 현청소재지로 면적 381.6km², 인구 약 25만 4천 명 규모의 도시임

〈그림 2-16〉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



-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89년부터 일본제일의 토란탕 축제를 개최해 왔으며, 직경 6m의 대형냄비로 한번에 3만 그릇의 토란탕을 요리함
 - 새로운 냄비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 총액 4,400만 엔 중에서 2,700만 엔을 GCF형 고향납세로 충당할 목표를 설정하였음
 - 총 3,034만 엔 기부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기부금액에 따라 이벤트 관련 물품을 송부하였음

〈그림 2-17〉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 활동내용



자료: READYFOR (<https://readyfor.jp/projects/yamagataimoni>).

〈표 2-15〉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山形県山形市) 기부금액과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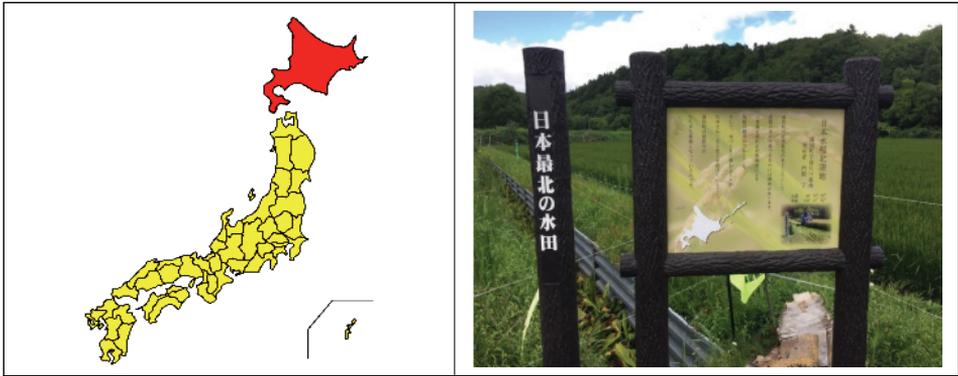
년도	건수(건)	금액(엔)
2008	29	1,280,000
2009	11	877,000
2010	8	150,000
2011	8	370,000
2012	10	1,480,000
2013	19	1,810,744
2014	1,026	12,102,613
2015	10,717	199,069,499
2016	67,881	1,254,354,432
2017	107,659	1,792,237,011

자료: ふるさとチョイス(<https://www.furusato-tax.jp/city/info/06201>).

3)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교육 분야

-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지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일본 최북단의 벼농사지역으로 농업, 낙농,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이 발달하였음
 - 면적 590.8km², 인구 약 2,800명의 소도시임

〈그림 2-18〉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자료: 홈페이지(<http://www.town.embetsu.hokkaido.jp/>)

- 홋카이도 엔베츠정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엔베츠 농업고등학교는 지역에 있어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학교이나 최근에 입학생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매력적인 학교만들기의 일환으로 논밭 상태관측 등의 농업 분야에 드론 활용, 태블릿을 활용한 교육정보화 등에 고향납세를 활용하도록 추진하였음
 - 삿포로시내 안테나숍 개설, TV방송 등 활발한 홍보로 인해 입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고향납세를 계기로 지역 외 출신자가 입학하였음(2015년 14명, 2016년 16명, 2017년 18명, 2018년 25명)

〈그림 2-19〉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활동내용



드론실습

삿포로시내의 학교 안테나숍

○ 2017년 기준 고향납세 건수는 8,357건이며, 기부금액은 140,497천 엔으로 증가하였음

〈표 2-16〉 홋카이도 엔베츠정(北海道遠別町) 기부금액과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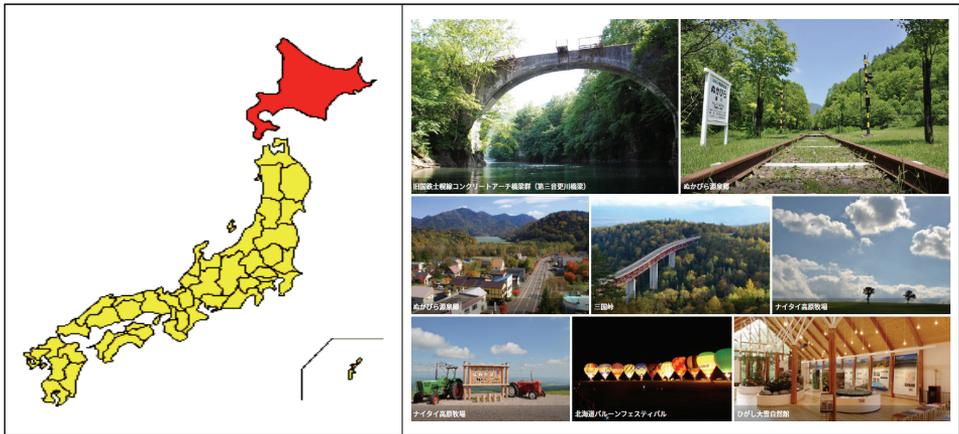
년도	건수(건)	금액(엔)
2008	0	0
2009	0	0
2010	12	2,604,000
2011	6	440,000
2012	8	3,590,000
2013	8	1,150,000
2014	10	2,155,000
2015	8,722	130,262,934
2016	7,653	130,619,668
2017	8,357	140,497,871

자료: ふるさとチョイス(<https://www.furusato-tax.jp/city/info/01486>)

4)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上士幌町): 육아 및 교육 분야

-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上士幌町) 지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홋카이도 토카치(十勝) 지방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5,017명 규모임
 - 약 700km² 면적의 77%가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밭농사, 낙농, 삼림 등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며, 일본에서 가장 넓은 공공육성목장인 나이타이(ナイタイ) 고원목장이 입지하고 있음

〈그림 2-20〉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上士幌町)



자료: ふるさとぶらす(<https://furusatoplus.com/local/016331/>).

-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육·저출산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2013년에 일본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납세 보육·저출산대책 꿈 기금’을 설치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보육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인증 보육원의 보육료를 10년간 완전무상화(2016년 4월)하였으며, 외국인 영어강사를 배치하였음

- 초등학교 교직원 추가배치를 통해 소인원학급을 실현하고, 음악·체육 등 전공교원을 배치하였음
- 육아세대의 주택구입비 보조 및 18세까지 의료비 무상화에도 기금을 활용하였음
-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직업안내, 이주자 체험하우스 소개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체험형 투어인 '카미시호로 견본시장 투어'를 개최하였음
- 2016년 이래 3년 간 136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 7월에 5천 명대 인구규모를 회복하였음

〈그림 2-21〉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上士幌町)의 활동내용



인증보육원

카미시호로 견본시장 투어

- 기부금액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보육원 보육료 무료화사업, 이문화 교류추진원 설치 사업, 원거리통원 지원 사업, 사립보육소 운영비 보조사업, 토요학습 추진 사업, 공영학원 개설사업, 고교생까지 아동의료비 조성사업 확대사업, 목관악기 구입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 2017년 기준 기부건수는 총 88,116건이며, 기부금액은 1,667백만 엔임

〈표 2-17〉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北海道上士幌町) 기부금액과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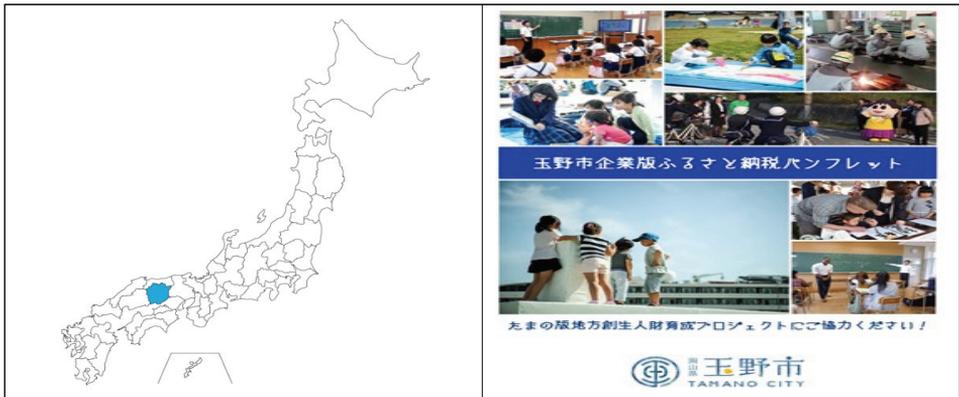
년도	건수(건)	금액(엔)
2008	1	50,000
2009	26	10,523,956
2010	17	10,896,100
2011	372	9,841,011
2012	969	15,959,020
2013	13,278	243,503,104
2014	54,648	974,753,618
2015	75,141	1,536,559,369
2016	95,183	2,124,829,457
2017	88,116	1,666,930,163

자료: 카미시호로정 홈페이지(<https://www.kamishihoro.jp/sp/ftax/00000265>)

5) 오카야마현 타마노시(岡山県玉野市): 기업판 고향납세

- 오카야마현 타마노시(岡山県玉野市) 지역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오카야마현 남단에 위치한 면적 103.6km², 인구 58.4천 명 규모의 도시임
 - 조선업의 기업도시로 발전해왔던 역사로 인해 많은 조선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음

〈그림 2-22〉 오카야마현 타마노시(岡山県玉野市)



자료: 시 홈페이지(<https://www.city.tamano.lg.jp/docs/2017051000024/>)

○ 오카야마현 타마노시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내에 공업계 고등학교가 없어 공업계 취직자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지역산업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직장을 찾아 시외로 이주하는 청년이 증가하였음
- 2018년 4월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립 타마노상업고등학교에 공업계학과를 신설하였음
- 타마노시에서 창업하여 사업 중인 미츠이조선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공헌 검토의사를 밝히고, 기업관 고향납세제도 활용을 통해 공업계학과를 신설하였음
- 인턴십 제도, 초중학생 직장 견학, 지역산업 학습지원,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지원, 영어교육 추진 등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음
- 자체 팸플릿 제작을 통해 기업관 고향납세를 위한 독자적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이 기부하기 좋도록 인재육성을 주제로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였음
- 타마노시에 연고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린 및 시내 사업소에는 부시장과 담당자가 방문하여 설명하고, 시장은 본사를 방문하여 간부급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2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였음

〈그림 2-23〉 오카야마현 타마노시(岡山県玉野市) 활동내용



○ 기부금액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츠이조선은 기부금 6,500만 엔 및 수업실습시설 신설정비 등으로 1억 엔 상당의 지원을 제공함
- 총 사업비는 145백만 엔 수준임

6) 기타 사례

○ GCF형 고향납세제도의 분야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18〉 GCF형 고향납세 기타 사례

분야	지역	내용
교육·보육	야마가타현 나가이시	Babybox 프로젝트: 아이가 태어난 세대에 육아용품을 보내는 사업. Babybox 개발비, 제안자인 지역만들기 협력대원의 창업 필요 경비를 고향납세로 모집
	후쿠이현	①모교응원: 지원을 희망하는 고교를 지정하여 납세하면 기부금의 1/2는 학교에, 1/2는 급부형장학금 (후쿠이현 희망응원장학금)의 재원으로 활용 ②장기해외유학지원: 장기유학에 대한 장학금제도
	돗토리현	'아동미래기금' 설치: 책 보내기 사업, 현립학교 운동부 활동촉진을 위한 외부지도자 초빙사업
	오카야마현 와케정	공영학원 운영비용을 고향납세로 모집. 당초 토요일·중학생 대상 운영에서 수요일·초5~6학년 추가로 확대. 월 1회 유치원~초4 대상의 '공영학원 KIDS' 개최
마을만들기·스포츠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조례로 12개 기금 설치. 고향납세로 선택된 용도에 따라 기금에 적립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충당
	토야마현 나가미시	초중등부 핸드볼 최강지로 유명. 2005년부터 개최하는 '춘계 전국 중등부 핸드볼선수권대회'의 자금확보에 고향납세 활용. 기부자에게는 대회결승티켓을 보내, 지역방문 유도
	사가현	NPO법인의 사업이 선택가능한 고향납세 메뉴 예) 1형 당뇨병 근절사업: 연구자금조성 및 계발활동 경비를 고향납세로 모집
문화·역사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히로사키성(중요문화재) 석벽수리비용 모집: 본 사업의 의의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수리과정 체험이벤트 실시
	이시카와현	피해지역 도자기 재생프로젝트: 쿠마모토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작

분야	지역	내용
	와지마시	팝파편과 와지마 칠기를 조합하여 새로운 도자기로 탄생시키는 프로젝트 실시. 제작비용, 완성품 전시회 등 비용 모집
	기후현 구쵸시	400년 역사의 춤축제인 '오도리'를 비롯한 3대 춤 축제가 유명한 일본제일의 봉오도리(백중맞이 춤축제) 지역. 2017년 일본 3대 봉오도리의 다른 지역을 초청하여 공동이벤트 개최시 비용일부를 고향납세로 모집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지역역사로부터 핵무기근절과 항구적 평화실현을 전세계에 알릴 의무 및 지역의 상징성 홍보 필요성 호소. '히로시마시 원폭동 보 존사업기금' 활동을 통해 다양한 활동 추진
복지	도쿄도 분쿄구	아동 먹거리택배 사업: 아동이 있는 생활빈곤 세대에 고향납세를 통해 푸드뱅크를 이용한 식품택배 배송
	미에현 쿠마노시	과소지역 교통수단 확보: NPO법인이 영리목적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사업 개시. 2016년 운행지역 확대 및 차량추가 필요에 따라 고향납세 모집
	효고현	소아근전외수 병크 설립: 근육수축시 생기는 미량의 근전위를 이용하여 본인의지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전외수는 고액(약 150억 엔)이나 훈련용은 공비부담제도 미적용. 현립 재활중앙병원에서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훈련용 외수를 대어
지역·산업진흥	토야마현 타테야마정	장학금변제 응원보조금제도: 졸업후 지역에 거주시 교육료 및 장학금 변제액 일부를 10년간 보조하는 사업의 재원을 고향납세로 모집
	효고현 코베시	스타트업 오피스 사업: 선발된 창업가에 대한 자금조달 목적의 성과발표회 개최, 사업플랜 지도 등을 고향납세로 비용일부 모집
	야마구치현 우베시	테크놀로지*아트 챌린지 강좌: 취업을 위한 지역대학생 지역의 유출에 대해 지역정착 촉진을 목적으로 야마구치대 공학부, 우베고교가 연계하여 세계적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 강좌 개설. 강좌 충실화를 위해 고향납세로 비용 모집. '토기와공원 테크놀로지아트 인재육성프로젝트'는 총 15회 강좌비용 중 일부를 고향납세로 활용. 결과물인 디지털아트 작품발표 이벤트에는 약 5만 명이 방문하여 교류인구 증가 효과
관광·문화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키소강 가마우지늪시전통 보존사업: 1300년 역사의 전통적 고대어업인 가마우지늪시법 보존을 위해 관람선, 사육시설노후화, 후계자 양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고향납세를 통해 시설정비, 운영, 관광홍보 등에 활용. 기부금은 전액 특별회계로 운영
	와카야마현 타베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쿠마노 고도' 홍보를 위해 스페인 산티아고 지역과 연계사업, 공중화장실 정비, 외국어안내 설치사업 등에 고향납세 활용. 2017년에는 기금을 설치하여 손길이 닿지않은 삼림간벌, 길 정비사업 등 추진

분야	지역	내용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한국에서 방문한 지역만들기협력대가 빈집을 활용하여 인터내셔널 셰어하우스 개설. 개설비용, 체험용 주거공간 제공등 비용을 고향납세로 모집
환경	오키나와현 요미탄촌	요미탄의 산호군은 총연장 14km의 자연해안으로 유명하나 근년 해수면온도상승, 병해 등으로 감소경향에 있음. 산호 이식활동을 하는 사업소와 연계하여 생태계 배려한 이식사업에 고향납세로 자금모집. 이식활동 모습은 기부자 이름표와 함께 촬영하여 감사장 송부
안전·복구	쿠마모토현 쿠마모토시	2016년 쿠마모토지진에 대한 복구 고향납세에 대해 사용자 명시하고 6개 메뉴 중 선택하도록 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기부 모집. 예를 들어 쿠마모토성 천수각 재건사업의 '복구성주(復興城主) 제도'를 통해 기부자에게 성주증명, 성주표식 송부, 디지털방명록에 이름 등록 등을 실시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소방구급기금 설치를 통해 시설정비, 구급차용 링거액, 기도확보용 기자재 구입비용 등을 고향납세로 모집. 2016년 쿠마모토지진, 2017년 큐슈북부호우 때에는 고향납세 운영액을 활용하여 소방지원활동 수행
기업판 고향납세	군마현 시모니타정	농림업, 식품, 건설 등의 지역산업에 우수인재 확보, 육아세대 유입 증가를 위해 지자체 연계의 금융기관이 독자적 장학론 마련. 졸업자, 이용자가 정주할 경우, 원금 및 이자지불 상당의 실질금액 보조
	기후현 카가미하라시	국가전략특구 '아시아No.1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특구'로 지정되어 차세대 기술자육성 및 확보가 과제. 지역의 항공사(史), 지역연고의 항공기 및 기술을 소개하는 '카가미하라 항공우주과학박물관' 리뉴얼

제3절 시사점

1. 제도 안정성 측면

1) 기부금 규모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고향납세제도는 세금이 아닌 기부금 형태로 운영되며, 기부금액과 대상은 기부자의 주체적 선택에 맡겨짐
- 따라서 고향납세는 주민세나 고정자산세와 같은 ‘경상적 수입’이 아닌 부동산매매수입과 같은 ‘임시적 수입’의 성격을 지님
- 고향납세 기부금 수입은 일시적으로는 재정여력 확충이 될 수 있으나, 본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음
-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역시 기부금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2) 답례품과 관련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여 제도 존속여부가 불투명함
- 예를 들어 나가사키현 히라도시(長崎県平戸市)의 경우 2014년 14억 5,300만 엔에서 2015년 26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답례품의 상한비율을 한정하는 등 제도변화로 인해 향후 기부액 감소가 예상됨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80% 이상을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답례품 제공과 관련한 과열경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이에 따라 총무성에서는 답례품 금액을 기부금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고향납세제도 실적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3)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 최근 총무성은 GCF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와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창업가, 고향미래 투자가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특별교부세의 형태로 총무성에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관계인구 창출사업(2.5억 엔), 챌린지 고향워크(10.1억 엔), 지역인재 환류촉진(1.4억 엔), 지방 이주교류촉진(1.4억 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고향납세제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 제도 다양성 측면

1) GCF형 고향납세제도 도입 등 다양성 확대

- 고향납세제도의 기부금은 재해복구 프로젝트, 이벤트 등 임시사업을 수행 하는데 적합함
-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보은 및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
- 고향납세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으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철학과 사용 용도를 가지고 기부자의 기부금을 받는 형태가 바람직함
-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GCF형 고향납세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2) 사업 분야 및 답례품 등의 다양화 추진

- 최근 들어 복구지원, 관광추진, 산업진흥, 전통문화 계승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음
-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도 ‘물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도쿄도 코쿠분지시(東京都国分寺市)의 ‘관광안내간판제작 프로젝트’는 2017년 4월부터 1개월 동안 목표금액 200만 엔을 달성하였으며, 2018년 3월까지 20개의 관광안내간판을 설치하고 간판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였음
 - 또한 히로시마현의 ‘폐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로 신발장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였음

3) 기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15년 4월에 원스톱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원스톱 특례제도의 핵심은 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있음
- 즉, 기부자의 입장에서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할 때, 기부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제도 수용성 측면

1)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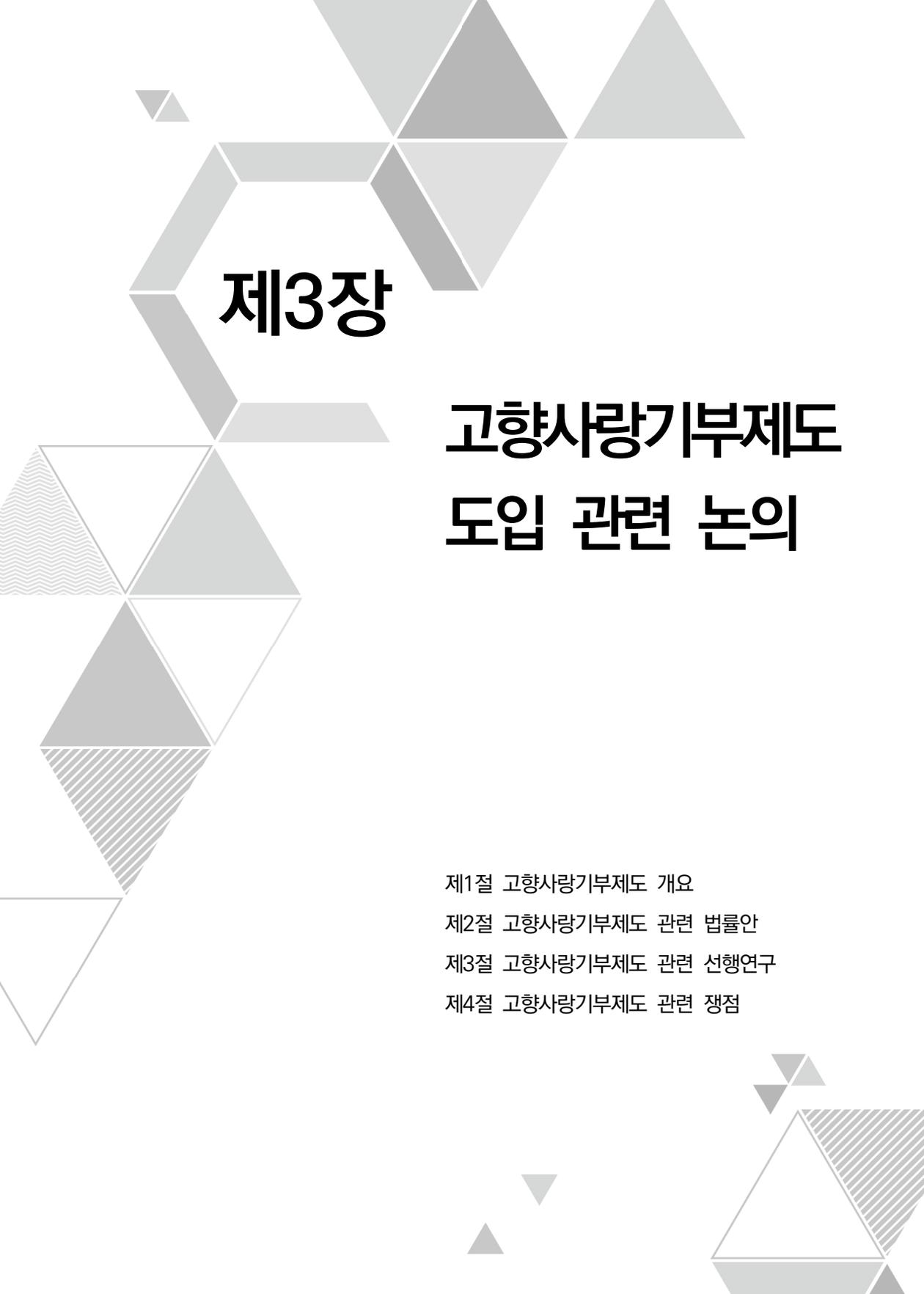
-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감 받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교통안전, 보육지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을 모으기 어려움

2) 목표금액 미달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현재 GCF형 고향납세의 경우 목표액이 미달된 경우에도 기부금은 반환되지 않음
- 프로젝트 실사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예산획득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기부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 중지라는 대안이 없는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따라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음

3) 정보 공유를 위한 민간 부문과의 연계 필요

- 일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 답례품 비율 및 답례품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후루사토 사이트 등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 부문과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제3장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관련 논의

제1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요

제2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

제3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선행연구

제4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쟁점

제3장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관련 논의

제1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요

1.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 배경

1)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인구 규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 기준 경기가 12,809천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9,776천 명으로 다음 순서를 차지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총 25,509천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51,446천 명) 중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인구밀도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 인천, 광주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인구밀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 기준 서울의 인구밀도는 16,15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513명)의 약 3배를 초과하는 수준임
- 수도권의 인구 규모와 인구밀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수도권 거주 인구는 1990년 18,342천 명에서 2000년 21,747천 명, 2010년 24,431천 명, 2017년 25,509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1990년 1,568명에서 2000년 1,858명, 2010년 2,070명, 2017년 2,151명으로 지속 상승함
- 전북 전남 등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전북의 인구는 1990년 2,047천 명에서 2017년 1,830천 명으로 감소함
 - 전남의 인구는 1990년 2,480천 명에서 2017년 1,796천 명으로 감소함

〈표 3-1〉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1990		2000		2010		2017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서울	10,473	17,301	10,078	16,645	10,089	16,667	9,776	16,154
부산	3,803	7,185	3,733	4,912	3,477	4,531	3,429	4,454
대구	2,293	5,032	2,529	2,855	2,480	2,805	2,465	2,790
인천	1,897	5,980	2,522	2,615	2,723	2,645	2,923	2,751
광주	1,125	2,246	1,382	2,757	1,494	2,980	1,501	2,995
대전	1,036	1,929	1,397	2,588	1,515	2,806	1,531	2,839
울산	-	-	1,036	980	1,099	1,038	1,166	1,099
세종	-	-	-	-	0	0	276	593
경기	5,972	554	9,146	902	11,619	1,143	12,809	1,258
강원	1,562	92	1,516	91	1,489	89	1,521	90
충북	1,374	185	1,494	201	1,524	205	1,605	217
충남	1,992	239	1,879	219	2,078	241	2,148	261
전북	2,047	254	1,927	239	1,796	223	1,830	227
전남	2,480	210	2,035	170	1,777	145	1,796	146
경북	2,736	141	2,773	146	2,630	138	2,681	141
경남	3,570	303	3,036	289	3,217	305	3,355	318
제주	509	279	524	284	548	296	634	343
수도권	18,342	1,568	21,747	1,858	24,431	2,070	25,509	2,152
계	42,869	432	47,008	473	49,554	495	51,446	513

자료: e-나라지표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로 구성

2)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86.39%), 경기(70.66%), 인천(66.83%) 등 수도권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 반면 강원(30.85%), 전북(30.29%), 전남(32.04%) 등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표 3-2〉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17년)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자체수입 (A)	자치단체세입결산규모 (B)	재정자립도[결산] (A/B×100)
서울	19,667,239	23,047,083	85.34
부산	4,371,808	8,124,606	53.81
대구	2,741,122	5,354,408	51.19
인천	4,086,483	6,480,696	63.06
광주	1,773,841	3,617,704	49.03
대전	1,724,603	3,361,310	51.31
울산	1,644,184	2,662,794	61.75
세종	852,857	1,158,838	73.60
경기	11,622,607	18,563,662	62.61
강원	1,331,406	4,863,809	27.37
충북	1,316,302	3,943,866	33.38
충남	1,791,159	5,075,130	35.29
전북	1,206,108	4,995,006	24.15
전남	1,535,532	6,103,965	25.16
경북	2,140,622	7,109,708	30.11
경남	2,756,651	6,692,744	41.19
제주	1,934,300	4,182,003	46.25

자료: 지방재정 365

주: 1) 자체수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2) 산정기준: 일반회계, 결산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비교할 경우 군 단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종 유형 간에도 최고수준과 최저수준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7개 광역 시·도 17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4.19%이며 동종 자치단체의 최고 수준(85.34%)과 최저수준(24.15%)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75개 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0.86%이며 동종 자치단체의 최고수준(69.82%)과 최저수준(13.46%)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82개 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59%로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수준임
 - 69개 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3.49%이며 동종 최고수준(74.57%)과 최저수준(16.49%)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현황(2017년)

(단위: %)

구분	상위 25%	상위 50%	평균	동종최고	동종최저
광역시·도	71.15	62.83	54.19	85.34	24.15
시	55.32	48.30	40.86	69.82	13.46
군	31.26	26.43	22.59	51.69	10.12
구	48.97	40.75	33.49	74.57	16.49

자료: 지방재정 365

주: 1) 자체수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2) 산정기준: 일반회계, 결산

-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총 140개로 20% 이하인 지역은 대부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남
 -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지역은 대부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경북(10개)이 가장 많고 강원(8개), 전남(8개) 순인 것으로 확인됨

- 재정자립도가 20% 초과 25%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총 44개로 전남(8개)이 가장 많고 경남(6개), 충남(5개), 전북(5개)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재정자립도가 25% 초과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총 48개로 서울시의 9개 구 등 구 자치단체 유형과, 동해시 등 시 자치단체 유형도 확인할 수 있음

〈표 3-4〉 재정자립도별 비교(2017년)

(단위: 개)

구분	계	20%미만	20%이상-25%미만	25%이상-30%미만
계	140	48	44	48
서울	10	-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중랑구 관악구, 성북구 동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부산	11	영도구, 북구	동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 금정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대구	5	-	-	남구, 동구, 서구 달서구, 북구
인천	4	-	강화군, 옹진군	남구, 부평구
광주	5	남구	북구, 동구	광산구, 서구
대전	3	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	2	-	중구	동구
세종	-	-	-	-
경기	2	-	양평군	연천군
강원	15	화천군, 인제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횡성군, 홍천군	양양군, 영월군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춘천시, 본청
충북	8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
충남	11	서천군, 논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금산군, 부여군 공주시	태안군, 계룡시 보령시

구분	계	20%미만	20%이상-25%미만	25%이상-30%미만
전북	14	남원시,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정읍시, 순창군 김제시, 고창군	무주군, 장수군 익산시, 본청	완주군, 군산시
전남	20	구례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영암군, 강진군	보성군, 담양군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 곡성군 장성군, 해남군	목포시, 화순군 나주시, 순천시 영광군, 본청
경북	17	영덕군, 군위군 울릉군, 봉화군 청송군, 예천군 영양군,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영주시, 성주군 안동시, 문경시 영천시, 고령군	울진군
경남	13	하동군, 합천군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창녕군, 고성군 밀양시, 의령군 거창군, 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제주	-	-	-	-

자료: 지방재정 365 바탕으로 구성

주: 1) 자체수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2) 산정기준: 일반회계, 결산

3) 소멸 위험 지역의 확산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음(이상호, 2018)
 - 가임여성 인구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되지 않는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되어 소멸될 위험이 있음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소멸위험의 우려가 주의 수준인 반면, 군 자치단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도의 경우 소멸 위험의 우려가 있음

〈표 3-5〉 전국 시도별 소멸위험지수

(단위: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1.16	1.09	1.04	1.00	0.95	0.91
서울	1.42	1.33	1.26	1.20	1.14	1.09
부산	1.04	0.97	0.91	0.86	0.81	0.76
대구	1.18	1.09	1.02	0.98	0.92	0.87
인천	1.51	1.43	1.35	1.30	1.22	1.15
광주	1.44	1.34	1.27	1.20	1.13	1.08
대전	1.51	1.42	1.32	1.25	1.18	1.11
울산	1.77	1.65	1.54	1.45	1.34	1.23
세종	0.84	0.93	1.31	1.48	1.55	1.59
경기	1.51	1.43	1.35	1.30	1.23	1.18
강원	0.73	0.69	0.66	0.64	0.61	0.58
충북	0.91	0.86	0.83	0.81	0.76	0.73
충남	0.81	0.78	0.74	0.72	0.70	0.67
전북	0.72	0.68	0.65	0.63	0.60	0.58
전남	0.55	0.53	0.51	0.50	0.48	0.47
경북	0.71	0.67	0.64	0.62	0.58	0.55
경남	0.99	0.94	0.89	0.85	0.81	0.76
제주	0.94	0.92	0.90	0.89	0.87	0.86

자료: 이상호(2018) 재인용

주: 1) 소멸위험지수= 해당지역 20-39세 여성 인구 수/해당 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2) 0.5 미만: 소멸위험, 0.5-1.0 미만: 주의단계, 1.0-1.5 미만: 소멸위험 보통, 1.5 이상: 소멸위험 매우 낮음

- 소멸위험지역은 경북, 경남, 전남 등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의 경우 영천시, 영주시, 안동시 등 시 자치단체에서도 소멸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낙후 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으로 소멸위험이 확산 될 수 있음이 우려됨(이상호, 2018)
- 소멸위험지역과 재정자립도 취약지역은 중첩되는 측면이 큼

〈표 3-6〉 소멸위험지역(2018년)

(단위: 개, 명)

구분	계	지역(지수)
계	89	
서울	-	-
부산	3	영도구(0.427) 동구(0.450) 중구(0.491)
대구	-	-
인천	2	강화군(0.245) 옹진군(0.338)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3	가평군(0.393) 연천군(0.398) 양평군(0.410)
강원	10	양양군(0.281), 영월군(0.289), 횡성군(0.304), 평창군(0.316), 고성군(0.317), 정선군(0.320), 홍천군(0.374), 태백시(0.429), 삼척시(0.444), 철원군(0.481)
충북	5	괴산군(0.219) 보은군(0.227) 단양군(0.268) 영동군(0.287) 옥천군(0.302)
충남	10	서천군(0.210) 청양군(0.221) 부여군(0.232) 금산군(0.271) 태안군(0.280) 예산군(0.281) 보령시(0.385) 논산시(0.396) 공주시(0.412) 홍성군(0.466)
전북	10	임실군(0.225) 무주군(0.231) 장수군(0.234) 진안군(0.236) 고창군(0.242) 부안군(0.259) 순창군(0.263) 김제시(0.284) 남원시(0.341) 정읍시(0.353)
전남	16	고흥군(0.161) 신안군(0.198) 보성군(0.200) 함평군(0.210) 진도군(0.223) 곡성군(0.229) 구례군(0.237) 장흥군(0.242) 강진군(0.247) 완도군(0.253) 해남군(0.271) 담양군(0.303) 장성군(0.314) 영광군(0.321) 영암군(0.346) 화순군(0.382)
경북	19	의성군(0.151) 군위군(0.169) 청송군(0.184) 영양군(0.187) 청도군(0.194) 봉화군(0.197) 영덕군(0.198) 상주시(0.269) 성주군(0.269) 예천군(0.272) 고령군(0.280) 문경시(0.291) 울진군(0.323) 영천시(0.327) 영주시(0.352) 울릉군(0.387) 안동시(0.445) 경주시(0.494) 김천시(0.496)
경남	11	합천군(0.171) 남해군(0.179) 산청군(0.205) 의령군(0.209) 하동군(0.229) 함양군(0.229) 고성군(0.274) 창녕군(0.286) 거창군(0.335) 밀양시(0.336) 함안군(0.426)
제주	-	-

자료: 이상호(2018) 재구성

주: 1) 소멸위험지수= 해당지역 20-39세 여성 인구 수/해당 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2) 0.5 미만: 소멸위험, 0.5-1.0 미만: 주의단계, 1.0-1.5 미만: 소멸위험 보통, 1.5 이상: 소멸위험 매우 낮음

2.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요 내용

1) 소멸위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대안: 고향사랑기부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못함
 - 우리나라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문국현 대통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고향세’ 도입을 주장하였음
 -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못하였음
-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기가 확산되고,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임정빈·김성찬·홍근석, 2017)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였고,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채택됨
 -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2천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6.5%, 2천만 원 초과분은 33% 세액공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는 「고향사랑기부제법」 시행을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자치분권 로드맵의 30대 과제’로 선정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부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일본은 2006년에 처음으로 ‘고향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에서 시작된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신두섭·염명배, 2016)
 - 양적인 성장 측면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 기준 일본의 고향납세액은 3,653억 엔으로 2008년의 81억 엔 보다 약 45배 증가하였음
 -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3. 고향사랑기부제도 장단점

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장점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긍정적 측면은 ① 국민정서 함양과 포용적 성장 유도, ② 선택납세에 따른 조세 패러다임 전환, ③ 지방재정 당면 문제 해결, ④ 답례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식 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염명배, 2010; 염명배, 2018)

가. 국민정서 함양과 포용적 성장 유도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에게 고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을 돕고자 하는 포용적 성장 의지를 일깨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염명배, 2010)
-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전통 미덕을 되살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감사하는 본연의 인간성 회귀 본능을 구현할 수 있음
- 또한 열악한 농어촌을 돕고자 하는 후원의지를 북돋는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를 높이 살 수 있음
- 더불어 주민과 외지인이 공동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행정 계기를 제공하는 정치·사회적 의의를 가짐

나. 선택납세에 따른 조세 패러다임 전환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기부금의 형태이나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조세의 일부를 기부대상 지역으로 옮기는 ‘납세이전’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기부자에게 조세납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조세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유도함(염명배, 2010)
- 일반적으로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과세권에 기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것이 근본 속성임
-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국가나 거주지 지자체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납세지’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특징을 지님

다. 지방재정 당면 문제 해결

-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입법(안)의 발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둘째, 재정격차(재정불균형) 완화,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세 가지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음(염명배, 2018)

〈표 3-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발의 목적

대표 발의자	발의 목적(도입 목적)
이주영 의원	지역 불균형 해소
홍재형 의원	지역 불균형 해소, 수도권 과밀화 해소
황주홍 의원	농어촌 발전, 국가균형발전
안호영 의원	지방세수 증대, 지역균형발전
전재수 의원	지방세수 증대, 지역균형발전
홍의락 의원	비수도권 재정여건 개선,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강효상 의원	지방재정 확충, 기부문화 활성화
박덕흠 의원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김광림 의원	애향심 고취, 지방재정 확충
김두관 의원	지방재정 확충, 지역균형발전
이개호 의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발전
주승용 의원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
이명수 의원	애향심 고취,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활성화
정인화 의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 활성화
윤영일 의원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

자료: 염명배(2018) 재인용

라. 답례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감사의 표시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경우 고향사랑 기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염명배, 2018)
- 답례품 제도를 통해 지역특산물에 대한 기부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다시 세수증대를 촉진시키는 선순환을 할 경우 답례품 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임
- 또한 지역특산물 생산 증대는 지역산업 발전, 지역고용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지역도착 풀뿌리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개발효과와 지역산업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귀촌현상을 촉진시켜 지방소멸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⁷⁾ 긍정적 측면을 가짐(신두섭·염명배, 2016)

마. 지자체의 자치의식의 진화 및 지방경영시대의 특성 강화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지방자치시대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기부자와 지자체 사이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를 형성하는 자치의식의 진화를 촉발시킴(염명배, 2010)
- 또한 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고향(및 농어촌)을 매개로 하여 지자체 간 인적교류를 증가시켜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신두섭·염명배, 2016)

7)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지방소멸 억제효과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나가사키현 히라도(平戸)시(2014년 세수 1위)로, 활발한 기부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인구유출이 지속되던 거리가 활기를 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박상현·이원하, 2016).

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단점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부정적 측면은 ① 지방자치 원칙 등 위배, ②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불투명, ③ 세수안정성 훼손 가능성, ④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 ⑤ 답례품 제도의 역기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염명배, 2010; 신두섭·염명배, 2016; 주만수, 2017)

가. 지방자치 원칙 등 위배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기부자가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국가와 거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해준다는 논리적 발상이 지방자치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임
 - 한 지역에서 거둔 지방세(지방소득세)를 세액공제의 형태를 빌어 다른 지역에 쪼개내는 행위는 지방자치 원칙뿐만 아니라 조세원칙과 납세자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염명배, 2010)
 - 또한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처를 명시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이 해당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의사에 의해 제약받는다라는 문제도 있음(염명배, 2018)

나.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불투명

- 고향사랑기부제도가 개인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한다는 근원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실제로 소기의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함(신두섭·염명배, 2016)
 -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간 재정격차 개선효과 여부를 보더라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반드시 재정 우위지역에서 재정 취약지역으로 이전된다는 보장이 없음⁸⁾

- 실증적으로 염명배(2010), 원종학(2010), 주만수(2017)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음을 밝힘(염명배, 2018)

다. 세수안정성 훼손 가능성

- 고향사랑 기부금은 조세와 달리 강제성 없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 의사에 의존하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세에 비해 세수 예측이 부정확하고, 세수추계가 불안정해짐으로써 세수안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음(염명배, 2010; 신두섭·염명배, 2016; 염명배, 2018)
 - 고향사랑 기부금이 정규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입예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공식적인 세입항목에 편입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라. 제로섬 게임, 과열경쟁 및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동일한 재원을 놓고 중앙정부, 기부자, 기부금 유입 지방자치단체(농·어촌, 소도시), 유출 지방자치단체(대도시·수도권) 간에 벌이는 4자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볼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기부금 유치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과열로 인해 지역 간 대립과 지역감정, 지역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염명배, 2018)
- 기부금 납부 및 모집 과정에서 추가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음
 - 기부자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씩 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히 감정(애향심 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선택 갈등을

8) 실제로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도 실시 첫해(2009년) 제2도시 오사가 시가 고향납세 최대 수입을 올린 지역이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염명배, 2010).

조장하는 동시에 기부금 납부, 영수증 처리, 세금공제 등에 관련된 세무행정비용이 증대됨

- 기부금 유치경쟁이 과열될 경우 지자체가 출향민에게 기부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금품(고가 답례품)을 미끼로 일종의 호객행위 또는 준조세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염명배, 2017)

마. 답례품 제도의 역기능

- 고향사랑기부제도에서 답례품 제공은 기부 확대의 핵심적 매개체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상당한 역기능도 가지며, 예상되는 답례품 제도의 역기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답례품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도 본연의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인기 상품 쇼핑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염명배, 2017)
- 둘째, 답례품 제도를 허용하자는 근거중 하나는 지역의 향토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생산과 지역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는 측면인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셋째, 답례품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답례품 제공 관련 경비지출이 오히려 기부금 수입을 초과하는 기부금재정 적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신두섭·염명배, 2016)

〈표 3-8〉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장단점

긍정적 측면(장점)	부정적 측면(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정서 함양과 포용적 성장 유도 ② 선택납세에 따른 조세 패러다임 전환 ③ 지방재정 당면 문제 해결 ④ 답례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식 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자치 원칙 등 위배 ②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불투명 ③ 세수안정성 훼손 가능성 ④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 ⑤ 답례품 제도의 역기능

제2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

1. 법제화 동향

-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하여 총 15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제18대 국회에서 2건, 제20대 국회에서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이 중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안은 5건이며, 나머지 10건은 기존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09년 3월에 발의된 이주영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고향투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11년 7월에 발의된 홍재형 의원(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비수도권 거주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수도권 제외)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6년 7월에 발의된 황주홍 의원(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여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6년 8월에 발의된 안호영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향기부금품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5월에 발의된 전재수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6월에 발의된 홍의락 의원(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비수도권의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서울·경기·인천(수도권)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수도권 제외)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6월에 발의된 강효상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8월에 발의된 박덕흠 의원(안)은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30% 범위에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도

는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또는 구의 세입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2017년 8월에 발의된 김광림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애향심 고취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9월에 발의된 김두관 의원(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연간 3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9월에 발의된 이개호 의원(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국가균형발전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9월에 발의된 주승용 의원(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도권 및 대도시 거주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이 지정한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11월에 발의된 이명수 의원(안)은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애향심 고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도시로 이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8월에 발의된 정인화 의원(안)은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농촌 등 지방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9월에 발의된 윤영일 의원(안)은 「고향발전 기부금법」을 제정하는 방안임
 - 이 법률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복지 확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표 3-9〉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 비교

대표 발의자	제안일 (의안번호)	법률안	도입목적	납부 유형	납부주체	납부대상
이주영 의원	2009.3.13 (180416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 불균형 해소	기부금	해당 기초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고향 또는 5년 이상 거주했던 지자체
홍재형 의원	2011.7.7 (1812560)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 불균형 해소, 수도권 과밀화 해소	조세 이전	수도권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수도권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본인이 지정하는 지자체 (서울, 경기, 인천 제외)
황주홍 의원	2016.7.13. (2000849)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제정)	농어촌 발전, 국가균형발전	기부금	국민 (모든 개인)	농어촌발전 공동모금회
안호영 의원	2016.8.16. (200160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수 증대, 지역균형발전	기부금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자	10년 이상 거주 지자체
전재수 의원	2017.5.15. (2006881, 2006884, 2006885, 200688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등 4건	지방세수 증대, 지역균형발전	기부금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20% 이하 지자체

대표 발의자	제안일 (의안번호)	법률안	도입목적	납부 유형	납부주체	납부대상
홍익락 의원	2017.6.1. (2007155)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수도권 재정여건 개선,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조세 이전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 출신인 수도권 거주자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비수도권)
강효상 의원	2017.6.27. (2007616, 2007619, 2007620, 20076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등 4건	지방재정 확충,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국민(모든 개인)	출생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
박덕흠 의원	2017.8.8. (2008432, 2008434)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 2건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조세 이전	납세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
김광림 의원	2017.8.9. (200845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애향심 고취, 지방재정 확충	기부금	해당 시·군·구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자	10년 이상 거주 시·군·구
김두관 의원	2017.9.14. (2009351, 2009352, 2009353, 2009396)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 4건	지방재정 확충, 지역균형발전	기부금	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자체 출신 출향민	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자체
이개호 의원	2017.9.27. (2009623, 2009624, 2009625, 200962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발전	기부금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자	모든 지자체

대표 발의자	제안일 (의안번호)	법률안	도입목적	납부 유형	납부주체	납부대상
주승용 의원	2017.9.29. (200975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	조세 이전	서울·경기·광역시 거주자	본인이 지정하는 비수도권 시·군
이명수 의원	2017.11.17 (2010232)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애항심 고취,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활성화	조세 이전	서울·경기·광역시·특별자치시 거주 납세자	거주지 이외 본인이 지정하는 시·군
정인화 의원	2018.8.27 (2015070)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활성화	기부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주민등록 이외 지자체
윤영일 의원	2018.9.13 (2015535)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제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	기부금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자	거주지 이외 지자체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바탕으로 작성

2. 법률안 특징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목적은 대부분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입법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납부 유형은 조세이전 또는 기부금 형식을 제안하고 있음
 - 제18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12개 의원입법안 중에서 홍재형·의락·박덕흠·주승용 의원안은 고향세를 ‘조세이전’(조세 분할납부)의 성격으로 보는 반면, 이주영·황주홍·안호영·전재수·강효상·김광림·김두관·이개호 의원안은 모두 고향세를 ‘기부금’으로 간주함
-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들을 보면 기부자의 요건은 현 거주지가 출생지가 아닌 사람(출향민), 또는 장기간 타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대도시 거주자, 기부자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전 국민 대상) 등으로 다양함
 - 황주홍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주민이 기부할 수 있도록 제안함
 - 홍재형 의원안, 홍의락 의원안, 주승용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 등은 기부주체를 수도권 또는 특별·광역시 거주자로 한정함
 - 이주영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 윤영일 의원안 등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기부대상 지역 조건은 고향(본적지, 원적지 포함), 또는 5~10년 이상 장기 거주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열악한(20~30% 이하)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광범위함(염명배, 2017)

- 납부대상은 출생지, 일정기간 이상 거주지, 거주지 이외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이외 지역, 재정이 열악한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발의됨
 - 기부대상의 설정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목적 즉,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음
 - ‘고향’이라는 제도명을 고려할 경우 기부대상은 출생지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나 발의안 대부분 제도 도입의 목적에 비추어 기부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재정자립도 20%, 또는 30% 이하 지역)를 대상으로 할 경우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입의 관건이 될 수 있음(류영아·이상범, 2018)
- 세액공제 방식은 기부자의 기부를 촉발할 수 있는 대표적 기부유인 장치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의 기부금 공제는 대부분 부분공제 형태로 개인에게 상당부분 부담을 지울 수 있어 순수한 ‘기부금’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염명배, 2017)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건의 고향세제도 관련 법안 중 홍의락·박덕흠·주승용 의원안(조세이전)을 제외한 7건의 의원입법안과 행정안전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입법안은 고향세 기부금에 대하여 모두 ‘국세(+10% 지방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황주홍·안호영·김광림 의원안은 현행 기부금품법에 의한 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고, 전재수·강효상·이개호 의원안은 정치자금기부금(정치후원금) 공제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김두관 의원안은 형식은 정치자금기부금(정치후원금) 공제 규정과 같지만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3-10〉 세액공제 관련 발의안 비교

대표 발의자	소득공제 특징
이주영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소득할의10% - 1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재원이동: 지방세 + 개인부담 → 지방세(10%까지)
홍재형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납세(소득세) 이전 성격 *재원이동: 국세→지방세 (조세이전)
황주홍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부금품법상 혜택과 동일 (기부금 합계액 2천만원까지 16.5%, 초과분 33% 세액공제) *재원이동: 국세 + 지방세 + 개인부담 → 지방세
안호영 의원	
전재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 초과분은 2천만원까지 16.5%, 초과분 33% 세액공제 *재원이동: 국세 + 지방세 + 개인부담 → 지방세
홍의락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납세(소득세)이전 성격 *재원이동: 국세 → 지방세 (조세이전)
강효상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 초과분은 2천만원까지 16.5%, 초과분 33% 세액공제 *재원이동: 국세 + 지방세 + 개인부담 → 지방세
박덕흠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납세(지방소득세) 이전(분할납세) 성격 *재원이동: 지방세 → 지방세 (조세이전)
김광림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부금품법상 법정기부금 공제혜택과 동일기준 적용 *재원이동: 국세 + 지방세 + 개인부담 → 지방세
김두관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 초과분은 2천만원까지 18.15%, 초과분 36.3% 세액공제 *재원이동: 국세 + 지방세 + 개인부담 → 지방세
이개호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 초과분은 2천만원까지 16.5%, 초과분 33% 세액공제 *재원이동: 국세 + 지방세 + 개인부담 → 지방세
주승용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납세(소득세)이전 성격 *재원이동: 국세 → 지방세 (조세이전)
이명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취득세) 이전 성격

자료: 염명배(2017) 재인용

제3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선행연구

1. 국내연구

- 국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데 반해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은 편임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임정빈·김성찬·홍근석, 2017)

1)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을 논의하는 연구임
 -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본 고향납세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 지금까지 수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술 연구를 최초로 시도한 것은 염명배(2010)의 연구임
 - 염명배(2010)는 일본의 고향세(후루사토)를 상세히 소개한 후, 2009년 도도부현별 고향세 납세내역과 재정자립도를 비교분석하여 고향납세제가 지역 간 재정력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더불어 모든 출향민이 지방소득세의 10%를 일괄적으로 고향에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득세와 지역별 고향세 세수 수입을 추계함
 - 분석결과 지방소득세 대비 고향세 유입이 큰 지역은 전남, 전북, 강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출지역은 울산, 서울, 경기로 확인됨

- 신두섭·염명배(2016)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시행 8년(2008-2015년) 간 추이를 살펴보고, 성과를 평가한 후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성공 요인은 ‘답례품 제공’, ‘세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조세원칙, 지방자치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법제라는 치명적 약점에 대해서도 논의함
 -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납부 허용, 소득공제 국세 우선 또는 국세-지방세 합리적 분담방안 협의, 자기부담금 폐지, 일정기간 답례품 제공 금지 또는 답례품 상한가액 설정, 응원지수 산출을 통한 지역별 소득공제 차등화 등을 제시함
- 박상현·이원학(2016)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소개와 긍정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함
 -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는 연구회 운영 검토, 지역개발 수단으로 활용,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대 등을 제시함
- 신승근·조경희(2017)는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고향사랑조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동시에 개인과 법인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함
 - 먼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을 때 현행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지자체는 법률안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법률안에서 정한 특정목적을 위해 기부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심재승(2017)은 후루사토제의 기본적인 성격과 구조를 바탕으로 일본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시함
 - 문제점으로는 답례품 경쟁이 과열과 세수획득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의 심화를 지적함
 -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답례품에 의한 지역 활성화(지자체 축제, 관광, 체험형 답례품 등)를 유기적으로 연결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지지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함

- 남황우(2017)는 후루사토납세제를 지방재정시스템 맥락에서 분석하고 기부 기점과 종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연구함
 - 후루사토납세제 분석 결과 이전의 기점은 대도시이고, 종점은 노력하는 소수의 농어촌 지자체임을 확인함
 - 또한 답례품이 기점과 종점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후루사토납세제는 대도시의 이해와 협조 속에 운영되며, 과도한 답례품을 제한해야 함을 시사함
- 염명배(2017)는 우리나라 고향세제도 법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안에 관하여 논의함
 - 분석결과 우리나라 고향세제도는 일본에 비해 개인의 부담이 큰 구조이며, 즉 기부자에게 애향심을 요구하는 제도임을 시사함
 - 고향세가 조세이냐 기부금이냐? 세액공제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답례품 제공을 허용할 것인가 등에 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함
- 이병산(2018)은 고향납세제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대상으로 논의함
 - 먼저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은 국세(소득세) 위주로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이는 40%를 한도로 2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는 것으로 제안함
 - 또한 지자체는 고향납세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를 한도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기부금 수령단체는 제한 없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주체, 기부대상, 세액공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도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신두섭·하혜수(2017)는 비수도권에 고향을 두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에 대한 인식과 실제 기부를 통한 지불 의사액을 추정함
 - 설문 분석 결과 기부경험 유무는 고향발전 기부와 연관이 없으며, 고향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나 현재 거주지를 고향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개인의 지불의사액은 고령자와 가구주 등 여건이 안정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임정빈 외(2017)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감소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분석결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효과를 야기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중호·염명배(2018)는 고향납세 기부액에 관한 통계량을 이용하여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지역 간 기부 특성을 파악함
 - 분석결과 고향납세 적용자 비율이 늘어날 경우 일인당 기부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적용자당 기부액이 늘어나도 일인당 기부액이 늘어나는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학자	연구목적	주요내용
염명배 (2010)	고향세 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향납세제도 소개 - 일본식 고향세 제도 도입 시 문제점 제시 - 도입방안: 고향 개념 및 기부주체 확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추진 등
박상현· 이원학 (2016)	고향세 제도의 도입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향납세제도 소개 - 고향납세제도의 긍정적 효과 강조 -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회 운영 검토, 지역개발 수단으로 활용,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대 등
신두섭· 염명배 (2016)	고향세 제도의 도입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향납세제도 평가 : 성공적 정착 - 성공요인: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확대, 절차 간소화 등 - 도입방안: 기부금 방식, 국가와 지방의 소득공제 분담 등
김동영 (2017)	고향기부제 도입의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향납세제도, 헝가리-폴란드 퍼센트법 소개 - 세수 감소와 지역 간 세수격차 극복 위해 고향기부제 도입 필요 - 지방재정 유입효과 394,693백만 원에서 2,636,647백만 원으로 추정
남향우 (2017)	고향납세제도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점: 유입액과 유출액의 편중, 수입의 안정성 결여, 답례품 경쟁 완화, 고소득층에 유리한 특례공제제도 등
박상현 (201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향납세제도 추진실적 및 현황 제시 - 지방창생응원세제 소개 - 도입방안: 고향 개념 및 기부주체 확대, 지역 특산물의 답례품 활용 등
신두섭· 하혜수 (2017)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지불의사액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통한 지불의사액 추정 - 115.83만 원에서 138.65만 원으로 추정 - 도입방안: 기부대상 및 세제 혜택 방법 등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제도 도입 취지 및 목적 명확화 필요 등
신승근· 조경희 (2017)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경쟁 및 기부참여 촉진 방안: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특정목적 기부 시 추가공제, 지자체의 답례품 제공 등

학자	연구목적	주요내용
심재승 (2017)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한 지자체 활성화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답례품 경쟁 과열, 세수획득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 심화 - 시사점: 답례품과 지역 활성화의 유기적 연결, 개인이 지지하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 등
염명배 (2017)	고향세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고행세는 일본에 비해 개인의 부담이 큰 구조로 기부자에게 애항심 요구 - 납부유형, 세액공제 방식, 답례품 허용 여부 등 제도 도입 관련 쟁점사항 논의
주만수 (2017)	고향기부제도의 비판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행기부제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미미, 답례품 제공의 부작용, 민간부문에 대한 기부 강요 등의 문제점 지적 - 도입방안: 제도 개선 후 도입 추진
원종학 (201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행납세제도의 주요 내용 검토 및 평가 - 장점: 지역 간 재정격차 축소 효과 - 단점: 지방자치단체 세액공제 부담 및 답례품 과열 경쟁 - 도입방안: 세액공제 방식 검토, 답례품 과열 경쟁 방지 대책 필요
국중호· 염명배 (2018)	일본 고행납세제의 기부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행납세의 지역 간 기부특성 분석 - 고행납세 적용자 비율이 늘어날수록 일인당 기부액 증가
이병산 (2018)	고향납세제도 도입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행납세기부금은 국세(소득세) 위주로 세액공제 - 소득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액의 40% 한도로 기부금의 20만원까지 전액공제

2. 국외연구

- 일본의 고행세에 관한 연구는 제도 도입을 위한 측면에서 고행납세의 목표, 납부 유형과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다, 최근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짐
 - 고행납세의 제도적 측면에 관한 논의는 고행납세연구회보고서를 통하여 고

향의 개념, 납부방법 및 유형 등을 살펴본 연구(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 2007)와, 총무성의 견해를 바탕으로 도입 의의를 분석한 연구로 볼 수 있음(藤原, 2008)

- 고향세가 도입된 후 기부금의 규모, 그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고향납세제의 사례분석을 통한 장단점 제시(大橋知佳, 2015), 소득수준에 따른 고향납세 분석(橋本・鈴木, 2015), 기부금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尾内速斗, 2016), 기부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橋本, 2015) 등이 있음
- 일본에서 고향세(고향납세) 제도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고향납세연구회보고서(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2007)를 시작으로 볼 수 있음(신두섭·염명배, 2016 재인용)
 - 이 보고서에는 고향(후루사토)의 개념, 기부금 납부 유형 및 방법, 지역 주민의 이해와 활용이 용이한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
 - 구체적으로는 ‘세(稅)’를 분할하는 방식에 있어 ‘수익과 부담’, ‘과세권’, ‘조세의 강제성’, ‘주민 간의 공평성’, ‘기부금세제의 응용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고향납세제도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함
- 藤原(2008)는 고향납세의 의의를 총무성의 견해를 바탕으로 세 가지로 제시함(국중호·염명배, 2018 재인용)
 - 첫째, 기부대상자가 기부금의 지출 용도를 고려하여 기부대상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 조세에 대한 책임 및 의식이 높아지고, 납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고 봄
 - 기부자는 고향납세를 통해 고향이나 자신이 기부를 선택한 지역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기부대상 지역의 발전 및 지출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 대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치의식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됨

- 大橋知佳(2015)는 고향납세제의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고향납세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분석함(신두섭·염명배, 2016 재인용)
 - 고향납세제의 장점으로는 세금공제, 특산품의 수령,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선택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단점 및 보완점으로는 수익부담원칙의 위배, 특산품 제공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무리한 과열 경쟁, 고향납세제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제시함
- 橋本·鈴木(2015)는 소득수준에 따른 고향납세제도에 관하여 분석함(국중호·염명배, 2018 재인용)
 - 연구결과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정보공개가 부족하거나 단체의 규모가 작을 경우 고향납세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방세에 설정되어 있는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최저수준으로 통일하며, 소규모 단체에서 고향납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尾内速斗(2016)은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2013~2014년의 일본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별 기부금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함(김홍환, 2018 재인용)
 - 분석결과, 답례품 더미 및 답례품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정력지수는 전혀 유의하지 않았으며, 고향납세 기부에 따른 거주지 자치단체의 공제액도 재정력지수에 대해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향세가 지역 간 재정 형평화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 橋本(2015)는 기부금액에 대한 세수 손실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향납세제가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음(심재승, 2017 재인용)

제4절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쟁점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쟁점사안은 ‘지자체 간 재정력격차의 완화’를 제도의 핵심 정책목표로 삼을 것인가와, 이를 정책목표로 삼을 경우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누가) 및 기부대상지역(어디에)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것인가,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됨
- 더불어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답례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음

1. 정책목표 설정

1) 정책목표

- 가장 먼저 부각되는 쟁점사안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소기의 정책목적(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임
 - 정부의 정책목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의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역시 해당 문제에 부딪혀서 고향납세제도 도입 초기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염명배, 2018)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출발점은 삼위일체 개혁 이후 오히려 확대된 지역 간 재정력격차(세수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음(염명배, 2010; 신두섭·염명배, 2016; 주만수, 2017)
 - 다시 말해 2006년 니시카와 카즈미(西川一誠) 지사가 ‘고향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주창할 당시만 해도 지방 간 재정격차(및 세수과소) 문제 해소가 주된 목표였음(원종학, 2017)

- 이처럼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당초 목표는 지자체 간 재정력격차(세수격차)의 해소에 있었음(염명배, 2010; 신두섭·염명배, 2016; 주만수, 2017; 원종학, 2017)
- 하지만 ふるさと納税研究会(2007)는 논의과정에서 이 제도로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도 도입 의의에서 ‘재정력격차 완화’라는 항목을 제외시켜버림(주만수, 2017)
-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지역 간 재정력격차 해소(세수 형평화 효과)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는 연구들이 발표된바 있음
- 이처럼 일본에서 이미 재정력격차 해소(세수 형평화 효과)가 부정된 고향세 제도를 국내에서는 앞의 의원입법(안)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현실임
-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기부방식과 유사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본사례와는 달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세수불균형 완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움
-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목적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역 간 세수불균형 완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지방소멸 억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과연 이 많은 정책목적들을 모두 충족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이에 대해 염명배(2017)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현재 지자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는 결코 아니므로 이 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함
- 물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실시되면 재원을 대도시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효과(지방재원 확충)는 어느 정도 확실히 있을 것임

- 앞서 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上士幌)정(町)처럼 주민세 세수의 두 배에 달하는 고향납세 수입을 올린 일부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음
-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작동원리 상 기부금이 조세나 보통교부세와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부행위가 기부대상 지자체의 재정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순으로 더 많이 기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주만수, 2017)
-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 순으로 많이 기부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킨다는 보장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임(염명배, 2017)
-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경우 최근 고향납세 규모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대비 고향납세 비중은 여전히 1% 미만⁹⁾에 불과하여 고향납세제도가 지방재정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음(국중호·염명배, 2018)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현재 지방이 처한 문제를 일시에 모두 해결하겠다는 의도는 무모한 발상이라고까지 볼 수 있음
-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도 정부(안)(2018)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매우 포괄적인 목표만이 제시됨

9) 2016년도 고향납세 기부액은 2,844억 엔으로 지방세 수입액인 38조 5,561억 엔의 0.73% 수준에 불과함(국중호·염명배, 2018).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정부(안)의 표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지자체 간 재정력격차의 완화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따라서 지자체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여기서 발생하는 쟁점사안은 ‘지자체 간 재정력격차의 완화’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삼을 것인가와, 이를 정책목표로 삼을 경우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누가) 및 기부대상지역(어디에)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것인가,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가라고 볼 수 있음
- 정부(안)은 ‘모든 국민은 현 거주지 관할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제약조건을 대폭 완화함

제4조(모금 주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면 국민 누구나(출향민이든 토박이든 관계 없이) 수도권이나 농어촌을 막론하고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기부가 가능함
- 이처럼 기부자와 기부대상지역에 제한을 없앨 경우 세수불균형 완화를 비롯한 정책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매우 악화될 우려가 있음

2) 기부주체

-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의 기부자 요건은 현 거주지가 출생지가 아닌 사람(출향민), 장기간 타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대도시 거주자, 기부자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전 국민 대상) 등으로 다양함
- 이처럼 기부주체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은 제도 도입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류영아·이상범, 2018)
 - 조세이전 또는 기부금 이전 목적이라면 ‘수도권 거주 출향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함
 -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민 으로부터의 조세이전 또는 기부금 이전 목적이라면 ‘수도권 거주 출향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음
 - 장기 거주민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지역거주민’이 적합할 수 있음
 - 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타 지역 거주민’이 적합할 수 있음
- 또한 정책목적의 실질 논리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기부주체를 설정한다면, 고향의 정의를 제약하여 기부주체를 제약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왜냐하면 국회 입법안에서와 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및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또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면, 오히려 대도시 지역과의 경쟁은 동일할 수 있으므로 제도가 지속될 수 록 큰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음(류영아·이상범, 2018)
- 정부(안)은 ‘모든 국민은 현 거주지 관할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제약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기부자와 기부대상 지역에 대한 제한을 없앨 경우 세수불균형 완화를 비롯한 정책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음(염명배, 2018)

3) 기부대상 범위

- 기부대상의 설정은 제도의 목적과 관련되어 규정될 수 있는 쟁점으로 어디에 기부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 입법안에는 출생지, 일정기간 이상 거주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본적지, 원적지 등이 제시됨
 -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 납부 또는 기부하도록 한정하는 방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납부 또는 기부하도록 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류영아·이상범, 2018: 17)
 - 실제로 지방의 경우 진학, 취업 등의 사유로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주로 대규모의 이주가 발생했던 70~80년대 이주 1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주 2세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이주세대는 이주 1세대에 비해 애향심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고향, 향수, 애향 등의 명분만으로 고향세(기부금)를 유지하기에는 머지않아 한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은 반드시 자신의 출신지역이 아니더라도 기부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전북연구원, 2016)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고향은 출신지 및 이전에 거주한 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고향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총무성, 2007)
 - 이처럼 납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 곳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원종학, 2010)

2. 세액공제를 조정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수입액과 수입건수가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총무성은 2015년에 시행된 세제개정(‘원스톱특례제도’ 도입 및 특례공제 한도 상한 두 배 인상)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함
 - 이는 기부자들이 세제 인센티브에 대하여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염명배, 2017)
-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의 기부금 공제는 모두 ‘국세(+10% 지방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황주홍·안호영·김광림 의원안은 현행 기부금품법에 의한 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고, 전재수·강효상·이개호 의원안은 정치자금기부금(정치후원금) 공제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김두관 의원안은 형식은 정치자금기부금(정치후원금) 공제 규정과 같지만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세액공제에 관한 정부(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안)의 모체가 된 이개호 의원(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하며, 10만 원 초과 ~ 2천만 원까지는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세액공제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 이상의 정부(안)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부담은 국가(중앙정부), 기부자 거주 지자체, 기부자 등 3자가 분담하는 제로섬(zero-sum) 구조로 되어있음
 -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므로 기부자는 부담을 지지 않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에게 상당 정도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3.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990만원 × 100분의 15 + (고향사랑 기부금 - 2천만원) × 100분의 30

- 고향사랑 기부액의 변화에 따른 국가(국세)-지방체(지방세)-기부자(개인) 간 분담률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음

〈표 3-12〉 기부액 변화에 따른 분담률 비교

기부액	국세	지방세	기부자
10만원	91%	9%	0%
20만원	53%	5.3%	41.7%
30만원	40.3%	4%	55.7%
40만원	34%	3.4%	62.6%
50만원	30.2%	3%	66.8%
100만원	22.6%	2.3%	75.1%
500만원	16.5%	1.7%	81.8%
1000만원	15.8%	1.6%	82.6%
2000만원	15.4%	1.5%	83.1%
3000만원	20.3%	2.0%	77.7%

자료: 염명배(2017)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구조는 기부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기부유인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공제율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 답례품 제공

- 고향세 기부의 대가로 답례품 제공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목적에 따라 상충(trade-off)관계가 발생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임
- 일본에서 최근 고향납세 기부금의 급증에 사실상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답례품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에서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은 홋카이도(北海道)이며, 2013년부터 기부액의 절반가량을 특산품으로 답례하면서 고향납세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지역특산물 등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답례품 제도가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됨(신두섭·염명배, 2016; 염명배, 2017)
- 반면 답례품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향납세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정부는 답례품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림
 - 고향납세 기부를 받은 지자체의 94.2%가 답례품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유선종, 2017) 상황에서 답례품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과열양상이 격화됨
 - 심지어 고향납세 수입에 대한 답례품 환원률(답례품 생산 및 제공 비용의 비중)이 80~90%에 이르는 곳까지 나타남¹⁰⁾

10) 한 예로 2015~2016년 연이어 고향납세 기부금 유치(접수액) 1위를 달성한 미야자키현(宮崎県) 미야코노조시(都城市)의 경우 답례품 환원률이 78%에 이룸(김철, 2017).

- 우리나라도 답례품 제공을 허용할 경우 앞서 일본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에 거의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에 비해 지자체마다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할 때 답례품 제공이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답례품 과열양상의 부작용으로 인해 답례품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답례품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여건에 맞도록 정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염명배, 2017)
- 고향사랑기부제도 정부(안)에는 답례품 제공에 관한 조항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제8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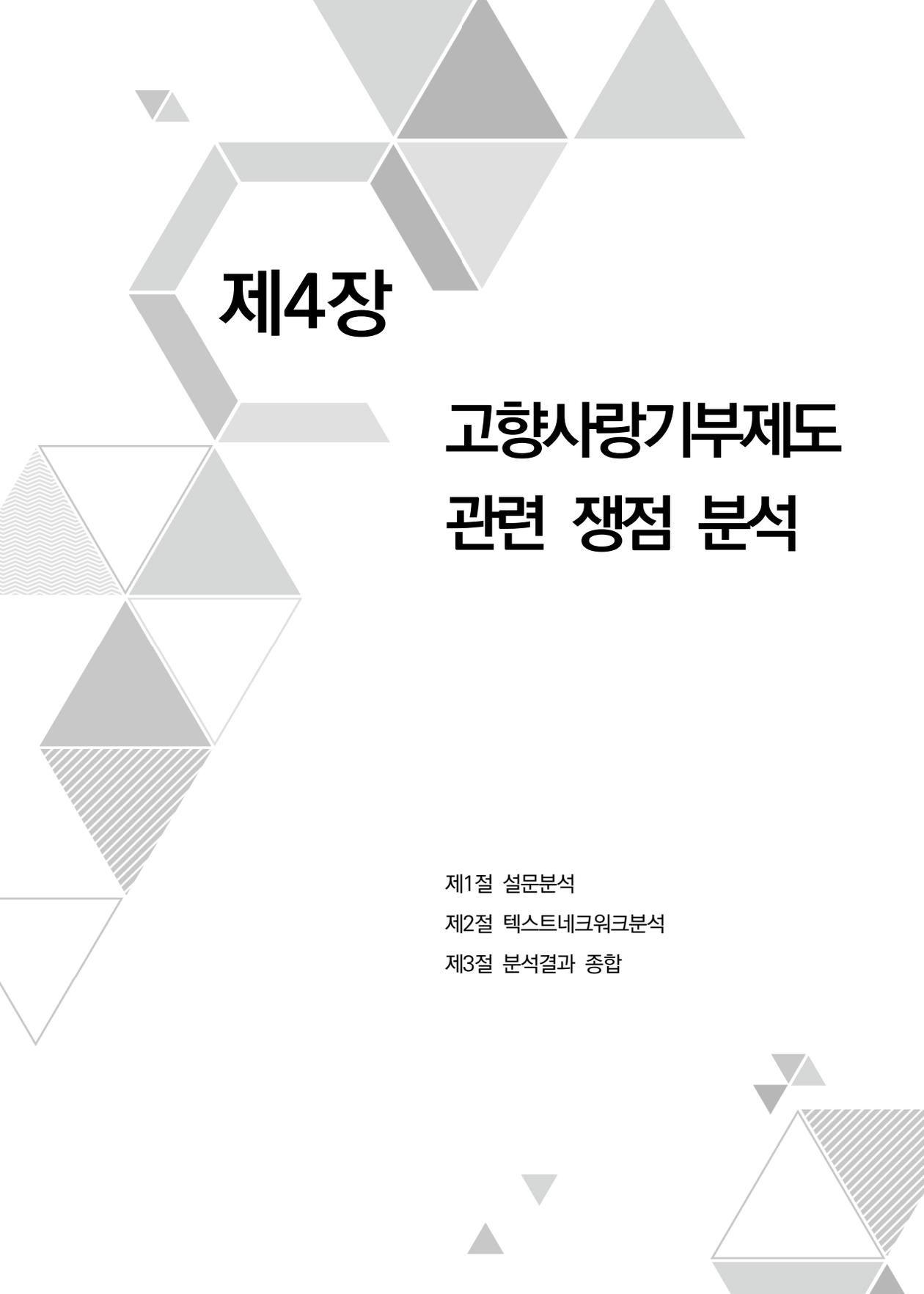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역특산물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세 관련 의원입법(안) 중에서 답례품 관련 규정을 명시한 법안으로는 김광림·이개호·윤영일 의원(안)이 있음



제4장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쟁점 분석

제1절 설문분석

제2절 텍스트네트워크분석

제3절 분석결과 종합

제4장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쟁점 분석

제1절 설문분석

1. 설문분석 개요

1) 조사 개요

- 설문조사는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000명을 목표 인원으로 설정하였음
 -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의 MS 패널 44만 명을 이용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음
- 설문조사의 표본은 2019년 3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에 맞춰 추출하였음
 - 남성 인구 비율은 51.0%이며, 여성 인구 비율은 49.0%임
 - 연령별 인구 비율은 20대 19.6%, 30대 20.7%, 40대 24.4%, 50대 이상 35.3%임
 - 지역별로는 서울 19.6%, 부산 6.6%, 대구 4.7%, 인천 5.9%, 광주 2.8%, 대전 2.9%, 울산 2.3%, 세종 0.6%, 경기 25.8%, 강원 2.8%, 충북 3.0%, 충남 3.9%, 전북 3.3%, 전남 3.3%, 경북 4.9%, 경남 6.3%, 제주 1.2%임
- 사전 조사는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 간 수행되었음
 - 사전 조사는 총 1,980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219명이 설문문에 참여하여 설문참여 비율은 11.1%로 나타남
 - 설문참여자에 대한 검증 결과 118명의 응답이 설문분석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사전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101명

(응답률 5.1%)으로 나타났음

-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가 52명, 여성 응답자가 49명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경기(26명), 서울(20명), 경남(7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본 조사는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 간 수행되었음

- 본 조사는 총 18,421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1,362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설문참여 비율은 7.4%로 나타남
- 설문참여자에 대한 검증 결과 461명의 응답이 설문분석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본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901명(응답률 4.9%)으로 나타났음
- 남성 응답자가 459명, 여성 응답자가 442명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233명), 서울(174명), 부산(60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06명), 40대(224명), 30대(194명), 20대(177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4-1〉 본 조사 표본추출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18	19	21	21	21	22	11	12	강원	3	2	2	2	3	3	5	5
부산	6	5	6	6	7	7	11	12	충북	3	2	3	2	3	3	5	5
대구	5	4	4	4	5	5	8	8	충남	3	3	4	3	5	4	6	6
인천	6	5	6	5	7	6	9	9	전북	3	3	3	3	4	3	6	6
광주	3	3	3	3	3	3	4	4	전남	3	2	3	2	4	3	6	6
대전	3	3	3	3	3	3	4	4	경북	4	3	4	4	5	5	9	9
울산	2	2	2	2	3	2	4	4	경남	6	5	6	6	8	7	10	10
세종	1	1	1	1	1	1	1	1	제주	1	1	1	1	2	1	2	2
경기	25	22	27	24	31	30	36	36									

2) 응답자 특성

-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남성 응답자가 511명(51.0%)으로 여성(491명, 49.0%)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 응답자 특성: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성	511	51.0
여성	491	49.0
합계	1,002	100.0

- 출생연도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60년대 이전에 출생한 응답자가 328명(32.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 1970년대(257명, 25.6%), 1980년대(225명, 22.5%), 1990년대(192명, 19.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20대 이하인 2000년대 이후 출생자는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표 4-3〉 응답자 특성: 출생연도

구분	빈도(명)	비율(%)
2000년대 이후	0	0.0
1990년대	192	19.2
1980년대	225	22.5
1970년대	257	25.6
1960년대 이전	328	32.7
합계	1,002	100.0

- 출생지역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출생지역이 서울인 응답자가 226명(22.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 경기(110명, 11.0%), 경남(82명, 8.2%), 경북(79명, 7.9%)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출생지역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 응답자는 372명(37.1%)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 응답자 특성: 출생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서울	226	22.6	강원	46	4.6
부산	76	7.6	충북	35	3.5
대구	49	4.9	충남	51	5.1
인천	36	3.6	전북	57	5.7
광주	28	2.8	전남	61	6.1
대전	26	2.6	경북	79	7.9
울산	20	2.0	경남	82	8.2
세종	4	0.4	제주	16	1.6
경기	110	11.0	합계	1,002	100.0

- 현재 거주지역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재 거주지역이 경기인 응답자가 259명(25.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 서울(194명, 19.4%), 부산(66명, 6.6%), 경남(65명, 6.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현재 거주지역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 응답자는 512명(51.1%)으로 나타났음

〈표 4-5〉 응답자 특성: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서울	194	19.4	강원	28	2.8
부산	66	6.6	충북	29	2.9
대구	46	4.6	충남	36	3.6
인천	59	5.9	전북	35	3.5
광주	28	2.8	전남	32	3.2
대전	29	2.9	경북	49	4.9
울산	23	2.3	경남	65	6.5
세종	11	1.1	제주	13	1.3
경기	259	25.8	합계	1,002	100.0

○ 최종학력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인 응답자가 543명(54.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163명, 16.3%), 전문대학 졸업(148명, 14.8%), 대학원 졸업(147명, 14.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응답자도 1명(0.1%)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 응답자 특성: 최종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중학교 졸업 이하	1	0.1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163	16.3
전문대학 졸업(중퇴 포함)	148	14.8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543	54.2
대학원 졸업(수료 포함)	147	14.7
합계	1,002	100.0

- 월평균 총 급여(세전)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월평균 총 급여(세전)가 201-300만 원인 응답자가 235명(23.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 301-400만 원(155명, 15.5%), 101-200만 원(132명, 13.2%), 100만 원 이하(124명, 12.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월평균 총 급여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응답자도 16명(1.6%)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7〉 응답자 특성: 월평균 총 급여(세전)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100만 원 이하	124	12.4	601-700만 원	41	4.1
101-200만 원	132	13.2	701-800만 원	21	2.1
201-300만 원	235	23.5	801-1,000만 원	36	3.6
301-400만 원	155	15.5	1,001-1,300만 원	12	1.2
401-450만 원	61	6.1	1,301-1,500만 원	2	0.2
451-500만 원	81	8.1	1,501만 원 이상	2	0.2
501-550만 원	48	4.8	합계	1,002	100.0
551-600만 원	52	5.2			

2.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인식 분석

1)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인식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약 96%의 응답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14명(61.3%)으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약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기부 주체가 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8〉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들어본 적 없다	614	61.3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	158	15.7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190	19.0
들어본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	37	3.7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	3	0.3
합계	1,002	100.0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체로 찬성(370명, 36.9%)’과 ‘매우 찬성(114명, 11.4%)’을 더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48.3%(484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대체로 반대(78명, 7.8%)’와 ‘매우 반대(17명, 1.7%)’을 더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9.5%(95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4-9〉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반대	17	1.7
대체로 반대	78	7.8
보통	423	42.2
대체로 찬성	370	36.9
매우 찬성	114	11.4
합계	1,002	100.0

-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생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다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체로 찬성(236명, 37.5%)’과 ‘매우 찬성(88명, 14.0%)’을 더해 324명(51.5%)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체로 찬성(134명, 36.0%)’과 ‘매우 찬성(26명, 7.0%)’을 더해 160명(43.0%)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표 4-10〉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출생지역별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반대	5	1.3	12	1.9
대체로 반대	29	7.8	49	7.8
보통	178	47.8	245	38.9
대체로 찬성	134	36.0	236	37.5
매우 찬성	26	7.0	88	14.0
합계	372	100.0	630	100.0

-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연령 별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해 보다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50대 이상의 경우 ‘대체로 찬성(120명, 36.6%)’과 ‘매우 찬성(50명, 15.2%)’을 더해 170명(51.8%)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 ‘대체로 찬성(63명, 32.8%)’과 ‘매우 찬성(12명, 6.2%)’을 더해 75명(39.0%)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2-30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1〉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연령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반대	2	1.0	4	1.8	8	3.1	3	0.9
대체로 반대	17	8.9	19	8.4	16	6.2	26	7.9
보통	98	51.0	92	40.9	104	40.5	129	39.3
대체로 찬성	63	32.8	92	40.9	95	37.0	120	36.6
매우 찬성	12	6.2	18	8.0	34	13.2	50	15.2
합계	192	100.0	225	100.0	257	100.0	328	100.0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149명, 30.8%)’을 가장 중요한 찬성 이유로 제시하였음
 - 그 다음 ‘애향심 고취(139명, 28.7%)’,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110명, 22.7%)’, ‘지역경제 활성화(82명, 16.9%)’의 순서로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는 ‘세금 혜택’이나 ‘반대할 이유 없음’ 등이 제시되었음

〈표 4-12〉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본인이나 부모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139	28.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149	30.8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	110	22.7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82	16.9
기타	4	0.8
합계	484	100.0

-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고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31명, 32.6%)’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음
- 그 다음으로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한 지역 간 과열경쟁 및 갈등 심화(19명, 20.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효과 미흡(17명, 17.9%)’,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 미흡(12명, 12.6%)’의 순서로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는 ‘기부금의 부적절한 사용’, ‘지방재정에 대한 불신’, ‘지역 간 갈등 및 분열 유발’ 등이 제시되었음

〈표 4-13〉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고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31	32.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효과 미흡	17	17.9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 미흡	12	12.6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한 지역 간 과열경쟁 및 갈등 심화	19	20.0
기타	16	16.8
합계	95	100.0

- “만일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자 중 606명(60.5%)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4〉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음	606	60.5
기부금을 낼 의향이 없음	396	39.5
합계	1,002	100.0

- 한편 “만일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출생지역별 분석결과,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응답자의 기부 의향(64.6%)이 수도권에서 출생한 응답자(53.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비수도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다 많이 기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4-1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향: 출생지역별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음	199	53.5	407	64.6
기부금을 낼 의향이 없음	173	46.5	223	35.4
합계	372	100.0	630	100.0

- 다음으로 “만일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연령별 분석결과, 50대 이상 응답자의 기부 의향(64.6%)이 20대 이하 응답자(52.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연령이 높을수록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다 많이 기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4-16〉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의향: 연령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음	101	52.6	137	60.9	156	60.7	212	64.6
기부금을 낼 의향이 없음	91	47.4	88	39.1	101	39.3	116	35.4
합계	192	100.0	225	100.0	257	100.0	328	100.0

2) 제도 도입 효과에 관한 인식

-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느 지역에 낼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전남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79명(13.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 강원(63명, 10.4%), 경북(58명, 9.6%), 충남(55명, 9.1%), 경남(52명, 8.6%)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는 76명(12.5%)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특별·광역시보다는 도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표 4-17〉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서울	31	5.1	강원	63	10.4
부산	38	6.3	충북	38	6.3
대구	24	4.0	충남	55	9.1
인천	14	2.3	전북	48	7.9
광주	20	3.3	전남	79	13.0
대전	14	2.3	경북	58	9.6
울산	3	0.5	경남	52	8.6
세종	7	1.2	제주	31	5.1
경기	31	5.1	합계	606	100.0

-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느 지역에 낼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출생지역별 분석결과,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보다 타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남, 충남, 충북, 경북 등은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8〉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출생지역별

구분	출생지역에 기부		타 지역에 기부		미 기부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서울	14	6.2	101	44.7	111	49.1	226	100.0
부산	11	14.5	32	42.1	33	43.4	76	100.0
대구	9	18.4	15	30.6	25	51.0	49	100.0
인천	4	11.1	17	47.2	15	41.7	36	100.0
광주	7	25.0	10	35.7	11	39.3	28	100.0
대전	6	23.1	9	34.6	11	42.3	26	100.0
울산	3	15.0	4	20.0	13	65.0	20	100.0
세종	0	0.0	2	50.0	2	50.0	4	100.0
경기	13	11.8	50	45.5	47	42.7	110	100.0
강원	16	34.8	20	43.5	10	21.7	46	100.0
충북	12	34.3	9	25.7	14	40.0	35	100.0
충남	22	43.1	14	27.5	15	29.4	51	100.0
전북	17	29.8	23	40.4	17	29.8	57	100.0
전남	28	45.9	19	31.1	14	23.0	61	100.0
경북	29	36.7	25	31.6	25	31.6	79	100.0
경남	22	26.8	31	37.8	29	35.4	82	100.0
제주	5	31.2	7	43.8	4	25.0	16	100.0
합계	218	21.8	388	38.7	396	39.5	1,002	100.0

-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느 지역에 낼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연령별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50대 이상의 경우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94명(28.7%)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15명(7.8%)이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고 응답하였음
 -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출생지를 ‘고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4-19〉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연령별

구분	출생지역에 기부		타 지역에 기부		미 기부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대 이하	15	7.8	86	44.8	91	47.4	192	100.0
30대	47	20.9	90	40.0	88	39.1	225	100.0
40대	62	24.1	94	36.6	101	39.3	257	100.0
50대 이상	94	28.7	118	36.0	116	35.4	328	100.0
합계	218	21.8	388	38.7	396	39.5	1,002	100.0

-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기부금 수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그렇다(352명, 35.1%)’와 ‘매우 그렇다(59명, 5.9%)’를 더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자가 411명(41.0%)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렇지 않다(218명, 21.8%)’와 ‘전혀 그렇지 않다(45명, 4.5%)’를 더해 263명(26.3%)이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출생지역(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0〉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5	4.5
그렇지 않다	218	21.8
보통이다	328	32.7
그렇다	352	35.1
매우 그렇다	59	5.9
합계	1,002	100.0

-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기부금 수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연령별 분석결과, 20대 이하의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음
 - 40대와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각각 121명(47.1%과 150명(41.0%)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반면 20대 이하 응답자들은 53명(27.6%)이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70명(36.4%)이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음
 - 연령이 낮을수록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연령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16	8.3	13	5.8	12	4.7	4	4.5
그렇지 않다	54	28.1	44	19.6	55	21.4	65	21.8
보통이다	69	35.9	81	36.0	69	26.8	109	32.7
그렇다	45	23.4	75	33.3	103	40.1	129	35.1
매우 그렇다	8	4.2	12	5.3	18	7.0	21	5.9
합계	192	100.0	225	100.0	257	100.0	328	100.0

-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그렇지 않다(332명, 33.1%)’와 ‘전혀 그렇지 않다(71명, 7.1%)’를 더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403명(40.2%)으로 나타났음

- ‘그렇다(218명, 21.8%)’와 ‘매우 그렇다(23명, 2.3%)’를 더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자는 241명(24.1%)인 것으로 나타났음
- 출생지역(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4-2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1	7.1
그렇지 않다	332	33.1
보통이다	358	35.7
그렇다	218	21.8
매우 그렇다	23	2.3
합계	1,002	100.0

-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연령별 분석결과, 20대 이하의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음
 - 20대 이하 응답자들은 100명(52.0%)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반면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105명(32.0%)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음
 - 연령이 낮을수록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 연령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21	10.9	26	11.6	14	5.4	10	3.0
그렇지 않다	79	41.1	74	32.9	84	32.7	95	29.0
보통이다	61	31.8	85	37.8	84	32.7	128	39.0
그렇다	27	14.1	34	15.1	69	26.8	88	26.8
매우 그렇다	4	2.1	6	2.7	6	2.3	7	2.1
합계	192	100.0	225	100.0	257	100.0	328	100.0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생산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 ‘그렇다(438명, 43.7%)’와 ‘매우 그렇다(48명, 4.8%)’를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자가 486명(48.5%)으로 나타났음
 - ‘그렇지 않다(105명, 10.5%)’와 ‘전혀 그렇지 않다(34명, 3.4%)’를 더해 139명(13.9%)이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음
 - 출생지역(수도권, 비수도권)과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4	3.4
그렇지 않다	105	10.5
보통이다	377	37.6
그렇다	438	43.7
매우 그렇다	48	4.8
합계	1,002	100.0

-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느 지역에 낼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거주 지역별 분석결과, 비수도권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수도권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비수도권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는 530명(52.9%)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수도권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는 76명(7.6%)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10% 이하로 나타났음

〈표 4-25〉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지역: 거주지역별

구분	수도권에 기부		비수도권에 기부		미 기부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서울	21	10.8	101	52.1	72	37.1	194	100.0
부산	1	1.5	39	59.1	26	39.4	66	100.0
대구	0	0.0	28	60.9	18	39.1	46	100.0
인천	11	18.7	25	42.4	23	39.0	59	100.0
광주	0	0.0	16	57.1	12	42.9	28	100.0
대전	0	0.0	17	58.6	12	41.4	29	100.0
울산	0	0.0	11	47.8	12	52.2	23	100.0
세종	1	9.1	6	54.5	4	36.4	11	100.0
경기	23	8.9	126	48.6	110	42.5	259	100.0
강원	4	14.3	18	64.3	6	21.4	28	100.0
충북	3	10.3	11	37.9	15	51.7	29	100.0
충남	3	8.4	17	47.2	16	44.4	36	100.0
전북	1	2.9	23	65.7	11	31.4	35	100.0
전남	3	9.4	19	59.4	10	31.2	32	100.0
경북	1	2.0	28	57.1	20	40.8	49	100.0
경남	3	4.6	38	58.5	24	36.9	65	100.0
제주	1	7.7	7	53.8	5	38.5	13	100.0
합계	76	7.6	530	52.9	396	39.5	1,002	100.0

3)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인식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519명(51.8%)의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음
 - 한편 ‘계획 보다 확대’를 제시한 응답자는 331명(33.0%)으로 ‘계획 보다 축소’를 제시한 응답자(152명, 15.2%)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6〉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적정 세액공제 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계획 유지	519	51.8
계획 보다 축소	152	15.2
계획 보다 확대	331	33.0
합계	1,002	100.0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기부금을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338명(33.7%)의 응답자들이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기부금을 더 많이 낼 생각이 있다고 제시하였음
 - 반면 288명(28.8%)은 세액공제 확대에도 기부금을 더 많이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기부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없음	82	8.2
대체로 없음	206	20.6
보통	376	37.5
대체로 있음	316	31.5
매우 있음	22	2.2
합계	1,002	100.0

-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676명(67.5%)의 응답자들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반면 80명(8.0%)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시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GCF형 고향납세제도 도입 이후 고향납세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표 4-28〉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지정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반대	17	1.7
대체로 반대	63	6.3
보통	246	24.6
대체로 찬성	503	50.2
매우 찬성	173	17.3
합계	1,002	100.0

-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연령별 분석결과, 20대 이하의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지정에 대해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대 이하 응답자들은 128명(66.7%)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 앞에 제시된 분석결과에서 20대 이하 응답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여부 및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측면에서 20대 이하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자신의 기부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20대 이하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 4-29〉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지정 여부: 연령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 반대	5	2.6	6	2.7	4	1.6	2	0.6
대체로 반대	12	6.2	15	6.7	14	5.4	22	6.7
보통	47	24.5	59	26.2	60	23.3	80	24.4
대체로 찬성	87	45.3	104	46.2	131	51.0	181	55.2
매우 찬성	41	21.4	41	18.2	48	18.7	43	13.1
합계	192	100.0	225	100.0	257	100.0	328	100.0

-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가 지정된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건강·의료·복지’ 등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268명(2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 ‘지역산업 진흥(129명, 12.9%)’, ‘환경(122명, 11.2%)’, ‘아동·육아(112명, 11.2%)’, ‘교육·인재육성(96명, 9.6%)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는 ‘기반시설 건설’, ‘취업 지원’, ‘농촌 지역 교통수단’ 등이 제시되었음

〈표 4-30〉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의료·복지	268	26.7
교육·인재육성	96	9.6
환경	122	12.2
아동·육아	112	11.2
지역산업 진흥	129	12.9
스포츠·문화진흥	12	1.2
마을만들기·시민활동	57	5.7
관광·교류·정주촉진	74	7.4
안심·안전·방재	71	7.1
재해지원	56	5.6
기타	5	0.5
합계	1,002	100.0

- “고향사랑기부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741명(74.0%)이 답례품 제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61명(26.0%)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시 답례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3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찬성	741	74.0
반대	261	26.0
합계	1,002	100.0

- “고향사랑기부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연령별 분석결과, 20대 이하 응답자들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에 보다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여부: 연령별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찬성	160	83.3	176	78.2	188	73.2	217	66.2
반대	32	16.7	49	21.8	69	26.8	111	33.8
합계	192	100.0	225	100.0	257	100.0	328	100.0

- “만약 답례품 제공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101명(38.7%)이 ‘기부금의 일부 유출을 반대하기 때문에’라고 제시하였음
- 그 다음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94명, 36.0%)’, ‘답례품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65명, 24.9%)’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답례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답례품 생산 및 제공을 위해 기부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표 4-3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 반대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94	36.0
굳이 답례품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65	24.9
기부금의 일부 유출을 반대하기 때문에	101	38.7
기타	1	0.4
합계	261	100.0

- “만약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다면 어떠한 답례품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339명(33.8%)이 ‘지역 농산물(쌀 제외, 가공품 포함)’이라고 제시하였음
 - 그 다음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175명, 17.5%)’, ‘지역 축산품(105명, 10.5%)’, ‘지역 쌀(98명, 9.8%)’, ‘지역 수산물(66명, 6.6%)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 상품권’, ‘종량제 봉투’, ‘명예 시민권’,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 등이 제시되었음

〈표 4-3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 농산물 (쌀 제외, 가공품 포함)	339	33.8
지역 쌀 (가공품 포함)	98	9.8
지역 축산품 (가공품 포함)	105	10.5
지역 수산물 (가공품 포함)	66	6.6
지역 전통공예품 등	52	5.2
감사장	62	6.2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	175	17.5
지역 개최 이벤트 초대	34	3.4
재난 피해지역 특산품	56	5.6
기타	15	1.5
합계	1,002	100.0

- “만약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다면 그 액수는 기부금의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507명(50.6%)이 ‘10% 이하’라고 제시하였음
 - 그 다음으로 ‘10% 초과 - 20% 이하(294명, 29.3%)’, ‘20% 초과 - 30% 이하(105명, 10.5%)’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 분석결과 90.4%의 응답자가 답례품 비율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음
- 답례품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기부금의 대부분을 답례품에 지출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답례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80% 이상을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총무성에서는 답례품 비율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표 4-35〉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금 대비 답례품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10% 이하	507	50.6
10% 초과 - 20% 이하	294	29.3
20% 초과 - 30% 이하	105	10.5
30% 초과 - 40% 이하	32	3.2
40% 초과 - 50% 이하	53	5.3
기타	11	1.1
합계	1,002	100.0

3.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추정

1) 추정방법: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일반적인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음
 - 둘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시장 시나리오에 관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가치 평가와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음

- 셋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필요에 따라 지불의사금액모형을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음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한 지불수단 및 지불의사금액의 유도방법은 다음과 같음
 - Arrow(1986) 등의 논의에 의하면 지불수단과 시나리오의 중요한 조건은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응답자는 대상재화의 공급조건과 지불방법을 포함한 정책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불수단은 세금의 형태가 아닌 기부제도 방식으로 제시하였는데, 실제 구상중인 제도가 강제적인 세금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임
 -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사용되는 지불의사 유도방법은 개방형 질문법, 경매법, 지불카드법, 양분선택형질문법 등이 있음
- 이 연구는 Hanemann(1985)과 Carson(1985)에 의해 제안된 이중 양분 선택형질문법을 사용하여 일정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예/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음
 - 이 질문법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여러 금액을 제시하며,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제시금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제시함
 - 첫 번째 제시금액에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제시금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제시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치게 됨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모집단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으로 설정하였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지불수단으로 '개인의 기부금'을 활용하였음
 - 이 연구에서의 분석단위는 개인으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표본추출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를 반영하여 실시하였음

2) 추정모형: 지불의사금액모형

가. 지불의사금액모형의 개요

-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이나 질이 변화하며, 개인의 경우 자신이 소비하는 공공재의 공급량이나 질은 대개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있음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편익은 소비자에게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이나 질이 소비자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만약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됨
 - 이러한 소비자 후생의 증가폭을 지불의사금액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지불의사금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Hicksian 여(Hicksian surplus)의 개념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음
 - Hicksian 여의 개념은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와 대등잉여(equivalent surplus)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러한 개념 하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량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 변화를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사금액이란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음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도출되는 지불의사금액모형의 이론적 기초는 Hanemann(1984) 방식과 Cameron(1998)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Hanemann 방식이 간접효용함수 형태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리 Cameron 방식은 (1998) 지출함수의 차이로 정의되는 변화함수의 누적확률분포를 직접적으로 정의함
 - 이 연구에서는 Cameron 방식을 사용하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은 Hicksian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CS)로서 정의됨

- 즉,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인 현재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수준과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된 경우 현재와 같은 효용수준을 얻기 위한 지출 수준의 차이로서 표현됨
-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한 Hicksing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될 수 있음
 -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없는 상태를 q_0 ,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수준을 q_1 으로 나타낼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 경우 현재의 효용수준 \bar{U} 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이 종전보다 더 작아지게 됨
 - 이 차이를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부여하는 가치로 해석할 수 있고,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이 금액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음
 - 두 지출수준 사이의 차이를 Hicks의 보상잉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CS = E(P, q_0; \bar{U}, Q, T) - E(P, q_1; \bar{U}, Q, T) \quad (1)$$

P : 시장재들의 가격 벡터

\bar{U} :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없는 현재의 효용수준

Q :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되는) 여타의 공공재 벡터

T :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변수 벡터

- 수식 (1)의 첫 번째 지출함수의 값 $E(P, q_0; \bar{U}, Q, T)$ 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bar{U} 의 효용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출수준이며, 이는 현재의 소득수준 Y 를 의미함

- 두 번째 지출함수의 값 $E(P, q_1; \bar{U}, Q, T)$ 는 현재의 소득수준(Y)보다 적은 값(Y')을 갖는데,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인한 후생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보상잉여는 Y 와 Y' 의 차이로 표현됨
- 쌍대정리를 이용해서 수식 (1)을 수식 (2)와 같이 쓸 수 있으며, Hicks적 보상잉여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불의사금액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음

$$\begin{aligned}
 CS &= E(P, q_0; \bar{U}, Q, T) - E(P, q_1; \bar{U}, Q, T) \quad (2) \\
 &= f(P, q_1, q_0, Q, Y, T) \\
 &= WTP(q_1)
 \end{aligned}$$

- 지불의사금액함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공공서비스 공급량의 변화 전후 수준, 현재 소득 수준 및 응답자들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게 됨
- 지불의사금액함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인한 후생 변화를 화폐가치로 표현해 주는 가치측정함수(valuation function)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어떤 사람의 지불의사금액이 $WTP_i(q_1)$ 이라고 할 때 그에게 제시한 금액에 대한 ‘예/아니오’라는 양분선택적 응답으로부터 이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음
- 그 사람이 실제 지불할 용의를 갖는 금액, 즉 내재 지불의사금액(underlying WTP)이 WTP^*_i 라고 할 때 이를 다음과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음

$$y_i^* = x_i\beta + \epsilon_i \quad (3)$$

- 여기에서 x_i 는 설명변수들의 벡터, β 는 설명변수의 계수벡터를 뜻하며, 오차항 ϵ_i 는 특정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함

나. 지불의사금액모형의 추정방법

- 응답자의 대상 재화에 대한 내재 지불의사금액 WTP_i^* 은 직접 관찰될 수 없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제시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양분선택적 응답결과만을 알 수 있음
 -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 중 하나의 응답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응답자의 내재 지불의사금액을 알아낼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시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자신의 내재 지불의사금액 WTP_i^* 과 비교하여 '예' 혹은 '아니오'의 응답을 하게 됨
 - 즉, 그 금액이 WTP_i^* 보다 작으면 '예', 그리고 반대의 경우라면 '아니오'라는 대답을 제시함
 - 이 때 다음과 같은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를 정의할 수 있음

$$\begin{aligned} I_{ji} &= 1 && \text{if } WTP \geq t_{ji} && (4) \\ I_{ji} &= 0 && \text{if } WTP < t_{ji}, && j = 1, 2 \end{aligned}$$

- 실제로 이중 양분선택형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단계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 또 다시 제시하게 됨

- 즉 '예'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제시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예컨대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낼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반면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작은 금액(예컨대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낼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함
- 이렇게 두 번째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을 t_{2i} 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응답이 '예' 혹은 '아니오'인지에 따라 I_{2i} 가 각각 1과 0의 값을 갖게 됨
- 어떤 사람에게 두 단계에 걸쳐 제시한 금액에 대한 양분선택적 응답 결과는 두 번 모두 긍정하는 경우, 첫 번째에 긍정하고 두 번째는 거절하는 경우, 첫 번째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긍정하는 경우, 두 번 모두 거절하는 경우의 네 가지 중 하나가 됨
- 즉, $(I_{1i}, I_{2i}) = (1, 1), (1, 0), (0, 1), (0, 0)$ 이 되며, 따라서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ln L = \sum_i \left\{ \begin{array}{l} (I_{1i} I_{2i}) \ln [1 - F(t_{2i}; \theta)] \\ + I_{1i} (1 - I_{2i}) \ln [F(t_{2i}; \theta) - F(t_{1i}; \theta)] \\ + (1 - I_{1i}) I_{2i} \ln [F(t_{1i}; \theta) - \Phi(t_{2i}; \theta)] \\ + (1 - I_{1i}) (1 - I_{2i}) \ln [F(t_{2i}; \theta)] \end{array} \right\} \quad (5)$$

- 한편 단일 양분선택모형 분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j = 2$ 는 제외하게 되며,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ln L = \sum_i \{ (I_{1i}) \ln [1 - F(t_{1i}; \theta)] + (1 - I_{1i}) \ln [F(t_{1i}; \theta)] \} \quad (6)$$

- 이중 양분선택형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단일 양분선택모형의 지수지불의사함수를 이용함
 - 지불거부자(지불저항 포함)와 지불의향자의 응답을 구분한 후, 지불의향자의 응답을 대상으로 WTP#을 추정함
 - 지수지불의사함수가 $WTP_j = \exp(X_j'\beta + \eta_j)$ 와 같은 지수함수의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고, 확률변수 η_j 영향은 그 중앙값(median)을 취하는 방식으로 지불의사 추정치에 반영함
 - WTP#에 지불의향자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 WTP를 도출함

3) 추정결과

- 사전 조사를 통해 1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의 5가지 지불의사금액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본 조사에서 제시하였음
 - 이 제시금액들을 수용한 비율을 보면 10,000원 56.7%, 50,000원 48.3%, 100,000원 43.9%, 200,000원 24.9%, 400,000원 16.1%로 나타남
 - 각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응답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시금액이 커질수록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표 4-36〉 본 조사의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

제시금액	수용		거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0,000원	102	56.7	78	43.3	180	100.0
50,000원	87	48.3	93	51.7	180	100.0
100,000원	79	43.9	101	56.1	180	100.0
200,000원	45	24.9	136	75.1	181	100.0
400,000원	29	16.1	151	83.9	180	100.0
합계	342	38.0	559	62.0	901	100.0

-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단일 양분선택형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모형을 추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함
 -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을 구간 자료 또는 우측 중도절단 자료로 분석할 경우 생존분석모형(survival analysis) 또는 지속기간모형(dura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상수항이 1인당 연간 평균 지불의사금액이 됨
 - 지불의사금액 추정은 상수항 이외의 공변량을 제외한 지불의사금액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함
- 로그로지스틱(log logistic) 분포를 가정한 평균지불의사금액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상수항 및 척도모수는 t값으로 판단할 때,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지불거부자(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를 제외한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지불의사금액(WTP)의 중앙값은 1인당 연간 160,091원임
 - 이 금액은 추정된 상수항 계수를 지수함수에 넣어 산정되었음
 - 즉, $\exp(11.9835)=160,091$ 임

〈표 4-37〉 지불의사금액모형 추정결과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항	11.9835	0.1045	114.67***
척도모수	1.024	0.1073	9.51***
log-likelihood	-306.71		

주: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이 금액에 전체 표본 중에서 지불거부자를 제외한 지불의사자의 비율인 61.9%(558/901×100)를 곱하면 지불의사자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99,164원이 도출됨

〈표 4-38〉 지불의사자 가중치를 반영한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구분	지불거부자 제외 WTP		지불의사자 가중치 반영 평균 WTP(원)
	평균 WTP(원)	t-값	
고향사랑기부제도	160,091	9.51***	99,146

주: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추정된 평균 지불의사금액에 모집단을 곱하면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연간 총 규모를 도출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모집단은 다양한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음
 - 첫째, 설문조사 대상인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파악할 경우 모집단 인구수는 34,738,329명임(2019년 3월 기준)
 -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납세자를 모집단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17,277,038명임(2017년 결산 기준)
 -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모집단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6,902,514명임(2017년 결산 기준)

〈표 4-39〉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총 규모 추정결과

모집단 인구수(명)		1인당 연간 평균 WTP 추정치(원)	연간 총 규모(억 원)
만 19-65세 국민	34,738,329	99,146	34,442
전체 납세자	17,277,038		17,129
종합소득세 납세자	6,902,514		6,844

- 모집단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총 규모는 6,844억 원에서 34,44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제2절 텍스트네트워크분석

1. 텍스트네트워크분석 개요

1) 네트워크분석의 의의

- 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두 개 이상의 개체 간에 이루어지는 연결을 계량적·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 네트워크분석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node) 간의 관계(link)를 분석하는 기법임
 - 이러한 네트워크분석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가정하면서, 개체간의 관계(relationships) 구조에 초점을 둠(Serrat, 2009)
 - 기존의 방법론이 주체 속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네트워크분석은 상대적으로 관계 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네트워크분석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스포츠과학, 의료·생명과학 등으로 활용 폭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음(김용학, 2011)
 - 특히 최근에는 IT 분야에서 SNS를 활용한 한 네트워크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네트워크분석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네트워크 속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단위(사람, 키워드, 조직 등)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둘째,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키워드·조직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보흐름의 단절현상을 측정할 수 있음
 - 셋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시킬 수 있음
 - 넷째, 조직의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분석이 활용되며, 이외에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실무 및 학문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Serrat, 2009)

2)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특징

- 텍스트네트워크분석(Text Network Analysis: TNA)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은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때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증시하는 네트워크분석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시킨 방법임
 - 네트워크분석은 사회현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각각의 개체가 아닌 개별 행위자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텍스트(text)에 적용한 분석이 텍스트네트워크분석임
 - 즉, 행위자(사람) 대신 메시지의 구성요소인 단어(keyword)들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분석함(Wang & Rada, 1998; Wasserman & Faust, 1994)
- 전통적인 내용분석 방법이 노동집약적이고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면,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메시지 기반의 분석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음(박한우 & Leydesdorff, 2004; 장하용, 2001)
 - 또한 개별 단어의 고정된 속성이나 개념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는 관계의 맥락 속에서 역동적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김상배, 2011)
 - 텍스트네트워크분석에서는 단어들의 빈도와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 메시지의 의미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음
 - 이때 정보 단위가 되는 단어나 구절이 각각의 노드(node)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개념 간의 연결 상태를 링크(link)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링크로 드러나는 단어들의 공동출현(co-occurrence) 관계를 통해 의미를 해석하게 됨(Wang & Rada, 1998)
 - 단어들의 사용빈도와 관계는 텍스트에서 강조되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고 단어들의 결합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박한우 & Leydesdorff, 2004)

-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은 개별 단어의 조합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어떠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주목함(Wasserman & Faust, 1994)
 - 따라서 메시지 안에 숨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송신자의 의도를 계량화하고 구조적인 패턴을 추출할 수도 있음(김상배, 2011; 박지영·김태호·박한우, 2013)

2. 전체 키워드 분석결과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위해 신문 기사를 활용하였음
 - 신문 기사 수집과정에서 텍스트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신문 기사 아카이브를 활용하였음(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고향세’, ‘고향납세제도’, ‘고향사랑기부제도’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를 검색하였고, 그 결과 총 293개의 기사를 추출하였음¹¹⁾

1) 텍스트네트워크의 시각화: 전체 키워드

- 전체 키워드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분석에 활용된 키워드의 수는 805개이며, 키워드 간 형성되는 관계는 1,302개로 분석되었음
 - 네트워크 밀도는 0.004이며,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는 1.617개로 나타났음

11) 293개의 신문 기사 리스트는 부록에 별도로 소개하였다.

〈표 4-40〉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전체 키워드

구분	키워드의 수 (# of words)	키워드 간 관계의 종류 (# of Links)	네트워크 밀도 (Density)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 (Average degree)
측정값	805	1,302	0.004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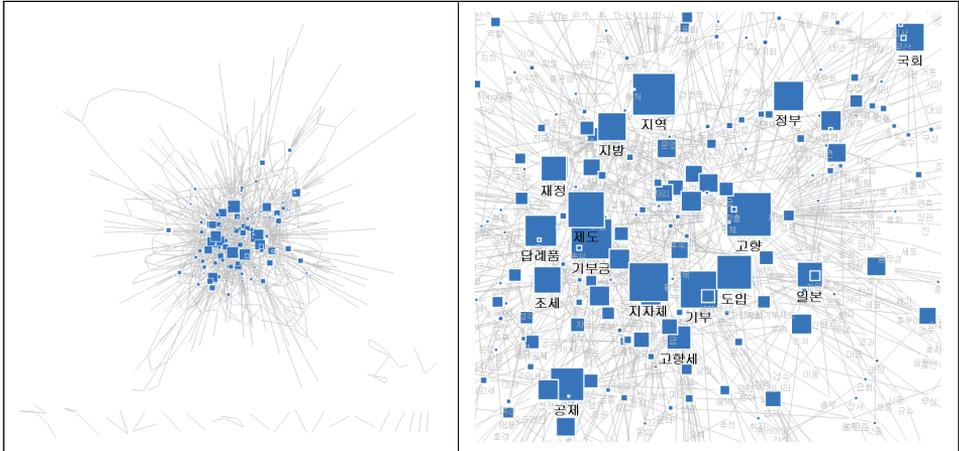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전체 키워드에 관한 워드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음
 - 전체 키워드에서 ‘고향’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부금’, ‘제도’,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도’ 등의 키워드가 자주 쓰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1〉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전체 키워드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전체 키워드 간 연계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를 실시 하였음
 - ‘고향’, ‘기부’, ‘도입’, ‘지역’ 등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자주 등장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전체 키워드



- 텍스트네트워크 내 대표적인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텍스트네트워크 상에서는 ‘고향’을 중심으로 ‘기부’, ‘기부금’, ‘고향세’, ‘지역’, ‘제도’, ‘지자체’, ‘일본’, ‘국회’, ‘공제’, ‘도입’ 등의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2)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전체 키워드

- 분석결과 ‘고향(0.381841)’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기부(0.141791)’, ‘고향사랑기부제도(0.135572)’, ‘지역(0.134328)’, ‘제도(0.129353)’ 등도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고향에 대한 기부,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제도에 대한 소개, 향후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는 의도의 기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답례품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41〉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전체 키워드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1	고향	0.381841	16	정부	0.041045
2	기부	0.141791	17	국회	0.039801
3	고향사랑기부제도	0.135572	18	인구	0.03607
4	지역	0.134328	19	납세	0.03607
5	제도	0.129353	20	활성화	0.034826
6	기부금	0.119403	21	세법	0.034826
7	도입	0.093284	22	세액공제	0.033582
8	지자체	0.09204	23	세제	0.032338
9	고향세	0.090796	24	발전	0.032338
10	공제	0.070896	25	조세	0.031095
11	재정	0.067164	26	자치	0.031095
12	지방	0.058458	27	사용	0.031095
13	일본	0.053483	28	제공	0.029851
14	답례품	0.04602	29	복지	0.029851
15	농어촌	0.042289	30	농촌	0.029851

- 전체 키워드에 대한 토픽 분석결과¹²⁾, 기본적으로 제도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12) 텍스트네트워크 내에서 키워드들이 서로 가까이 무리를 지어 언급되는 의미의 덩어리를 의미함. 즉, 같은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는 것은 여러 기사에 걸쳐 해당 키워드들이 하나의 문장에 안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한 문장 안에서 자주 동시에 언급된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주요 논의 주제로 생각할 수 있음. 총 293개 기사에서 함께 동시에 언급되는 주제 중 상위 3가지를 제시하였음. 논의 주제는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상위 논의 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본문에서는 논의 주제 중 상위 3개까지만 제시하였음.

-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논의 주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에 관한 것임(논의 주제 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이 고려되고 있고, 이는 해당 지역으로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 293개 신문기사 중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거의 대부분 제시하고 있음
- 다음으로 고향을 위해 기부를 했을 때,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음(논의 주제 2)
 - 고향을 위해 기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많은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보답은 주로 ‘공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의가 많이 제시되고 있음
-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및 시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음(논의 주제 3)
 -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자주 언급하고 있음

〈표 4-42〉 토픽 분석결과: 전체 키워드

기사에서 언급되는 논의 주제		1st 키워드	2nd 키워드	3rd 키워드	4th 키워드	5th 키워드
논의 주제 1	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	지역	지자체	재정	고향세	기부금
논의 주제 2	제도 도입 시 공제해택 제공	고향	기부	제도	도입	공제
논의 주제 3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고향	국회	지방	고향사랑 기부제도	법안

3. 주요 쟁점별 분석결과

1) 기부주체에 관한 분석결과

가. 텍스트네트워크의 시각화: 기부주체

- 기부주체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키워드의 수는 185개이며, 키워드 간 형성되는 관계는 284개임
 - 네트워크 밀도는 0.017이며,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는 1.535개임

〈표 4-43〉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기부주체

구분	키워드의 수	키워드 간 관계의 종류	네트워크 밀도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
측정값	185	284	0.017	1.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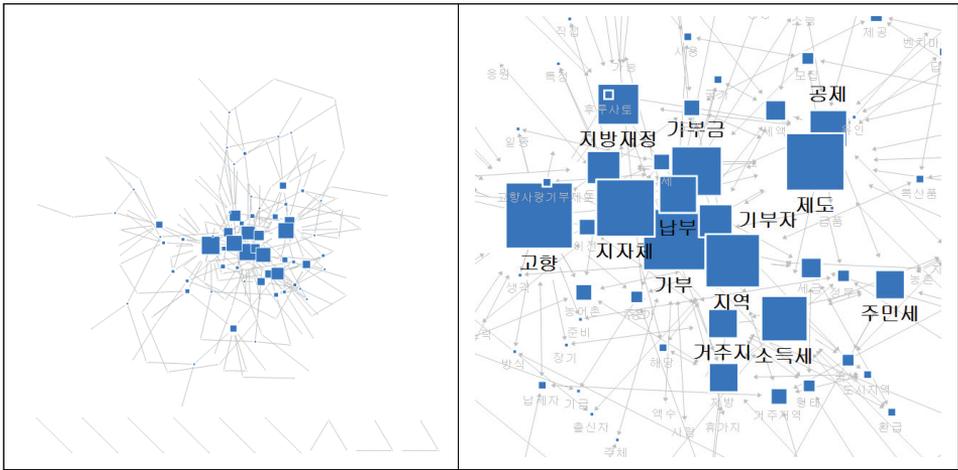
- 기부주체에 관한 워드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고향’, ‘기부’, ‘지자체’, ‘제도’, ‘기부금’, ‘공제’ 등의 키워드가 자주 쓰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3〉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기부주체



- 기부주체와 관련하여 신문기사에서 활용된 키워드 간 연계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음
- ‘기부자’, ‘고향’, ‘지자체’, ‘지방재정’, ‘소득세’, ‘거주지’ 등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기부주체



- 기부주체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내 대표적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 텍스트네트워크 상에서는 ‘고향’을 중심으로 ‘기부’, ‘공제’, ‘지자체’, ‘세액’, ‘기부금’, ‘제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지역’, ‘지방’, ‘소득세’, ‘주민세’ 등의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부주체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주민세’, ‘지방재정’ 등과 같은 키워드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기부주체를 다루는 신문기사도 제도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주체와 관련된 키워드가 키워드 네트워크 상위에서 언급되지는 않고 있음

나.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주체

- 분석결과 ‘고향(0.48913)’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기부(0.320652)’, ‘공제(0.277174)’, ‘지자체(0.206522)’, ‘세액(0.201087)’, ‘기부금(0.195652)’ 등도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기부주체와 관련하여 ‘소득세(0.119565)’, ‘지방재정(0.097826)’, ‘주민세(0.081522)’ 등의 연결중심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44〉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주체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1	고향	0.48913	16	도시민	0.081522
2	기부	0.320652	17	거주지역	0.076087
3	공제	0.277174	18	개정안	0.076087
4	지자체	0.206522	19	국회의원	0.070652
5	세액	0.201087	20	세금	0.070652
6	기부금	0.195652	21	일본	0.065217
7	제도	0.173913	22	소득	0.065217
8	고향사랑기부제도	0.163043	23	납세자	0.059783
9	지역	0.146739	24	납세	0.059783
10	지방	0.13587	25	세제혜택	0.054348
11	소득세	0.119565	26	기부자	0.054348
12	자치단체	0.108696	27	거주지	0.048913
13	납부	0.103261	28	정착	0.043478
14	지방재정	0.097826	29	지방세	0.038043
15	주민세	0.081522	30	전국	0.038043

- 기부주체 관련 토픽 분석결과 고향에 대한 기부금 납부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논의 주제 1)
 - 그러나 이것은 제도 도입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라고 볼 수 있음

- 마찬가지로 2번째 논의 주제에서도 기부주체와 관련된 논의라기보다는 제도 도입을 통해 고향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내용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논의 주제 2)
- 마지막으로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논의되고 있음(논의 주제 3)
- 전체적으로 기부주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신문기사 특성상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한편 기부주체에 관한 분석결과에서 상위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업과 관련된 내용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특성상 기업이 기부주체가 되는 것은 추가적인 논쟁 및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이 기부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기부주체를 기업까지 확장하는 것은 제도 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신문기사 상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의 의견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4-45〉 토픽 분석결과: 기부주체

기사에서 언급되는 논의 주제		1st 키워드	2nd 키워드	3rd 키워드	4th 키워드	5th 키워드
논의 주제 1	기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	지자체	고향	납부	소득세	국회의원
논의 주제 2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고향	제도	기부	자치단체	지역
논의 주제 3	고향에 기부 시 세액공제 제공	고향	공제	세액	기부금	기부

2) 기부대상에 관한 분석결과

가. 텍스트네트워크의 시각화: 기부대상

- 기부대상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분석에 활용된 키워드의 수가 293개이며, 키워드 간 형성되는 관계는 430개로 분석되었음
 - 네트워크 밀도는 0.01이며,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는 1.468개임

〈표 4-46〉 텍스트네트워크(기부대상) 속성

구분	키워드의 수	키워드 간 관계의 종류	네트워크 밀도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
측정값	293	430	0.01	1.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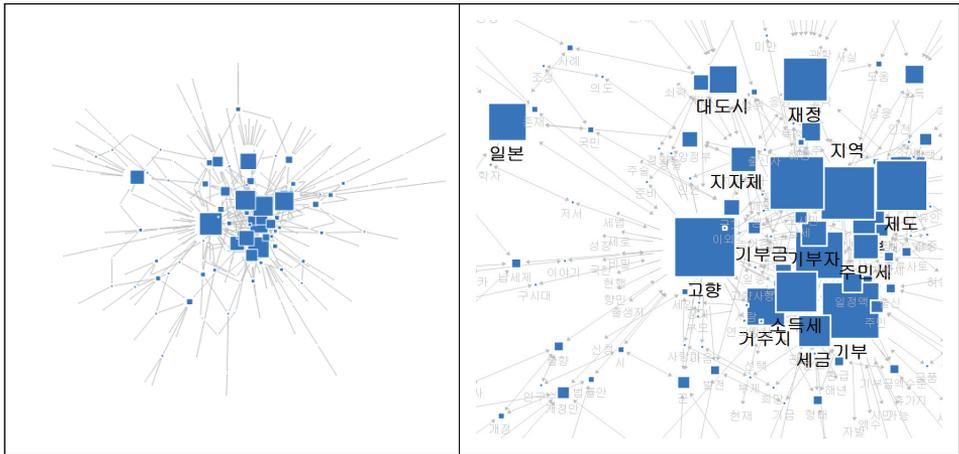
- 기부대상 범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에서는 ‘고향’, ‘기부’, ‘지자체’, ‘공제’, ‘제도’, ‘기부금’, ‘세액’, ‘지방도시’, ‘지역’, ‘도시민’ 등의 키워드가 자주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기부대상



- 기부대상과 관련하여 신문기사에서 활용된 키워드 간 연계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음
- ‘고향’, ‘기부’, ‘지자체’, ‘대도시’, ‘재정’ 등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기부대상



- 기부대상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 내 대표적인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 텍스트네트워크 상에서는 ‘고향’을 중심으로 ‘기부’, ‘지자체’, ‘공제’, ‘지역’, ‘기부금’, ‘재정’ 등의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

나.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대상

- 분석결과 ‘고향(0.410959)’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기부(0.321918)’, ‘지자체(0.188356)’, ‘공제(0.184932)’, ‘지역(0.167808)’, ‘세액(0.140411)’, ‘기부금(0.130137)’, ‘제도(0.113014)’ 등도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7〉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대상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1	고향	0.410959	16	세금	0.061644
2	기부	0.321918	17	주민세	0.054795
3	지자체	0.188356	18	납세자	0.054795
4	공제	0.184932	19	거주	0.054795
5	지역	0.167808	20	기부금액수준	0.05137
6	세액	0.140411	21	거주지	0.047945
7	기부금	0.130137	22	개정안	0.047945
8	제도	0.113014	23	도시민	0.044521
9	재정	0.10274	24	소득	0.041096
10	고향사랑기부제도	0.09589	25	기부자	0.041096
11	일본	0.078767	26	특산품	0.037671
12	소득세	0.078767	27	본인	0.037671
13	납부	0.071918	28	납세	0.037671
14	혜택	0.068493	29	지방도시	0.034247
15	대도시	0.065068	30	군	0.034247

- 토픽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부대상인 ‘고향’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논의 주제 1)
 - 특히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위치에 있는 대도시의 경우, 기부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즉,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목적과의 관계 속에서 기부대상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기부대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으며, 세액공제에 대한 부담을 고향(대도시 또는 소도시)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논의 주제2)

〈표 4-48〉 토픽 분석결과: 기부대상

기사에서 언급되는 논의 주제		1st 키워드	2nd 키워드	3rd 키워드	4th 키워드	5th 키워드
논의 주제 1	기부대상으로서 대도시 포함 논의	고향	지자체	재정	대도시	일본
논의 주제 2	고향에 기부 시 세액공제 제공	고향	기부	제도	공제	세액
논의 주제 3	기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	지자체	지역	기부	소득세	납부

3) 기부형태에 관한 분석결과

가. 텍스트네트워크의 시각화: 기부형태

- 기부형태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분석에 활용된 키워드의 수는 257개이며, 키워드 간 형성되는 관계는 370개로 분석되었음
 - 네트워크 밀도는 0.011이며,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는 1.44개임

〈표 4-49〉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기부형태

구분	키워드의 수	키워드 간 관계의 종류	네트워크 밀도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
측정값	257	370	0.011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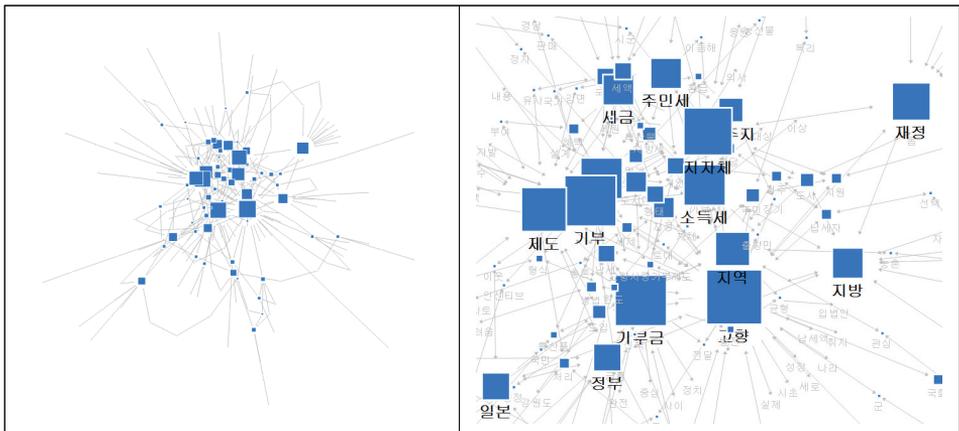
- 기부형태에 관한 워드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음
 - 고향사랑기부금의 형태와 관련하여 신문기사에서 어떠한 키워드가 주로 활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를 실시하였음
 - ‘고향’과 함께 ‘기부’, ‘기부금’, ‘제도’, ‘지자체’, ‘공제’, ‘세금’, ‘소득세’, ‘주민세’ 등의 키워드가 자주 쓰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7〉 고항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기부형태



- 기부형태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활용된 키워드 간 연계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를 실시하였음
- ‘고항’, ‘기부금’, ‘일본’, ‘정부’, ‘지자체’, ‘공제’ 등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자주 등장하고 있음

〈그림 4-8〉 고항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기부형태



- 기부형태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 내 대표적인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 텍스트네트워크 상에서는 ‘고향’을 중심으로 ‘기부금’, ‘기부’, ‘공제’, ‘지자체’, ‘제도’, ‘지방’, ‘소득세’, ‘세액’, ‘재정’ 등의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형태

- 분석결과 ‘고향(0.335938)’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기부금(0.199219)’, ‘기부(0.175781)’, ‘공제(0.152344)’, ‘지자체(0.144531)’, ‘제도(0.136719)’ 등도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0〉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기부형태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1	고향	0.335938	16	납세	0.0625
2	기부금	0.199219	17	지정	0.058594
3	기부	0.175781	18	일본	0.050781
4	공제	0.152344	19	혜택	0.046875
5	지자체	0.144531	20	법	0.046875
6	제도	0.136719	21	납세자	0.046875
7	지방	0.101563	22	세제	0.039063
8	고향사랑기부제도	0.09375	23	국세	0.039063
9	소득세	0.089844	24	거주지	0.039063
10	세액	0.089844	25	거주	0.039063
11	재정	0.074219	26	개정안	0.039063
12	지역	0.070313	27	지방세	0.035156
13	주민세	0.066406	28	정부	0.035156
14	자치단체	0.0625	29	도시민	0.035156
15	세금	0.0625	30	답례품	0.03125

- 토픽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 납부로 파악하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음(논의 주제 1)
 - 기부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데, 기부를 일종의 '세금'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신문기사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에 기부를 단지 기부금으로 간주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논의 주제 3)
 - 일반적으로 특정 단체에 기부하는 것처럼 기부금을 내고,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하는 방식이 신문기사에서 논의되고 있음
- 또한 기부형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음(논의 주제 2)

〈표 4-51〉 토픽 분석결과: 기부형태

기사에서 언급되는 논의 주제		1st 키워드	2nd 키워드	3rd 키워드	4th 키워드	5th 키워드
논의 주제 1	기부에 대한 소득세 혜택 논의	지자체	소득세	기부	납세자	재정
논의 주제 2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법/제도의 도입	고향	지방	일본	법	고향사랑 기부제도
논의 주제 3	고향에 기부 시 세액공제 제공	고향	기부금	제도	공제	세액

4) 답례품 제공에 관한 분석결과

가. 텍스트네트워크의 시각화: 답례품 제공

- 답례품 제공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분석에 활용된 키워드의 수는 346개이며, 키워드 간 형성되는 관계는 473개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네트워크 밀도는 0.008이며,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는 1.367개임

〈표 4-52〉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답례품 제공

구분	키워드의 수	키워드 간 관계의 종류	네트워크 밀도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
측정값	346	473	0.008	1.367

○ 답례품 제공 관련 워드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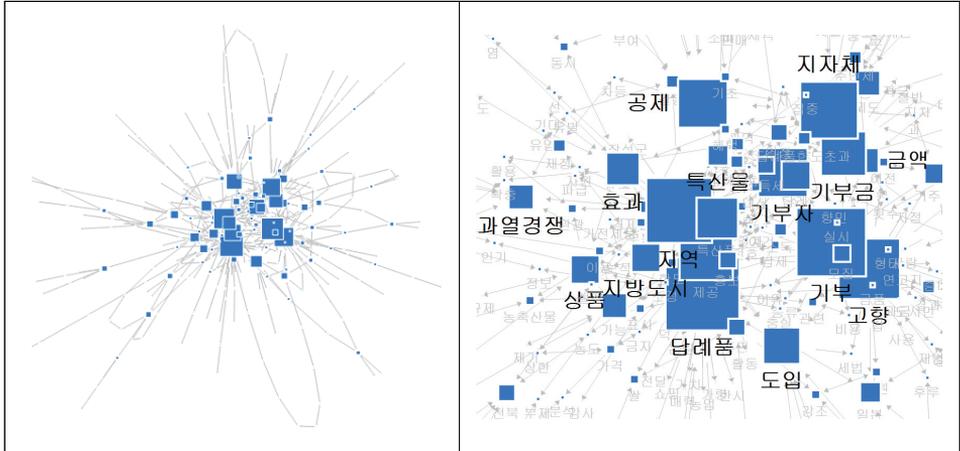
- 답례품 제공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어떠한 키워드가 주로 활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를 실시하였음
- ‘답례품’과 함께, ‘지역’, ‘기부’, ‘지자체’, ‘제공’, ‘고향’, ‘특산품’, ‘과열경쟁’ 등의 키워드가 자주 쓰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9〉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답례품 제공



○ 답례품 제공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활용된 키워드 간 연계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음

〈그림 4-10〉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답례품 제공



- 답례품 제공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 내 대표적인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 텍스트네트워크 상에서는 ‘답례품’을 중심으로 ‘제공’, ‘지역’, ‘기부’, ‘기부자’, ‘고향’, ‘지방도시’, ‘공제’, ‘과열경쟁’, ‘특산물’ 등의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답례품 제공

- 분석결과 ‘답례품(0.234783)’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0.226087)’, ‘기부(0.176812)’, ‘제공(0.147826)’, ‘지자체(0.13913)’, ‘고향(0.113043)’, ‘특산물(0.095652)’, ‘공제(0.075362)’ 등도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경제활성화(0.028986)’, ‘과열경쟁(0.026087)’, ‘충무성(0.023188)’ 등의 키워드도 연결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53〉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답례품 제공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1	답례품	0.234783	16	일본	0.028986
2	지역	0.226087	17	상품	0.028986
3	기부	0.176812	18	경제활성화	0.028986
4	제공	0.147826	19	지방도시	0.026087
5	지자체	0.13913	20	제도	0.026087
6	고향	0.113043	21	과열경쟁	0.026087
7	특산품	0.095652	22	가능	0.026087
8	공제	0.075362	23	총무성	0.023188
9	기부자	0.066667	24	조사	0.023188
10	기부금	0.052174	25	주민	0.02029
11	금액	0.052174	26	한도	0.02029
12	답례	0.046377	27	단체	0.02029
13	세액	0.037681	28	결과	0.02029
14	도입	0.034783	29	홍보	0.017391
15	효과	0.028986	30	전북	0.017391

- 토픽 분석결과 기부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도입하되, 그 한도를 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논의 주제 1)
 - 단지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수준의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때에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논의하고 있음(논의 주제 2)
- 실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특산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 본래 제도 도입 취지를 해친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논의 주제 3)

〈표 4-54〉 토픽 분석결과: 답례품 제공

기사에서 언급되는 논의 주제		1st 키워드	2nd 키워드	3rd 키워드	4th 키워드	5th 키워드
논의 주제 1	답례품 제공 허용 시 한도 설정 관련 논의	답례품	제공	한도	도입	가능
논의 주제 2	특산품 제공 시 과열경쟁 문제	지역	지자체	특산품	기부금	과열경쟁
논의 주제 3	일본의 특산품 활용 사례	기부	고향	특산품	공제	일본

5) 세액공제에 관한 분석결과

가. 텍스트네트워크의 시각화: 세액공제

- 세액공제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분석에 활용된 키워드의 수는 268개이며, 키워드 간 형성되는 관계는 397개로 분석되었음
 - 네트워크 밀도는 0.011며,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는 1.481개임

〈표 4-55〉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세액공제

구분	키워드의 수	키워드 간 관계의 종류	네트워크 밀도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
측정값	268	397	0.011	1.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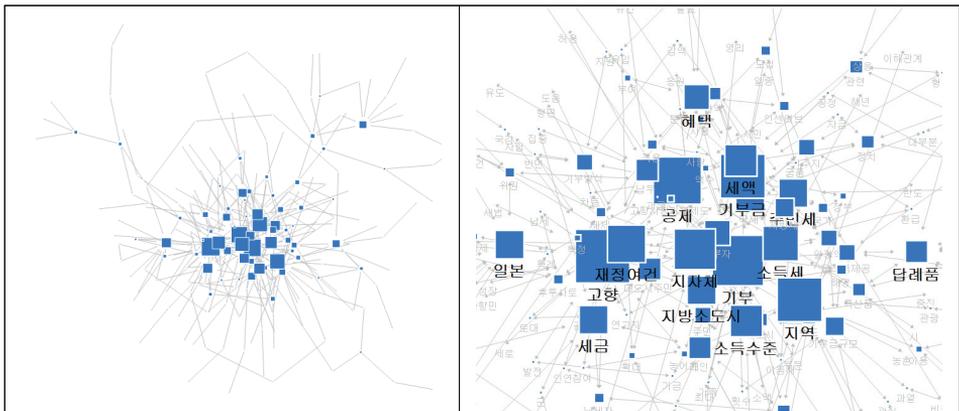
- 세액공제에 관한 워드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음
 - 세액공제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어떠한 키워드가 주로 활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워드클라우드를 시각화를 실시하였음
 - ‘고향’과 함께 ‘공제’, ‘기부’, ‘세액’, ‘기부금’, ‘지자체’, ‘지방소도시’, ‘세제’ 등의 키워드가 자주 쓰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11〉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워드클라우드: 세액공제



- 세액공제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활용된 키워드 간 연계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를 실시하였음
- ‘기부’, ‘지방소득세’, ‘재정여건’, ‘소득수준’, ‘공제’, ‘세금’, ‘소득세’, ‘지역’ 등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자주 등장하고 있음

〈그림 4-12〉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텍스트네트워크: 세액공제



- 세액공제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 내 대표적인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 텍스트네트워크 상에서는 ‘공제’를 중심으로 ‘고향’, ‘기부금’, ‘기부’, ‘기부자’, ‘형평성’, ‘소득세’, ‘지방세’, ‘지자체’, ‘국세’, ‘주민세’, ‘분담비율’ 등의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세액공제

- 분석결과 ‘고향(0.464419)’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제(0.456929)’, ‘세액(0.333333)’, ‘기부(0.333333)’, ‘세금(0.202247)’, ‘혜택(0.183521)’, ‘기부금(0.164794)’, ‘지자체(0.146067)’ 등도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6〉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세액공제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1	고향	0.464419	16	국세	0.089888
2	공제	0.456929	17	지방세	0.086142
3	세액	0.333333	18	주민세	0.082397
4	기부	0.333333	19	대도시주민	0.074906
5	세금	0.202247	20	기부금규모	0.074906
6	혜택	0.183521	21	지방소도시	0.06367
7	기부금	0.164794	22	답례품	0.05618
8	지자체	0.146067	23	답례품제공	0.048689
9	지역	0.127341	24	일본	0.048689
10	소득세	0.127341	25	납부	0.044944
11	세제	0.11236	26	기부자	0.044944
12	전액	0.101124	27	납세자	0.041199
13	소득수준	0.097378	28	개인	0.037453
14	고향사랑기부제도	0.097378	29	정치	0.033708
15	재정여건	0.093633	30	거주	0.033708

〈표 4-57〉 토픽 분석결과: 세액공제

기사에서 언급되는 논의 주제		1st 키워드	2nd 키워드	3rd 키워드	4th 키워드	5th 키워드
논의 주제 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논의	공제	세액	혜택	기부	전액
논의 주제 2	세액공제에 대한 소도시들의 부담	고향	기부	세금	지방소도시	지자체
논의 주제 3	세액공제 시 소득수준 고려 논의	기부금	지역	고향	소득수준	공제

- 토픽 분석결과 어느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신문기사에서 제시되고 있음(논의 주제 1)
 - 세액공제 대상은 기부금 전액으로 하고, 세액공제 비율을 어느 선에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세액공제 비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액공제 비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논의 주제 2)
 - 특히 지방소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앞에서 제시된 다른 주제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음
- 또한 세액공제 비율을 정할 때, 기부금 액수나 기부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논의 주제 3)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 그러나 세액공제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음

4. 일본 고향납세제도 분석결과

-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후루사토납세: ふるさと納税)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음
 -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6개월)의 일본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음¹³⁾

1) 텍스트네트워크의 시각화: 일본 고향납세제도

-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분석에 활용된 키워드의 수는 844개이며, 키워드 간 형성되는 관계는 1,124개로 분석되었음
 - 네트워크 밀도는 0.003이며,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는 1.332개임

〈표 4-58〉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일본 고향납세제도

구분	키워드의 수	키워드 간 관계의 종류	네트워크 밀도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
측정값	844	1,124	0.003	1.332

-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워드클라우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어떠한 키워드가 주로 활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워드클라우드를 실시하였음
 -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답례품’, ‘기부’, ‘지자체’, ‘지방도시’, ‘공제’ ‘제도’, ‘금액’ 등의 키워드가 자주 쓰인 것을 알 수 있음

13)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일본 신문기사의 텍스트를 수집한 것은 아니며, 야후 재팬(<https://www.yahoo.co.jp>)의 뉴스(ニュース)코너(<https://news.yahoo.co.jp>)에서 뉴스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를 검색하여 텍스트를 수집하였음. 다른 주제와 공동으로 기사에 실린 경우는 제외하고, 후루사토납세(ふるさと納税) 단독 주제 기사만 취합하였음.

-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 내 대표적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 텍스트네트워크 상에서는 ‘답례품’을 중심으로 ‘기부’, ‘고향납세’, ‘지자체’, ‘공제’, ‘지방도시’, ‘특산품’, ‘대도시’, ‘주민세’, ‘총무성’, ‘기업’, ‘후루사토사이트’, ‘세수증가’ 등의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

2)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일본 고향납세제도

- 분석결과 ‘답례품(0.149466)’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기부(0.079478)’, ‘고향납세(0.079478)’, ‘지자체(0.078292)’, ‘공제(0.055753)’, ‘지방도시(0.053381)’, ‘시(0.049822)’, ‘제도(0.048636)’ 등도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9〉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일본 고향납세제도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1	답례품	0.149466	16	후루사토사이트	0.027284
2	기부	0.079478	17	기부금	0.027284
3	고향납세	0.079478	18	답례품기준	0.026097
4	지자체	0.078292	19	감액	0.026097
5	공제	0.055753	20	시장	0.022539
6	지방도시	0.053381	21	세수증가	0.021352
7	시	0.049822	22	소득세	0.021352
8	제도	0.048636	23	답례품선택	0.021352
9	특산품	0.045077	24	아마존	0.01898
10	금액	0.042705	25	지정단체신청	0.01898
11	대도시	0.041518	26	수입	0.01898
12	주민세	0.035587	27	세수확보	0.01898
13	현	0.034401	28	도	0.01898
14	총무성	0.033215	29	전국	0.016607
15	기업	0.030842	30	비용	0.016607

- 토픽 분석결과 오사카부의 이즈미시는 기부금 모집액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고향납세제도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지방소도시임(논의 주제 1)
 - 2019년 3월 총무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은 이즈미시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이즈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고향납세를 유치한 이유는 답례품을 지역의 특산품이 아닌 아마존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일본 사람들이 이 도시로 많이 몰렸기 때문임
- 이에 고향납세제도의 도입 취지를 엄격하게 주장하는 총무성과 마찰이 있었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논의 주제 3)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총무성에 신청하여 등록한 지방자치단체만이 세액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함
 - 즉, 총무성에 등록이 안 된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받더라도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음
 - 이에 따라 동경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총무성에 등록을 신청하였음
- 일본의 경우 2008년에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한 이후 10년 넘게 운영해오는 동안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변화를 시도하였음
 - 최근에는 특히 답례품과 관련된 논의 및 논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답례품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으로 답례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고향납세제도의 본래 취지를 해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고향납세제도의 다양화 및 답례품 비율에 대한 상한선 규정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60〉 토픽 분석결과: 일본 고향납세제도

기사에서 언급되는 논의 주제		1st 키워드	2nd 키워드	3rd 키워드	4th 키워드	5th 키워드
논의 주제 1	이즈미시의 기부금 모집 이슈	시	이즈미시	기부금	현	전액
논의 주제 2	고향납세로 인한 대도시의 세수감소 문제	세수확보	납세자	대도시	도	지자체
논의 주제 3	아마존 상품권 지급에 대한 총무성의 통제	지방도시	특산품	총무성	아마존	공제

제3절 분석결과 종합

1. 설문분석 종합

1)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분석결과

-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4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30대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60.5%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관심은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대해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반면, 20대 이하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고 있음
- 앞의 분석결과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20-30대는 자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우 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20-30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제도 도입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지역과 관련하여 특별·광역시보다는 도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대체적으로 자신의 출생지역보다 타 지역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지만, 도 지역 출생자의 경우 자신의 출생지역에 기부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출생지를 '고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대해서는 41.0%가 긍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서는 40.2%가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20대 이하는 50% 이상이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48.5%가 긍정적인 인식을 제시하였으며, 출생지역(수도권, 비수도권)과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많이 기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며, 따라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분석결과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은 정치기탁금과 동일하게 설정된 현재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세액공제의 비율이 확대될 경우 고향사랑기부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67.5%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76.7%가 기부금의 용도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로는 건강·의료·복지, 지역산업 진흥, 환경 등이 많이 제시되었음
- 다음으로 다수의 응답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답례품 제공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에 대해 보다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답례품 유형으로는 지역 농산물(쌀 제외, 가공품 포함),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 지역 축산품(가공품 포함) 등이 많이 제시되었음
 - 한편 답례품의 적정 규모로 기부금의 10% 이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90.4%가 기부금의 30% 이하라고 응답하였음
- 종합하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은 현재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부금의 용도 지정과 답례품 제공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대 이하 응답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GCF형 고향납세제도 도입 이후 고향납세 실적이 증가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답례품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고향사랑기부금의 규모 추정결과

- 이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으며, 만 19-65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중 양분선택형질문법을 사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음
- 사전 조사를 통해 1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의 5가지 지불의사금액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본 조사에서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단일 양분선택형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모형을 추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음
- 분석결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를 제외한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의 중앙값은 1인당 연간 160,091원임
- 이 금액에 전체 표본 중에서 지불거부자를 제외한 지불의사자의 비율인 61.9%(558/901×100)를 곱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 지불의사금액 99,164원이 도출됨
- 분석결과 추정된 평균 지불의사금액에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모집단을 곱하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연간 총 규모를 도출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모집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음
 - 설문조사 대상인 만 19세-65세 국민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모집단으로 파악할 경우 모집단의 인구수는 34,738,329명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총 규모는 34,442억 원임
 -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납세자를 모집단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17,277,038명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총 규모는 17,129억 원임
 -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모집단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6,902,514명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총 규모는 6,844억 원임

2. 텍스트네트워크분석 종합

- 이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신문기사를 통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음
-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주요 내용을 벤치마킹한 것이며, 이 연구는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두 제도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와 일본의 신문기사 발췌범위가 다른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유사한 제도에 대해 두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 및 특징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음

1)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비교

-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개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텍스트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키워드의 수는 일본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텍스트네트워크의 분석기간이 일본(6개월) 보다 우리나라(3년 3개월)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키워드 수의 차이는 보다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신문기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일본은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세액공제, 답례품 과열경쟁, 대도시 세수감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61〉 텍스트네트워크의 속성 비교

구분	키워드의 수	키워드 간 관계의 종류	네트워크 밀도	키워드 간 평균 관계 수
우리나라	805	1,302	0.004	1.617
일본	844	1,124	0.003	1.332

2) 텍스트네트워크의 중심성지수 비교

- 중심성지수가 높은 키워드 중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고향’, ‘기부’, ‘지자체’, ‘제도’, ‘답례품’, ‘세수’, ‘세제’ 등의 키워드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키워드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면서, 동시에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즉,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답례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을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반면 중심성지수가 높은 키워드 중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키워드들도 발견할 수 있음
 - 특히 일본에서 제시되고 있는 ‘후루사토 사이트’, ‘아마존’, ‘대도시’, ‘세수 확보’ 등의 키워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
 - 이러한 키워드들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후루사토 사이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답례품 비율 및 답례품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사이트를 의미함
 - 또한 ‘대도시 세수확보’는 고향납세제도로 인해 대도시의 세수가 감소하였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됨

〈표 4-62〉 텍스트네트워크의 중심성지수 비교

우리나라			일본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중심성 순위	키워드	중심성 지수
1	고향	0.381841	1	답례품	0.149466
2	기부	0.141791	2	기부	0.079478
3	고향사랑기부제도	0.135572	3	고향납세	0.079478
4	지역	0.134328	4	지자체	0.078292
5	제도	0.129353	5	공제	0.055753
6	기부금	0.119403	6	지방도시	0.053381
7	도입	0.093284	7	시	0.049822
8	지자체	0.09204	8	제도	0.048636
9	고향세	0.090796	9	특산품	0.045077
10	공제	0.070896	10	금액	0.042705
11	재정	0.067164	11	대도시	0.041518
12	지방	0.058458	12	주민세	0.035587
13	일본	0.053483	13	현	0.034401
14	답례품	0.04602	14	총무성	0.033215
15	농어촌	0.042289	15	기업	0.030842
16	정부	0.041045	16	후루사토 사이트	0.027284
17	국회	0.039801	17	기부금	0.027284
18	인구	0.03607	18	답례품기준	0.026097
19	납세	0.03607	19	감액	0.026097
20	활성화	0.034826	20	시장	0.022539
21	세법	0.034826	21	세수증가	0.021352
22	세액공제	0.033582	22	소득세	0.021352
23	세제	0.032338	23	답례품선택	0.021352
24	발전	0.032338	24	아마존	0.01898
25	조세	0.031095	25	지정단체신청	0.01898
26	자치	0.031095	26	수입	0.01898
27	사용	0.031095	27	세수확보	0.01898
28	제공	0.029851	28	도	0.01898
29	복지	0.029851	29	전국	0.016607
30	농촌	0.029851	30	비용	0.016607

3) 텍스트네트워크의 토픽 비교

- 우리나라와 일본의 토픽 분석결과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주제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고향납세제도 운영방식에 관한 문제(이즈미시의 아마존 상품권),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총무성의 대응 방식, 대도시 세수 감소 문제 등 고향납세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일본에서 제시된 논의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함에 있어서 일본의 분석결과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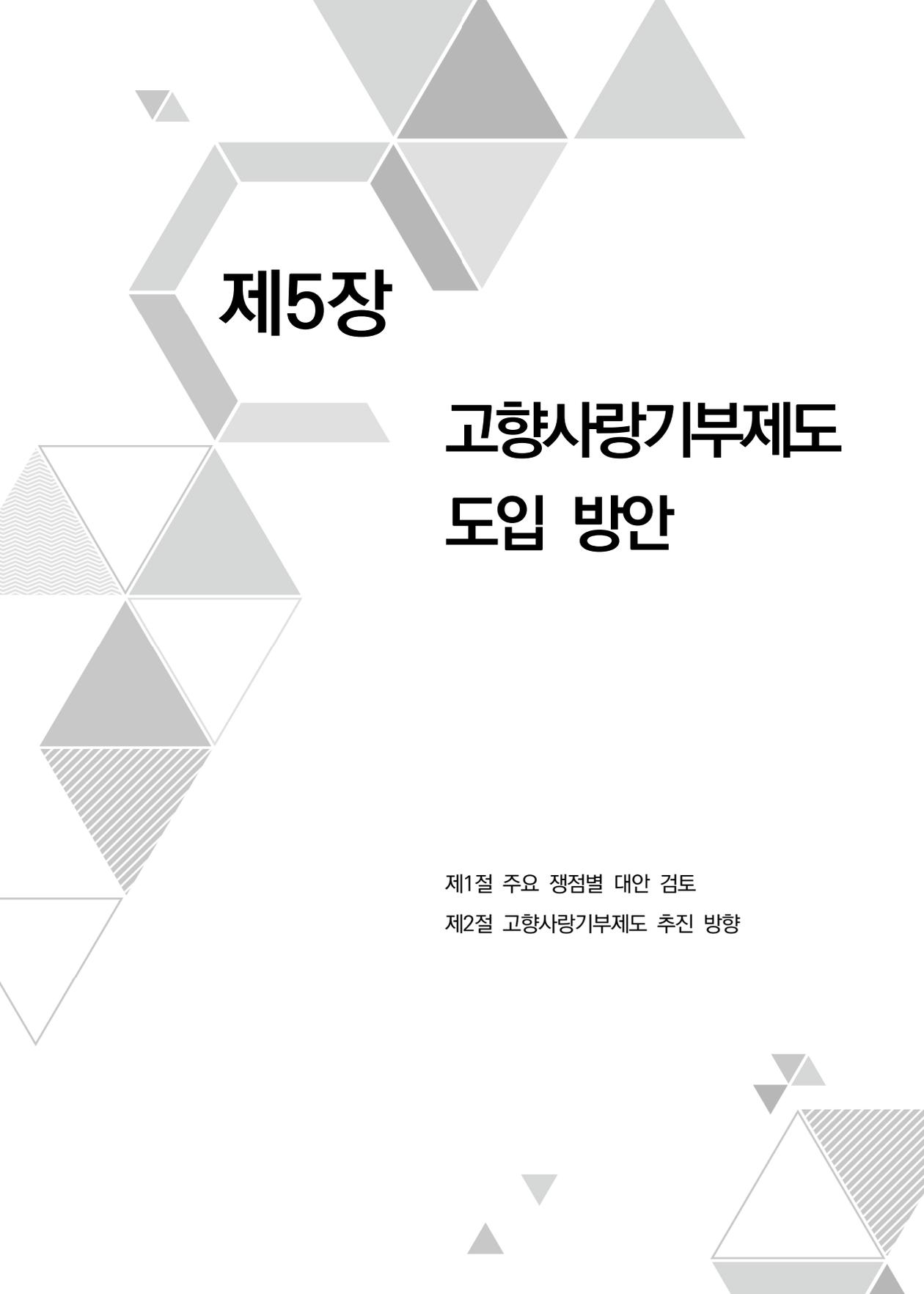
〈표 4-63〉 토픽 분석결과 비교

우리나라			구분	일본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토픽 1	토픽 2	토픽 3
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	제도 도입 시 공제해택 제공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주제	이즈미시의 기부금 모집 이슈	대도시의 세수감소 문제	아마존 상품권 지급에 대한 총무성의 통제
지역	고향	고향	1st 키워드	시	세수확보	지방도시
지자체	기부	국회	2nd 키워드	이즈미시	납세자	특산품
재정	제도	지방	3rd 키워드	기부금	대도시	총무성
고향세	도입	고향사랑 기부제도	4th 키워드	현	도	아마존
기부금	공제	법안	5th 키워드	전액	지자체	공제

4) 시사점

- 고향사랑기부제도 또는 고향세에 대한 논의가 신문기사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언급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가 아닌 더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요구됨
 -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쟁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사례 중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사례를 단편적으로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존재하고 있음
 - 앞으로는 일본 고향납세제도 사례의 장단점 및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부주체의 경우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신문기사 상에서는 기부주체로서의 기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도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사항을 고려할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기업을 기부주체에 포함할지의 여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에도 일본의 기업관 고향납세제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기부대상의 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으며, ‘고향’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부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부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향’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부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게 기부 대상을 설정해야 함
 - 기부대상의 단계적 확대 등과 같은 접근방식도 필요하며, 기부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함
- 답례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기부금 대비 답례품 비율에 대한 허용한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답례품 제공은 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오히려 고향사랑기부제도 자체를 발목 잡을 수 있음
 - 답례품 제공에 의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답례품의 품목, 제공방식, 허용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부자 중 특정 집단이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얻는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개인주민세를 중심으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국세인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액공제를 할 계획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기부금에 대한 다른 세액공제 사례를 참고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제5장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안

제1절 주요 쟁점별 대안 검토

제2절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 방향

제5장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안

제1절 주요 쟁점별 대안 검토¹⁴⁾

1. 정책목표 관련 시나리오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억제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임
 - 고향사랑기부제도에 관한 15개 법률안은 모두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은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에서 제외하였음
 - 지방세인 개인주민세를 통해 지역 간 세원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일본과 달리 국세 중심의 세액공제를 상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가 발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정책목표 관련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시나리오 I: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핵심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방안
- 시나리오 II: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핵심목표로 설정하는 방안
 - 시나리오 II-1: 기부자 요건 강화 방안
 - 시나리오 II-2: 기부 대상지역 조건 강화 방안
 - 시나리오 II-3: 기부자 및 기부 대상지역 조건 동시 강화 방안

14) 이 부분은 염명배(2019)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

1) 시나리오 I: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핵심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방안

- 이 방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핵심 정책목표 중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요시하는 방안임
 - 기부자 및 기부대상 지역의 조건을 완화할 경우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기부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기부금 규모도 최대한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주체와 기부대상을 특정 대상이나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이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예측할 수 없음
- 이 방안은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효과의 달성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도 정부(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이 필연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으로 이전되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음
 - 심지어 기부금이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반면 이 방안은 정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다 자유로운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부주체 또는 기부대상을 제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성이 없음
 - 따라서 이 방안은 제도의 설계, 정책수행, 모니터링 및 정책수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2) 시나리오 II: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핵심목표로 설정하는 방안

-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설계가 필요함
 - 자발적으로 기부되는 기부금의 흐름을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정력이 양호한 지역에서 열악한 지역으로 기부금이 흘러가도록 사전적(ex ante)으로 기부금의 전달경로(channel)를 명확하고 세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부주체와 기부대상 조건 등을 구체화하고, 기부조건의 자율성을 일정 수준 제한할 필요가 있음

가. 시나리오 II-1: 기부자 조건 강화 방안

- 이 방안은 기부대상지역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기부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임
-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을 보면 기부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음
 - 홍의락 의원(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자 요건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음
 - 박덕흠·주승용·이명수 의원(안)은 수도권과 대도시 거주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음
 - 안호영·김광립 의원(안)은 출향민(타 지역 출생자, 본적) 또는 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 다음으로 김두관 의원(안)은 재정자립도 30% 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신으로 기부자를 제한하였음
 - 이와 같이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자 요건에 대한 제한을 통해 기부금이 대도시(수도권)에서 농어촌(비수도권)으로 흘러가도록 설계할 수 있음

나. 시나리오 II-2: 기부대상지역 조건 강화 방안

- 이 방안은 기부자 요건에 대한 제약은 두지 않으면서 기부대상지역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염명배, 2010)
- 첫째, 고향사랑기부금의 대상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이며,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다음과 같이 대상지역을 제한하고 있음
 - 홍의락 의원(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대상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박덕흠·주승용 의원(안)은 농어촌(시·군), 김광림 의원(안)은 기초지방단체(시·군·구)로 대상지역을 제한하고 있음
 - 전재수 의원(안)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20% 이하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음
 - 김두관 의원(안)은 재정자립도 30% 이하의 출생지역으로 대상지역을 제한하고 있음
- 둘째, 대상지역과 기부액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지역별 응원지수(index)'를 산출하여¹⁵⁾ 지역에 따라 차별화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즉,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응원지수 비중을 높여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재정력이 양호한 지역보다는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보다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5) 지역별 응원지수는 예를 들어 지역별 인구밀도, 1인당 GRDP, 1인당 지방세(또는 지방소득세), 고령화율, 생산가능인구 비율, 고용률, 산업특성(산업특화도(LQ지수), 특산물 유무, 향토산업의 유무, 향토산업 육성인지 유무 등 다양한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할 수 있을 것임(신두섭·염명배, 2016).

다. 시나리오 II-3: 기부자 및 기부대상지역 조건 강화 방안

- 이 방안은 시나리오 II-1과 시나리오 II-2의 제약조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 기부자와 기부대상지역에 대한 제약조건을 동시에 강화할 경우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효과는 더욱 뚜렷해질 것임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기부되는 기부금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경우 정책목표는 정교해질 수 있음
 - 그러나 기부자와 기부대상지역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고행사랑기부제도에 참여하는 기부자와 대상지역의 수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고행사랑기부제도에 참여하는 기부자와 대상지역이 감소하게 될 경우, 기부금 규모가 감소하게 되고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됨
- 또한 기부자 요건이나 기부대상지역 조건을 구체화할수록 정책초점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제약조건을 설정 및 적용하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많은 정책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 기부자의 출생지,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지역 간 이동 상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거나 대상지역의 연도별 재정력 측정 및 공표, 업데이트 등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데이터 구축 및 유지, 집행·홍보비용)등이 발생하게 됨¹⁶⁾
 -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대한 상세 정보를 습득·이용·공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16) 기부자의 출생지, 타 거주지, 장차 거주 예정지 등에 대한 전입·전출 지역별 matrix, 각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몇 살 때까지 고행에서 살았는지, 부모·형제·친척 등이 고행에 살고 있는지, 연령 및 은퇴시기, 소득수준, 가족관계, 자녀의 출생지, 현 거주지에 지방소득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의 소득이 얼마나 계속될지 등에 관한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인구통계자료(demographic data)와 함께 본인 및 자녀들의 고행관 및 기부의향, 기부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임(신두섭·염명배, 2016).

3) 정책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 시나리오 I은 최소한의 제약(거주지 이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하에 고향사랑기부금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정부가 의도하는 각종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시나리오 I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 및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 II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자 및 대상지역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기부유인에 제약을 가해 자유로운 기부의사를 위축시키고 규제 관련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기부자와 대상지역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자 및 대상지역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반면,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효과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시나리오 I: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핵심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방안

○ 시나리오 II: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핵심목표로 설정하는 방안

→ 시나리오 I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2. 세액공제를 조정 관련 시나리오

- 시나리오 I: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안(정치자금 기부금 기준)
- 시나리오 II: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
 - 시나리오 II-1: 국세(소득세) 공제율 10%p 인상(안)
 - 시나리오 II-2: 지방세(지방소득세) 공제율 추가 10%p 인상(안)

1) 시나리오 I: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안(정치자금기부금 기준)

- 시나리오 I은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임
 -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고 1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16.5%(국세 15%, 지방세 1.5%), 2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3.0%(국세 30%, 지방세 3%) 공제하는 방안임
 - 기부금액에 따른 각 주체별 세액공제 부담액과 분담률은 다음과 같음

〈표 5-1〉 시나리오 I에 따른 기부금 규모별 부담액

구분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시 나 리 오 I	국가 (국세)	9만9백원 (90.91%)	22만5천9백원 (22.59%)	157만5천9백원 (15.76%)	607만5천9백원 (20.25%)
	지자체 (지방세)	9천1백원 (9.09%)	2만2천6백원 (2.26%)	15만7천6백원 (1.57%)	60만7천6백원 (2.03%)
	개인 (기부자)	0원 (0%)	75만1천5백원 (75.15%)	826만6천5백원 (82.67%)	2,331만6천5백원 (77.72%)

자료 : 염명배(2017)

- 10만원 이상 기부하는 개인(기부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자발적 기부 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중 전재수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이 시나리오 I에 해당함

2) 시나리오 II: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

- 시나리오 II는 개인(기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부 유인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안)에 비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임
 -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거나(소득세 세액공제율 인상), (대도시)지자체가 더 많이 부담하는(지방소득세 세액공제율 인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 국세 공제율을 10%p 인상하는 방안과 지방세 공제율을 10%p 인상하는 방안의 정책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가. 시나리오 II-1: 국세(소득세) 공제율 10%p 인상(안)

- 시나리오 II-1은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 공제율을 추가로 10%p 인상하는 방안임
 - 1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27.5%(국세 25%, 지방세 2.5%), 2,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44.0%(국세 40%, 지방세 4.0%) 공제하는 방안임
 -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소득세 공제액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국세 공제율이 증가하면 지방세 공제율도 함께 증가하게 됨

나. 시나리오 II-2: 지방세(지방소득세) 공제율 추가 10%p 인상(안)

- 시나리오 II-2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임
 -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경우 국세(소득세)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 규정(15%, 30%)을 따르는 반면에, 지방세(지방소득세) 공제율은 소득세의 10%에서 20%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세로부터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임

- 시나리오 II-1과 시나리오 II-2에 따른 기부금액별 각 주체의 세액공제 부담액과 분담률은 다음과 같음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액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됨(염명배, 2017)
 - 시나리오 II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국세나 지방세에서 더 많은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¹⁷⁾

〈표 5-2〉 시나리오 II에 따른 기부금 규모별 부담액

구분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시 나 리 오 II	정 책 대 안 ①	국가 (국세)	9만9백원 (90.91%)	31만5천9백원 (31.59%)	256만5천9백원 (25.66%)	906만5천9백원 (30.22%)
		지자체 (지방세)	9천1백원 (9.09%)	3만1천6백원 (3.16%)	25만6천6백원 (2.57%)	90만6천6백원 (3.02%)
		개인 (기부자)	0원 (0%)	65만2천5백원 (65.25%)	717만7천5백원 (71.77%)	2,002만7천5백원 (66.76%)
	정 책 대 안 ②	국가 (국세)	8만3천3백원 (83.33%)	21만8천3백원 (21.83%)	156만8천3백원 (15.68%)	606만8천3백원 (20.23%)
		지자체 (지방세)	1만6천7백원 (16.67%)	4만3천7백원 (4.37%)	31만3천7백원 (3.14%)	121만3천7백원 (4.04%)
		개인 (기부자)	0원 (0%)	73만8천원 (73.80%)	811만8천원 (81.18%)	2,271만8천원 (75.73%)

자료 : 염명배(2017)

-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 모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는 개인(기부자)의 부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17) 실제로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에 대해서 여타 기부금제도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공제혜택을 주고 있음(원종학, 2017). 일본은 2008년 4월 30일 공포된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1호)에 의해 종전의 지방세법에 기부금 세액공제(제37조의 2)를 추가하여 개인주민세 제도를 대폭 확충하는 형태로 도입되었음(한국조세연구원, 2010).

- 그러나 시나리오 II-1은 시나리오 I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자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나리오 II-2는 시나리오 I에 비해 지자체의 부담률은 증가하는 반면에 국가의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함으로써 기부자의 실제 부담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김두관 의원(안)의 경우¹⁸⁾ 세액공제 비율은 다르지만 정책방향은 시나리오 II-1과 유사함

3) 정책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 시나리오 I은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II는 기부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임
 - 그런데 시나리오 II와 같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할 경우 타 기부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만 특별한 세제혜택을 줄 경우 기부금 전체의 총액이 증가하지는 않으면서 기존의 기부금을 줄이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옮겨가는 기부금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음(염명배, 2017)
- 이러한 측면에서 시나리오 I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며, 시나리오 II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 II와 같이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세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함
 -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기획재정부)의 부정적 견해와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¹⁹⁾

18) 기부금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은 18.15%, 2천만원 초과분은 36.3% 공제함.

19)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반대의견에 대한 논의는 염명배(2010)을 참조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시나리오 II의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일각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대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해서 기부금 일부를 답례품 형태로 돌려준다면 기부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됨
- 그러나 과연 기부자가 현금을 기부하는 대신에 물품을 받는 것을 세액공제보다 더 선호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염명배, 2017)
- 설문분석 결과에서도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액공제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의 51.8%(519명)가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일본의 경우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하고 거의 전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설문분석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3.7%(338명)가 세액공제가 확대될 경우 기부금을 늘릴 생각이 있다고 제시하였음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안정화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나리오 I: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안(정치자금 기부금 기준)

○ 시나리오 II: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

→ 초기에는 시나리오 I이 적절, 중장기적으로 시나리오 II에 대한 검토 필요

3. 답례품 제공 관련 시나리오

- 시나리오 I: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안
- 시나리오 II: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
 - 시나리오 II-1: 당분간 답례품 제공 불허
 - 시나리오 II-2: 답례품 규모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한
 - 시나리오 II-3: 답례품 제공은 완전 허용하되 별도계정으로 운영
 - 시나리오 II-4: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대상 명시

1) 시나리오 I: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안

- 시나리오 I은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상한을 두며, 답례품 대상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는 방안임
 - 현 정부(안)에서는 해당 지자체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지역 상품권,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로 답례품 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그리고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타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등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다만 답례품 제공 한도와 관련하여 현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운영일 의원(안)은 기부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김광림 의원(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10만원 이내 기부금에 대해서는 1만원 이하, 30만원 이내는 1만5천원 이하, 50만원 이내는 2만원, 50만원 이상은 3만원 정도’로 기부금 규모에 따라 답례품 제공 상한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나리오 I은 지역별 자체 생산물 혹은 특산품 생산 능력의 유무 및 격차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경우 일본 사례와 같이 인기 있는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자체로 기부금이 편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지자체 간 재정 격차(세수편차) 해도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2) 시나리오 II: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

- 시나리오 II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현 정부(안)을 수정하고 있으며, 답례품에 대한 규제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됨
 - 첫째, 답례품 제도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함
 - 둘째, 답례품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해야 함
 - 셋째, 답례품 생산 및 제공에 관련된 비용이 기부대상지역 역외로 유출되어서는 안 됨

가. 시나리오 II-1: 당분간 답례품 제공 불허

- 시나리오 II-1은 당분간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답례품 제도와 연계시키지 않고 고향(농어촌) 사랑을 위한 순수 기부를 장려하는 방안임
 - 답례품 제도에 관한 가장 강력한 규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답례품 제도를 불허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음
 - 모든 지자체가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특산품을 자체시설과 자체 원료, 자체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타 지역보다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매력적인 특산물을 생산·제공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임
- 이러한 방안은 지역균형발전,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한 후에 비로소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임(신두섭·염명배, 2016)

나. 시나리오 II-2: 답례품 규모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한

- 시나리오 II-1에 의해 모든 지자체가 자체 능력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시나리오 II-2는 답례품 제공을 일단 허용하되 지역별 생산능력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답례품 상한액을 매우 낮게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임
 - 김광림 의원(안)과 같이 1~3만원 이내의 저가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의 지역상품 쇼핑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음(염명배, 2017)

다. 시나리오 II-3: 답례품 제공은 완전 허용하되 별도계정으로 운영

- 시나리오 II-3은 답례품 제공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완전 허용하는 대신 기부금과 답례품 제공 비용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 답례품 제도 자체만 보면 가장 규제강도가 약한 방안임
 - 답례품 제공 비용을 기부금과 동일한 계정 속에 넣을 경우 기부 받는 지자체가 기부금 수입의 범위 안에서는 마음대로 답례품을 제공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에 무조건 답례품 경쟁에 뛰어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그리고 답례품을 이용한 지역 간 고향사랑기부금 유치경쟁이 과열될 경우에 기부자가 의도했던 원래 목적에 투입되는 투자금액이 답례품 제공 비용만큼 감소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에 기부금이 전액 투자되지 못하고 기부 원금을 잠식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본래 의도가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²⁰⁾

- 시나리오 II-3의 논리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가 원하는 목적사업에 ‘전액’ 투자하는 것이 옳으며, 이에 소요되는 답례품 비용은 별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부담함으로써 답례품 제공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염명배, 2017)

라. 시나리오 II-4: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대상 명시

- 시나리오 II-4는 답례품 제도의 목적이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업 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임
 -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라면 굳이 답례품 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업 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향토산업 육성’ 등을 별도 명시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업에 직접 기부하게 만드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임(염명배, 2017)
 - 현 정부(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제9조)을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경제 외적 요인으로 국한하고 있음
 - 이러한 조항에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20) 예를 들어 어린이 보육에 쓰라고 어느 지자체에 10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목적기탁한 사람에게 70만원어치의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할 때 실제 어린이 보육에 투자되는 금액은 30만원에 불과할 것이므로 답례품 경쟁이 격화될수록 그만큼 목적사업에 투자되는 순기부액을 잠식하게 됨으로써 당초 기부 취지를 상당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렇게 되면 기부 수입액은 클지 모르지만 실속이 없는 소위 걸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 또는 ‘외화내빈’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임(염명배, 2017).

3) 정책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 답례품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먼저 실시한 일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얻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일본에서는 답례품 과열양상으로 인해 답례품 한도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
 - 답례품 규모를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역특산품이 아닌 답례품은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답례품 제공 여부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답례품 제공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시나리오 I보다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포함한 시나리오 II를 채택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답례품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한다면 시나리오 II-1이나 시나리오 II-4도 정책 출발점으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답례품 제도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답례품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시나리오 II-2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의 50.6%가 기부금 금액 10% 이하, 90.4%가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일본의 GCF형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시나리오 II-4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시나리오 I: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방안

○ 시나리오 II: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

→ 초기에는 시나리오 II-2가 적절, 중장기적으로 시나리오 II-4에 대한 검토 필요

제2절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 방향²¹⁾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선례를 미루어볼 때 순기능 못지 않은 각종 쟁점사안에 대한 역기능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일본과는 다른 우리만의 특수 여건으로 인한 부작용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됨
- 따라서 우리나라에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구체적 사례와 공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장점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 반면 단점은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는 것임
 - 동시에 일본과는 다른 우리만의 특수 여건도 감안하여 독창적이고도 이상적인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염명배, 2017; 2018).
- 우리나라에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얼마간의 지역 간 재원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임
 - 이는 애향심이나 농어촌 사랑, 세액공제 또는 답례품 등이 유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나 흘러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움
 - 만일 사후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대도시에서 농어촌 지자체로 흘러들어간다면 이 제도는 소기의 정책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바로 이를 가정하고 (재원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장들이나 정치권, 언론계가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온 것도 사실임²²⁾

21) 염명배(2019)를 바탕으로 구성함.

22) 이에 대한 논의는 신두섭·염명배(2016)를 참조할 수 있음.

- 그렇지만 정책의 성공여부는 재원이 막연히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흘러갈 것인지 여부를 묻는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도시에서 어떤 농어촌으로 얼마나 배분될 것인가 하는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염명배, 2017)
-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쟁점사안의 발생 원인과 장기적으로 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추론을 전개하고자 함

1. 쟁점사안 관련 상충문제 규명

-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한 쟁점사안들은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내재된 ‘상충관계(trade-offs)’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상충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함
-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충문제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를 둘러싸고 개인(기부자)과 정책당국(국가) 간에 발생하는 상충문제임
 - 개인은 자신의 주관적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러한 자발적 기부가 반드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 때로는 양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것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원초적 맹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그 이유는 기부금의 흐름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채널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염명배, 2018)

- 둘째, 자원분담을 둘러싸고 국가-지자체-개인(기부자) 간에 발생하는 상충 문제임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동일한 자원(기부금)을 놓고 국가(중앙정부), 개인(기부자), 기부금유입 지자체(농어촌), 기부금유출 지자체(대도시·수도권) 간에 벌어지는 ‘4자간 제로섬 게임(4-party zero-sum game)’의 성격을 나타냄
 - 일단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부담을 국가-지자체-개인(기부자)이 어떻게 나누어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정책당국(국가)의 정책목표 간에 발생하는 상충문제임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목표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고용 증대’, ‘저출산·고령화 방지 및 지방소멸 억제’ 등 매우 다양함
 - 이들 정책목표가 반드시 동시에 다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목표달성이 다른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간의 상충문제도 발생함
 - 예를 들어 ‘지자체 간 재정력격차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답례품 제도가 효과적인가?, 기부자와 기부처(기부대상 지역)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한편 이러한 방안들이 기부규모를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등의 정책 간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정책수행 방향 및 방법 제언

1) 정책수행 방향

-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둘러싼 상충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쟁점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도입 방안 및 절차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4자(중앙정부-기부금 유입 지자체-기부금 유출 지자체-기부자)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충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를 둘러싼 쟁점사안 및 정책 갈등관계를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렵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음
- 따라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선불리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소 성급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정교하게 개선해나가면서 제도의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책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의 수요·공급 및 흐름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고향 및 농어촌에 대한 개인의 기부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유인 및 제약 조건에 대해 기부의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임
 - 더불어 농어촌 지자체는 얼마나 매력적인 지역특산물로 답례품을 생산 및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이러한 기부자와 지자체의 행동이 정책목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즉, 기부금이 재정력이 큰 지자체(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열악한 지자체(농어촌)로 얼마나 유입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임
-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전적으로 개인(기부자)의 주관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부자의 반응과 행동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개인(기부자)의 반응이나 정책효과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한편 우리나라 제도도입(혹은 법제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은 제도를 일시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일괄타결’ 접근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완벽한 제도가 아닐 경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차후에 부작용을 더욱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제도가 일단 시행되면 이미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을 수정·조정·보완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측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어려움도 따름
- 제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앞 다퉈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입법안과 이 제도를 지지하는 지자체 및 언론의 주장을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현재 지방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일시 해결을 기대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세수 부족, 세수 불균등, 지역산업 침체, 고용 및 생산성 감소,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을 이 제도 하나로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임
 -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제도가 결코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염명배, 2018)
 - 이는 제도 안에 내재된 여러 상충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까닭임
- 또한 기부금의 규모가 소기의 정책효과를 성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 실제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최근 고향납세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대비 고향납세 비중은 여전히 1% 미만(0.73%)에 불과해서 몇몇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향납세 수입으로써 지방재정의 전체 여건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함(염명배, 2017)
 -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일본에 비해 세액공제 유인 등이 적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 사례의 하나는 기부조건을 완화할수록 기부규모가 확대되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정책효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기부조건을 제한할수록 구체적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은 커질지 모르지만, 자유로운 기부 의사를 위축시킴으로써 기부금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는 등 정책 간 상충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임
- 이상의 논의로부터 적지 않은 쟁점사안이 예상되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효과를 점검하여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동태적’ 도입 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염명배, 2018)
 - 문제의 일시적 해결보다 작은데(minimalism)서부터 시작하여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piecemeal) 개선하며 차후 확대·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즉, 마치 미시경제학에 있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균형조건을 찾아가는 ‘암중모색과정(tâtonnement process)’과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통하여 단계적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수법이 요청되는 바임
- 이러한 점에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일부 소규모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파일럿테스트(pilot test)’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염명배, 2017; 2018)
 - 예를 들면 지방세수 하위권, 출향민 상위권, 인구감소율 상위권, 고령화율 상위권, 인기 향토특산물 상위권 및 하위권 지역 등 몇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기부금의 흐름이 과연 정책목적에 제대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 이후 시범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해가면서 단계적(step-by-step)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임
-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기부자)의 기부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기부금 공급(유출)에 대한 정보와 기부금 수요(유입)에 대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시작단계는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반응하는가를 체크하는 것임
 - 세제혜택이나 답례품 제공과 같은 유인이 없더라도 ‘고향사랑, 농어촌 지원’을 위해 얼마나 기부(후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세제혜택이나 답례품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기부된 기부금이 얼마나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는지도 추적해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 기부자 측면(기부금 유출)에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세액공제에 대한 정책으로, 일단 시작은 정부(안)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수준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도의 정책목적 달성 여부 및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 점진적·장기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언하고자 함
 - 둘째는 답례품 제도에 대한 정책으로,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긴 하되 과당 경쟁 방지와 지역별 지역특산물 생산능력 격차를 감안하여 답례품 상한액을 기부금의 10% 이내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다음으로 기부처 측면(기부금 유입)에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정부(안)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면 전국 어느 곳이나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정책효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기부처(기부대상 지역)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대표되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기부처는 재정력, 인구감소율, 답례품 제공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몇 개 대표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기부금 유입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정책효과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시작은 ‘고향 또는 농어촌 지역을 돕기 위해 내 스스로 기부한다’는 애향심과 도-농간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여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의지를 일깨우는 수준에서 출발하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역할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를 걸고 도입 초반부터 단 시일에 성과를 내려는 욕심에서 성급하게 무리한 유인책을 쓸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이 제도 하나로써 모든 지방의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자발적 기부 의식과 국민정서를 고취하는데 가장 큰 정책 목적을 두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고향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일본의 ‘고향납세연구회(ふるさと納税研究会)’와 같은 학술·정책연구조직체로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연구회’(가칭)를 출범시켜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체계적·구체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것임
- 또한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업데이트 하며,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조정하는 등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염명배, 2018)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중호·염명배. (2018).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3(2): 73-109.
- 김동영. 2017.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동영·양성빈·김형오·이중섭. (2016).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ISSUE BRIEFING」, Vol.149, 전북연구원.
- 김상배. (2011).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51(3): 51~77.
- 김용학. (2011).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철. (2017). 일본의 미야코노조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향세 도입의 성과와 과제. 『지역경제보고서』, 86-89. 한국은행.
- 남항우. (2017).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191-225.
- 류영아. (2017).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1382: 1-4. 국회입법조사처.
- 류영아·이상범. (2018).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방안: 입법현황을 중심으로. 「2018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8: 1-24.
- 박근조. (2008). 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지방재정과 지방세」. 2008(2): 158-168.
- 박상현. (2017). 진화하는 일본의 고향세 운영과 시사점.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상현·이원학. (2016).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 「정책메모」, 528: 1-11.
- 박지영·김태호·박한우. (2013).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셀러브리티의 SNS 메시지 탐구. 「방송통신연구」, 82: 36-74.
- 박한우·Leydesdorff.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8.
- 신두섭·염명배. (2016).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18(4): 145-194.
- 신두섭·하혜수. (2017).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연구: 기부동기 및 지불 의사액 추정. 「지방정부연구」, 21(1): 437-469.
- 신승근·조경희. (2017).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17(1): 265-289.
- 심재승. (2017).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후루사토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 111-124.
- 염명배. (2010). 일본 ‘후루사토(故郷)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71-111.
- _____. (2017). 우리나라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3): 27-77.
- _____. (2018).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지방재정」, 6(42): 30-51.
- _____. (2019).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통상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원종학. (2010).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조세·재정 BRIEF」, 1-12. 한국조세연구원.
- 원종학. (2017).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재정포럼」, 6: 6-23.

- 유선종. (2017). 일본 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토론회 발표 논문집」 1-18.
- 육동한·박상헌·염명배·전지성. (2017).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강원연구원.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 브리프」. 2018. 07. 한국고용정보원.
- 이희석. 2017. 북해도 유바리시의 재생전략과 고향납세 제도 「2017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9-83.
- 이병산. (2018).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9(1): 79-113.
- 임정빈·김성찬·홍근석. (2017).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7(4): 69-101.
- 장하용. (2001). 언론보도와 비평의 구조: 신문보도의 비평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16: 108-133.
- 전북연구원. (2016). 고향기부제 도입 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 주만수. (2017).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지방행정연구」, 31(3): 245-272.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고향납세제도의 쟁점에 관한 연구」.
- 행정안전부. (2018).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계획(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stat.mcst.go.kr/mcst/resource/static/index/index03.html>)
- 총무성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 자료(2018.7.6.) 번역 및 가필

總務省 홈페이지 고향(후루사토)납세 (<http://www.furusato-tax.jp>)

總務省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2017年度実績)’

總務省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平成29年度実績)’

總務省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平成29年度実績)’

總務省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平成30年度課税に
おける住民稅控除額の実績等)’

總務省自治稅務局市町村稅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平成30年度課税に
おける住民稅控除額の実績等)’

Olivier Serrat. (2009). Social Network Analysis. Knowledge Solutions. ©
Asian Development Bank.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Vol. 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igang Wang & Roy Rada. (2009). Structured Hypertext with Domain
Semantics. 『ACM Transactions on Information Systems』. 16(4):
372-412.

ふるさとチョイス (<https://www.furusato-tax.jp/gcf/?header>)

ふるまる (<https://www.furumaru.jp/gcf/>)

총무성 ‘ふるさと納税を活用した地域における起業支援及び地域への移住・定住の推進
について’

總務省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 ([http://www.soumu.g
o.jp/menu_news/s-news/01gyosei08_02000136.html](http://www.soumu.g
o.jp/menu_news/s-news/01gyosei08_02000136.html))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
_zeisei/czaisei/ czaisei_seido/furusato/support/](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
_zeisei/czaisei/ czaisei_seido/furusato/support/))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포털사이트 ([http://www.soumu.go.jp/kankeijinkou/disc
ription.html](http://www.soumu.go.jp/kankeijinkou/disc
ription.html))

さとふる ‘ふふさと納税と地域経営：制度の現状と地方自治体の活用事例’ (<https://w>

- www.satofull.jp/static/company/books/161201/
 さとふる (<https://www.satofull.jp/town-abira-hokkaido/>)
 さとふる 아비라정 (<https://www.satofull.jp/town-abira-hokkaido/>)
 達人Navi平戸 (https://www.hirado-net.com/?page_id=8469)
 나가사키현 e-books (https://www.nagasaki-ebooks.jp/?p=5116&post_type=bookinfo)
 세타가야구 고향납세 안내 팸플렛 (http://www.city.setagaya.lg.jp/kurashi/107/158/764/771/d00162650_d/fil/hurusato.pdf)
 ふるさとチョイス (<https://www.furusato-tax.jp/city/info/13112>)
 READYFOR (<https://readyfor.jp/projects/yamagataimoni>)
 ふるさとチョイス (<https://www.furusato-tax.jp/city/info/06201>)
 홈페이지 (<http://www.town.embetsu.hokkaido.jp/>)
 ふるさとチョイス (<https://www.furusato-tax.jp/city/info/01486>)
 ふるさとぶらす (<https://furusatoplus.com/local/016331/>)
 정 홈페이지 (<https://www.kamishihoro.jp/sp/ftax/00000265>)
 시 홈페이지 (<https://www.city.tamano.lg.jp/docs/2017051000024>)

부록 1 설문지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본조사)

ID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역주민이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천만 원까지는 16.5%, 2천만 원 초과는 33.0%를 세액공제하며, 세액공제 부담은 정치기부금과 동일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9:1의 비율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 및 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며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이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이고 솔직한 설문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 작성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문의사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홍근석(hong0582@krila.re.kr, 010-6764-0582)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들어본 적 없다.
- ②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
- ③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 ④ 들어본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
- ⑤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역주민이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천만 원까지는 16.5%, 2천만 원 초과는 33.0%를 세액공제하며, 세액공제 부담은 정치기부금과 동일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9:1의 비율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분	기부액(예시)	세액공제(예시)
10만 원 이하	10만 원	(10만 원×100%)=10만 원
10만원 초과-2천만 원 이하	100만 원	(10만 원×100%)+(90만 원×16.5%)=24만 8,500원
2천만 원 초과	2,100만 원	(10만 원×100%)+(1,990만 원×16.5%)+(100만 원×33.0%)=371만 3,500원

2.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 문2-2
- ② 대체로 반대 -> 문2-2
- ③ 보통 -> 문3
- ④ 대체로 찬성 -> 문2-1
- ⑤ 매우 찬성 -> 문2-1

2-1.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이나 부모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
- ④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⑤ 기타()

2-2.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효과 미흡
-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효과 미흡
- ④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한 지역 간 과열경쟁 및 갈등 심화
- ⑤ 기타()

3. 만일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제시금액]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3-1로
- ② 아니오 ☞ 문3-2로

3-1. 그렇다면 연간 [제시금액 2배]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3-4로
- ② 아니오 ☞ 문3-4로

3-2. 그렇다면 연간 [제시금액 1/2배]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3-4로
- ② 아니오 ☞ 문3-3으로

3-3. 그렇다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까?

- ① 예 ☞ 문4로
- ② 아니오 ☞ 문3-4으로

3-4. 그렇다면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간 ()원

3-5.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느 지역에 낼 생각이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기부금 수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통해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계획 유지(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2천만 원까지 16.5%, 2천만 원 초과 33.0%)
 ② 계획 보다 축소
 ③ 계획 보다 확대

7.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기부금을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대체로 없음 ③ 보통
 ④ 대체로 있음 ⑤ 매우 있음

8.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대체로 반대 ③ 보통
 ④ 대체로 찬성 ⑤ 매우 찬성

9.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가 지정된다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 ① 건강·의료·복지
- ② 교육·인재육성
- ③ 환경
- ④ 아동·육아
- ⑤ 지역산업 진흥
- ⑥ 스포츠·문화진흥
- ⑦ 마을만들기·시민활동
- ⑧ 관광·교류·정주촉진
- ⑨ 안심·안전·방재
- ⑩ 재해지원
- ⑪ 기타(_____)

10. 고향사랑 기부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① 예 ☞ 문11로
- ② 아니오 ☞ 문10-1로

10-1. 만약 답례품 제공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 ② 굳이 답례품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 ③ 기부금의 일부 유출을 반대하기 때문에
- ④ 기타(_____)

11. 만약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다면 어떠한 답례품을 원하십니까?

- ① 지역 농산물 (쌀 제외, 가공품 포함)
- ② 지역 쌀 (가공품 포함)
- ③ 지역 축산품 (가공품 포함)
- ④ 지역 수산물 (가공품 포함)
- ⑤ 지역 전통공예품 등
- ⑥ 감사장
- ⑦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
- ⑧ 지역 개최 이벤트 초대
- ⑨ 재난 피해지역 특산품
- ⑩ 기타(_____)

부록 2 텍스트네트워크분석 신문기사 목록

일자	언론사	제목
20160112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 고향납세제 첫 세미나 개최
20160222	강원일보	[언중언] '고향세'
20160309	국민일보	전북도의회, '고향 기부금제' 도입 목소리
20160310	강원일보	[한눈에 보는 경선] 새누리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박세환(59 새누리)
20160315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총선공약 과제 277건 발굴
20160317	전북일보	전북도의회 '고향기부제' 건의안 채택
20160318	서울신문	전북도의회 '고향기부제' 정부 건의
20160318	전북일보	고향 기부금제 도입 주저할 이유 없다
20160406	전북도민일보	고향기부제 도입되면 374억 유입 기대
20160407	전북일보	"고향기부제, 국제 지방이전 효과 커"
20160408	국민일보	'고향기부제' 도입 땀 국제 4000억 지방 이전 효과
20160410	충북일보	고향기부제 도입을 생각하며
20160411	전북도민일보	고향세
20160415	전북일보	[일본 지방활성화 사례] 노인들 한몫 두몫 나뉘듯 팔아 년 26억 수익
20160417	중도일보	갈수록 쪼들리는 지방재정 일본 고향세 탄산지식 삼야야
20160418	중도일보	오늘의 중도일보 뉴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월18일 월요일)
20160418	중도일보	[사설] 고향세 도입, 우리도 공론화하자
20160426	중도일보	"국립철도박물관 반드시 유치해야"
20160502	충청투데이	보은 육천 영동 과산 박덕흠 의원 "낮은 자세로 동남4군 변화 발전 반드시 이뤄낼 것"
20160523	전북도민일보	'고향 기부제' 실증 사례 주목
20160523	중부매일	고향 살리기 정책 삼국지와 충청북도
20160524	전북일보	"고향기부제, 지방세수 늘릴 현실적 대안 도입해야 할 때"
20160530	충북일보	"당신의 기부가 지역을 살립니다"
20160604	영남일보	'고향세' '국유재산특례법' 대구경북의원 1호법안 경쟁
20160607	한국일보	고향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에 선물까지
20160607	강원도민일보	고향세 도입 부족한 세수 총당 추진
20160608	한겨레	"고향세 도입합시다"
20160608	강원도민일보	도 "소득세법 개정 '고향세' 도입"
20160608	강원도민일보	고향세(稅)
20160610	문화일보	기부하면 세금 공제 '고향稅' 도입되나
20160618	강원일보	[강원포럼] 지방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20160627	내일신문	전북도 "국회, 고향세 도입 나서달라"
20160629	전북도민일보	애항심 살려 전북 발전 이끌자
20160630	무등일보	"고향세 입법화, 농수산물 소관 추진"

일자	언론사	제목
20160705	광주매일신문	지방 살리는 '고향기부제' 도입해야
20160705	충도일보	대정부 질문 이틀째 고성 싯대질 파행
20160705	충북일보	박덕흠 대정부 질문 "황교안 총리 농촌지역 방문해야"
20160706	광주매일신문	'고향기부제'로 농어촌 지자체에 숨통을
20160713	광주매일신문	지방재정 확충 '고향세법' 통과 주목
20160714	무등일보	황주홍, 20대 국회1호 '고향세법' 대표 발의
20160714	경남신문	그때와 지금의 고향세 논의
20160718	광주매일신문	고향에 바치는 선물
20160718	강원도민일보	세수확충 신 세원 발굴 주력
20160719	전북일보	삶을 바꾸는 정치,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묻다 ⑩ 유성엽 (정읍고창 국민의당)
20160721	충부일보	2016년 7월 21일(목) 전국 주요 신문 토크뉴스
20160721	충북일보	2016년 7월 충북일보 독자권익위원회
20160722	강원도민일보	고성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20160726	충북일보	왜, 고향세(故郷稅) 도입인가
20160803	전북일보	출향인-지역 윈윈하는 고향기부제 도입해야
20160904	전북도민일보	'고향세' 도입을 기대하며
20160905	경남도민일보	교육 인구 유입 발판 된 '자발적 고향세'
20160912	영남일보	[월요일칼럼] 추석을 앞두고 생각하는 '고향세'
20160918	광주매일신문	"고향세, 재정 취약한 기초단체로 확대를"
20161014	광주일보	고향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받고 특산물 선물, 지자체 "고향세도입해야"
20161017	광주일보	'고향세'로 열악한 지방재정 숨통 틈운다
20161026	경남신문	'고향세' 지방재정 숨통 틈을까
20161103	대전일보	썰렁한 지자체 공간 채울 '고향세' 도입을
20161124	강원도민일보	'시멘트세' 긍정적인 접근 필요하다
20161213	충부매일	"한국인 자긍심 민족교육 절실"
20170106	부산일보	[공감] 고향세를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20170115	전북도민일보	고향기부금제 도입 필요하다
20170321	한겨레	일본의 저출산 극복법 '먹고살 만해야 낳는다'
20170414	내일신문	농어촌 10년 숙원 '고향세' 이번엔 풀릴까
20170426	광주일보	[옥영석 농협하나로유통팀 팀장] 고향세 도입, 지금 추진할 때다
20170508	전남일보	10년째 논의 '고향세' 이번엔 도입될까
20170510	무등일보	호남 '반문 정서 극복' 물론 '통합 메시지 전달' 최선
20170515	국민일보	전재수 의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20170516	충부일보	2017년 5월 16일(화) 전국 주요 신문 토크뉴스
20170516	국제신문	고향세 도입, 지방 재정난 구원투수
20170517	국제신문	[사설] 지자체 재정난에 단비 될 고향 기부금제
20170517	부산일보	[임성원의 세상 속으로] 분권과 기부의 지역 경제학
20170518	내일신문	주민 지방의원 제안정책 국가추진 희망 커졌다

일자	언론사	제목
20170523	영남일보	농촌지역 예술 창작활동 청년 지원 마을지원 활용 창업모델 발굴
20170525	강원일보	[인구절벽 위기의 강원도]“수도권 대도시 편중 정책 지방 중심으로 변화 시급”
20170602	대구일보	홍익락 의원, 소득세액 10% '고향납세제' 발의
20170603	강원도민일보	지방재정 확충 방안 잇따라 발의
20170606	매일신문	풍기홍삼, 일본 '고향납세 담례품목' 선정
20170607	대구일보	영주 풍기홍삼, 일본 고향납세 담례품목 선정
20170608	경향신문	[여제] '고향세'
20170608	경향신문	문 대통령 공약 '고향세' 지자체 재정 불균형 해소책 될까
20170616	경남도민일보	[바튼소리]'고향사랑기부제도'
20170616	내일신문	"고향기부제 핵심은 담례품 허용"
20170616	전남일보	국가균형발전 위해 '고향세' 서둘러야
20170616	전남일보	文공약 '고향세' 전남 "재정지립 기대"
20170619	한국일보	[강원 인사이트] “고향세 도입 지금이 적기”
20170621	경남도민일보	[발언대]지역균형발전 고향세를 도입하자
20170625	한겨레	국정기획위 “고향세 도입 지자체 기부 땀 세금혜택”
20170626	매일신문	日 후루사토세 공제 확대 1년만에 기부자 3배 늘어
20170626	매일신문	"기부금 형태 세금 공제" vs "국세 일부 고향세로"
20170626	매일신문	[국정기획위 고향세 도입 검토] '고향사랑기부제도' 효과 전망은
20170626	매일신문	2008년 고향세 신설 '선구자' 김관용
20170626	매일신문	고향세, 지자체 공간 채움 방안으로 급부상
20170626	중부일보	문재인 정부 추진 '고향세' 역차별 논란 인천시 반발
20170627	매일신문	[사설] '고향세', 긍정적이나 더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선책 필요하다
20170627	중부일보	2017년 6월 27일(화) 전국 주요 신문 토크뉴스
20170628	중부일보	자유한국당 "문정부 '고향세'보다 수도권규제 완화 먼저"
20170628	강원도민일보	'고향세' 도입 가시화 지역균형발전 기대
20170703	내일신문	'고향세'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70705	중부일보	인천시 정부 고향세 정책 우려
20170706	강원일보	"장 차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 재정지원 가능한가"
20170706	강원도민일보	도 특보 인사에 의회 곳곳 '심기 불편'
20170710	광주매일신문	고향세 도입 다시 속도 낸다
20170710	중부일보	대한민국 새 성장동력 '지방분권'에서 찾자
20170711	광주매일신문	고향세 도입 더 주저할 이유 없다
20170711	중부일보	2017년 7월 11일(화) 전국 주요 신문 토크뉴스
20170713	서울신문	지방세 사무 40%로 지자체 권한 강화
20170714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 행자위 “국제교류 다양한 국가로 저변 확대해야”
20170714	경남신문	행자부, 사전 조직 '분권 전략회의' 출범
20170716	경향신문	[별별시선]'고향세'와 지방정부 살림살이
20170717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간뉴스브리핑 2017년 7월 둘째주

일자	언론사	제목
20170719	광주매일신문	전남도의회 '고향세 도입 건의안' 채택
20170719	강원일보	[경제초점] 20년 빠른 강원도의 고향화
20170720	국제신문	[100대 국정과제] '고향세' 도입 지방재정 개선 지자체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20170722	강원도민일보	도, 고향세 도입 관련정책 개발 일본 사례 벤치마킹
20170726	한겨레	[지역이 중앙에게] '고향세'니까 / 권영란
20170726	광주일보	급물살 탄 고향세 도입 곳간 빈 지자체 기대감 고조
20170726	광주일보	農道 전남 재정 열악 지자체에 든든한 '구원투수'
20170726	충부일보	2017년 7월 26일(수) 전국 주요 신문 토피스
20170727	충부일보	김두관 국회의원 "지방분권 수준 50%만 돼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오를 것"
20170727	광주일보	지방 곳간 채우는 고향세 일맹이가 튼실해야
20170728	부산일보	[공감] 지역문화가 곧 문화의 전부이다
20170808	충청일보	주민소득세 일부 고향에 납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70808	충부매일	주민소득세 30%의 범위 내에서 고향에 납부
20170808	충북일보	박덕홍,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70808	광주일보	[박안수 경제학박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20170808	전북일보	호사수구, 그리고 고향세
20170810	영남일보	김광림 의원 지역발전 법안 발의 눈길
20170811	강원도민일보	강원도 '고향세' 도입 준비 시동
20170814	세계일보	고향에 '사랑' 전하면 농 특산품 우리집으로
20170816	광주매일신문	진도군의회 "고향세 도입 법률 개정해야"
20170816	경남신문	여야 의원 잇단 발의 '고향세' 연내 도입될까
20170816	경남신문	'고향세' 도입, 연내 처리 박차 가해야
20170817	광주일보	"국가균형발전 위해 '고향세' 서둘러야"
20170829	강원일보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 40% 시 군 분담"
20170829	강원도민일보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식품비 시 군서 40% 분담"
20170901	경남신문	경남신문 제14기 독자위원회 7차 회의
20170902	영남일보	"都農상생 묘수 고향稅는 필수"
20170902	영남일보	기부금 형식이나? 소득세 일부 지자체 지정 납부 형식이나?
20170906	강원일보	[현실화된 동네소멸] "고향세 도입 제반시설 확충 대책 필요"
20170912	경향신문	'고향세' 도입 땀 낙후 지자체 재정 '숨통'
20170912	광주매일신문	장흥군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
20170914	충북일보	시 수필과 함께하는 가을의 동화 - 애향심
20170914	강원도민일보	"특별교부세 정부 공모사업 적극 행동"
20170914	강원도민일보	고향세
20170915	강원일보	고향세 '모든 지방' 확대 여론
20170918	전북도민일보	지방분권 확대, '고향기부세' 도입 요구도 재점화
20170918	충부일보	김두관, 재정자립도 30%미만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추진
20170918	강원도민일보	"작은학교 없애며 귀농귀촌 장려 일관된 정책 필요"

일자	언론사	제목
20170918	무등일보	"고향 사랑' 기부금에 세금 부과 안된다"
20170918	무등일보	고향세 도입해서 고향 살려라
20170919	무등일보	시설(상)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 '고향세' 도입 시급
20170921	경향신문	농민신문사, 오늘 '상생, 함께 여는 생명산업의 미래' 주제 포럼
20170921	경향신문	고향세 남북농업협력...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이 갈 길은?...22일 미농포럼 개최
20170921	전북도민일보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20170922	한국일보	이낙연 총리 "고향사랑기부제 2019년 시행 일정"
20170922	매일신문	"고향세 2019년 시행" 이낙연 총리 '미농포럼'서 축사
20170923	영남일보	고향세 대상 서울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 포함여부 쟁점
20170923	영남일보	李 총리 "고향稅 연내 마련 2019년 시행"
20170924	강원도민일보	육동한 원장 미농포럼 고향세 발제
20170925	영남일보	[시설] 고향세 도입 입법화에 여야 정치권 속도내야
20170926	경남신문	"고향세 도입 땀 경남 연간 319억원 이익"
20171003	광주매일신문	주승용, 고향납세제도 도입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1010	국민일보	[한마당-라동철] 고향세
20171011	경남신문	고향세 단상
20171013	강원일보	[금융칼럼]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20171018	광주일보	고향세 도입땀 전남 年 최대 3600억 유입
20171018	중부일보	2017년 10월 18일(수) 전국 주요 신문 토크쇼
20171018	세계일보	고향세 도입땀 전남 年 최대 3600억 유입
20171019	광주일보	고향세 도입해 농어촌 지자체 소멸 막아야
20171020	전북도민일보	고향세 입법화 속도를
20171020	세계일보	김동연 "고향세 도입 내부 검토 중"
20171020	부산일보	김동연 부총리 "고향세 도입 여부 내부 검토 많이 하고 있다"
20171021	서울신문	[국감 하이라이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인상 검토"
20171025	경향신문	[창간 기획-구해줘, 농촌(4)'고향에 기부금 내면 소득공제' 대안으로
20171027	강원일보	"고향기부제 도입되면 도 재정 1,700억 유입"
20171031	전북도민일보	지방정부 성공, 자립재원 확보가 핵심
20171101	중부일보	박순자 "수도권 규제가 아닌 초강대도시 육성이 필요하다"
20171106	강원일보	[기고]고향사랑기부제
20171115	강원일보	[기고]고향세의 일석이조 효과
20171116	충북일보	박덕흠,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토론회' 개최
20171116	중부매일	박덕흠 의원,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토론회' 개최
20171120	경기일보	[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이다] 3. 수도권 비수도권 상생 구현
20171121	경기일보	[시설 수도권규제 풀지 않고 시행되는 지방분권 / 경기도일보 사면에 큰 재앙 될 수 있다
20171122	전북도민일보	양성빈 의원, 고향기부제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 공론화 촉구
20171128	강원일보	[언중언]고향세-고향기부제
20171203	광주매일신문	정치권 공감 '고향세' 도입 초읽기

일자	언론사	제목
20171203	광주매일신문	일본 반면교사 삼아 '한국형 모델' 도입 힘써야
20171204	광주매일신문	'고향세' 도입으로 농촌 활력 되찾자
20171204	중부일보	2017년 12월 4일(월) 전국 주요 신문 토크뉴스
20171205	국민일보	文 대통령 공약 '재정 분권' 조율 난항
20171208	전북도민일보	고향기부 성공적 도입을 위해
20171209	서울신문	"日 고향납세자 69% 답례품 때문에 참여"
20171209	서울신문	"균형 발전" "출혈 경쟁" 고향세 빛과 그림자
20171209	서울신문	전문가 10명 중 4명 "고향세 도입 반대"
20171210	매일신문	[기고] 고향세는 이럴 때
20171210	한겨레	"혁신도시 2단계, 기업들 들어갈 땅 모자랄 정도로 모일 것"
20171212	광주매일신문	김인정 진도군의회 의장 대한민국 BEST 인물 의정대상
20171213	전남일보	김인정 진도군 의장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의정 대상'
20171222	경인일보	[이슈&스토리]한국판 메가시티 '광역시울도' 태풍인가 착잔 속의 태풍인가
20171227	내일신문	임기말 지방의원들 너도나도 해외로
20180108	한국일보	전남도의회 임기 5개월 남겨놓고 무더기 외유 '빈축'
20180108	광주매일신문	전남도의회 의원 무더기 외유 논란
20180109	광주매일신문	임기 막판 무더기 외유 떠난 전남도의회
20180109	무등일보	시파장 확산-닭 오리 농가 565곳 2천544만마리 밀집 사육
20180110	전북도민일보	황금개띠해 농업계의 소망
20180118	동아일보	'고향사랑기부제' 기대 부문 지자체
20180120	서울신문	[씨출날줄] 고향세와 지방선거/박건승 논설위원
20180129	서울신문	고향에 기부하고 세제 혜택 받고 지자체 활력 '마중물' 된다
20180202	영남일보	기부하고 세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20180210	서울신문	[노주석의 서울살이] 고향세와 고향
20180211	전북도민일보	설 준비,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
20180313	세계일보	[세계초대석] 김부겸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 한계 지방분권 개헌 필요"
20180427	한국일보	[삶과 문화] 고향 리얼리즘
20180503	경인일보	타향서 고향신문 구독 '30% 세액 공제'
20180504	전북도민일보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고향기부제 국회 법안 처리 촉구
20180504	전북일보	[6 13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장수군수 예비후보 양성빈, 고향기부제 촉구
20180513	대전일보	서천군 '한계마을' 위기 극복 온힘
20180513	충도일보	서천, 한계마을 대응책 적극 추진키로
20180514	충청투데이	서천군, 한계마을 위기 극복 '행정력 집중'
20180521	영남일보	'지방발전법안 잇단 발의' 강효상 국회의원 인터뷰
20180521	강원도민일보	[6 13자선 후보 정책 팸플릿] 도지사 ① 단답형 문답
20180524	매일신문	[기고]고향세야, 고향을 부탁해!
20180524	경남도민일보	[발언대]고향세야, 고향을 부탁해!
20180530	중부매일	청년중심 경제 활성화 충북형 4차산업팀 구축 핀테크 등 혁신사업 추진

일자	언론사	제목
20180712	광주매일신문	[인터뷰] 정종순 장흥군수
20180712	중부매일	충북농협, 상반기 종합경영분석회의
20180712	충북일보	충북농협, 상반기 경영분석회의
20180717	충청투데이	이시종 충북지사 “고향세 활용 경로당 지원 필요”
20180729	서울신문	“국정과제인데 논의조차 못 하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를 어찌할꼬
20180731	내일신문	[기고] 농촌 활력화의 새 동력, 고향사랑기부제
20180801	강원도민일보	[특별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조속한 법 제정을
20180803	전북도민일보	일본의 ‘고향세’가 주는 시사점
20180810	제민일보	"사실 확인해 정확한 정보 전달"
20180816	제민일보	고향사랑기부제도 전망과 효과
20180822	중부매일	지금은 어떤가요 잘 계신가요?
20180822	충청투데이	지금은 어떤가요 잘 계신가요?
20180826	중부매일	지금은 어떤가요.. 잘 계신가요?
20180829	서울신문	靑 “블랙홀 빠질라” 개헌 손 놓고 국회도 지방분권 입법 뒷전
20180904	전북도민일보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임박 재정 분권 밑그림 나오나
20180912	충도일보	文정부 자치분권 배일벗었지만 첫발부터 과제 산적
20180912	경남신문	창원 김해 등 인구 50~100만명 도시 특례확대 추진
20180916	매일신문	고향세 도입 법률안 국회 또 제출돼
20180917	내일신문	"내고향에 기부한다" 고향세 시동
20180919	중부매일	'한국형 고향세 도입'을 기대하며
20180927	충청일보	"연간 27조의 소득 역외유출 막아야"
20181010	전북일보	정읍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최
20181010	전북도민일보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20181015	충청일보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2018 고향세 학술토론회' 개최
20181015	충청투데이	'고향세' 논의 재점화 충청지역에선 될까
20181021	중부일보	취임하자마자 탈당 권유에 압수수색 이재명 지사 "인생무상"
20181022	경남신문	여야, 고향세 도입 기회 놓쳐선 안 돼
20181022	경남신문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시행될까
20181022	전북일보	'고향사랑기부제' 2020년 시행 전망 재정확충 기대
20181022	전북일보	정읍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20181022	전북도민일보	고향세 도입되나 국회 심사에 전북도 촉각
20181023	광주매일신문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 이탈 전남 재정자립도 최하위 '악순환'
20181023	전북일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20181023	전북도민일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서둘러야
20181023	내일신문	[기고] 계류중인 한국형 고향세 왜 주저하는가
20181027	강원일보	도 248억원 세입 효과 수도권 의원 이해관계로 발목
20181028	한국일보	강원도 또 '고향세' 도입 건의
20181028	전북도민일보	이경신 교창군의원 "고향세도입 군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일자	언론사	제목
20181030	광주매일신문	농어촌 돕는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서둘러야
20181030	강원일보	[언중언]지방 살리기와 고향세
20181030	경향신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서둘러야"...국회 농해수위 촉구
20181108	경남신문	하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20181110	영남일보	[자유성] 후루사토노제(고향세)
20181121	전북도민일보	[창간] 침체된 전북경제 긴급 진단
20181121	강원도민일보	"저출산 악순환 끊으려면 출산인프라 보육시설 확대해야"
20181206	부산일보	[기고] 고향세야~ 고향을 부탁해!
20181207	한국일보	박문옥 전남도의원 '출향도민중' 발행 조례안 발의
20181217	한국일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시내 면세점도 추가
20181218	한국일보	J노믹스 '소득 주도→기업?시장' 무게추 이동
20181220	경남신문	기고
20181223	경향신문	[기고]'고향사랑기부제' 조속 통과를 기대한다
20190102	전북일보	국회 문턱 못 넘는 고향세
20190114	전북일보	기해년, 농심(農心)으로 농업인의 희망이 되자
20190115	충북일보	'고향세(故鄉稅)와 향수의 고장 옥천
20190119	세계일보	농협, '농업인단체장과의 신년간담회' 개최
20190130	전북일보	지방재정 격차 완화, 지방 균형발전의 '촉매'
20190214	경향신문	[먹거리 공화국]예천 사과는 죄가 없다
20190306	강원일보	[춘천]출향시민 대상 '고향사랑 기부' 받는다
20190320	전북도민일보	올해 국회 의결 비리는 법안
20190326	충도일보	전국농어촌군수협 "고향세법 조속 제정해야"
20190326	충도일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고향사랑 기부금법 반드시 통과 돼야"
20190326	충청일보	농어촌지역군수協, '고향세법 통과' 팔 걷어
20190326	대전일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 "고향세법 제정 촉구"
20190326	전북도민일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하라"
20190326	전북일보	황인홍 무주군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촉구
20190326	충북일보	홍성열 증평군수, 고향사랑 기부금법 반드시 통과 돼야
20190326	중부매일	홍성열 증평군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촉구
20190326	중부매일	김석환 홍성군수,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위해 국회 방문
20190327	충청투데이	홍성열 군수 "고향사랑 기부금법 필수"